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14호

2017. 6. 15.(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1402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

◆ 고 시

제2017-2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6
제2017-210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
제2017-211호 도시관리계획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
제2017-212호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2
제2017-21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0
제2017-214호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92

◆ 공 고

제2017-136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105
제2017-1372호 2017년‘제2회 서울특별시건설상’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107
제2017-13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108
제2017-1382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09
제2017-1385호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	111
제2017-1391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112
제2017-139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13
제2017-1403호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14
제2017-140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15

◆ 구 고 시

제2017-53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117
---	-----

제2017-56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118
제2017-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범만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중랑구)	120
제2017-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127
제2017-93호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로구)	129
제2017-60호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미한 변경) 및 특별 계획구역Ⅴ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130

◆ 구 공 고

제2017-5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배봉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대문구)	136
제2017-7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공사완료 공고(은평구)	137
제2017-821호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강서구)	138
제2017-8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145
제2017-8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45
제2017-905호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내 부대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147
제2017-9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48
제2017-9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향골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50
제2017-611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동작구)	152

◆ 사업소고시

제2017-1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4
제2017-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4

◆ 기 타

제2017-10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5
제2017-11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5

◆ 정 정

서울특별시규칙 제3494호 정정	157
중구고시 제2017-45호 정정	158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02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나.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의 실천을 위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 등 규정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변경
- 나.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조항에 ‘문화시민도시’ 개념 반영(안 제2조 ~ 제3조, 제5조)
- 다. 제2장의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1조)
 -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협치 기반 마련 등 규정
- 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4조 ~ 제19조)
 - 위원회 명칭 변경(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 위원회 기능 확대(문화시민도시발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시민제안사업 검토, 문화영향평가 관련 사항 결정, 문화 원탁회의 개최 등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을 35명 내외, 5개 분과(개인/공동체/지역/도시/협치분과)로 변경
 -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마.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 ~ 제26조)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재정의 지원 규정 신설
- 바.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전화: 02)2133-2518, FAX: 02)2133-1059, E-mail: jominji2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제 2017-161호(2017. 5. 4)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식물원 내 (가칭)LG아트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지구 서울식물원 부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가칭 LG아트센터) 건립
- 명 칭 : 서울식물원 내 (가칭)LG아트센터 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용면적 : 서울식물원 504,012㎡ 내 (가칭)LG아트센터 영역 약 15,827㎡ / 연면적 41,675.51㎡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4층(39.35m)

구 분	면 적 (㎡)	비 고
(가칭)LG아트센터	11,500.75	지하 3층, 지상 4층
광장(회차공간)	1,811.53	광 장
(가칭)LG아트센터 하역장	1,136.58	하 역 장
진입도로(1-22)	594.19	소 로
지하연결통로(3-28)	424.18	소 로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LG컨소시엄 대표자 LG전자(주) 대표이사 정도현 외 9개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여의도동)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0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재정비를 위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신설)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305,043	감)34,496	270,547	1987.2.4
신설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	-	증)39,965	39,965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마포구 6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270,547	◦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2013.9.26)에 의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신설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	39,965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시장의 통일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을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함께 관리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965	—	39,965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232	—	7,232	18.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37	—	14,937	37.4	
	준주거지역	17,685	—	17,685	44.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1	—	111	0.3	

나. 용도지구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신촌로	중심지 미관지구	의주로2가~제2한강교 (아현동346-21~서교동392-4)	224,000	6,000	양측 15~20	서고438호 , 80.12.31	—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아현동 ~ 신촌로타리 (아현동346-21~노고산동31-21)	67,440	건고727호 63.12.13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8,453 (732)	312,268 .3	—	—	—	1	6,800 (651)	272,000	3	1,653 (81)	40,268. 3
광로	1	6,800 (651)	272,000	—	—	—	1	6,800 (651)	272,000	—	—	—
대로	1	1,600 (28)	40,000	—	—	—	—	—	—	1	1,600 (28)	40,000
소로	2	53	268.3	—	—	—	—	—	—	2	53	268.3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8	40	주간선 도로	6,800 (651)	북아현동(광로42) (동교동183-1)	합정동(광장29) (서교동395-46)	일반 도로	건고214호 78.8.2	신촌로 양화로
기정	대로	3	14	25	보조 간선	1,600 (28)	대흥동 (대흥동2-1)	용강동 (대흥동2-6)	일반 도로	건고177호 62.12.8	대흥로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8	아현동 570-32	아현동 570-38	일반 도로	마포구고시 제1998-77호 (98.9.22)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25	염리동 9-246	염리동 8-149	일반 도로	마포구고시 제1997-105호 1998.1.7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고속철도 (변전소 및 환기실)	대흥동 2-77외 10필지	1,567	서고 191호 1980.6.3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아현탁아원)	마포구 아현동 677-1	587.1	서고364호 1990.10.29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 개발규모	준주거지역	2,000㎡	◦적용예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대지 제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	

나. 공동개발계획 :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와 같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2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 소매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 상점 (※상기 결혼관련 용도란 웨딩드레스, 한복의 판매 또는 대여점에 한함)	아현동 웨딩거리 일대
	4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촌로 및 양화로변
변경	가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 소매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 상점 (※상기 결혼관련 용도란 웨딩드레스, 한복, 예복에 한함)	준주거지역 전면부 (웨딩거리 활성화구간)
	나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준주거지역 전면부
	다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게임제공업소 제외)	아현시장

주) 1층 권장용도는 1층부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부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준주거지역 이면부 및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지역 전면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B' 불허용도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정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지역 이면부
	C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아현시장 도로변
D	지상1층		■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아현시장 공공보행도로변

나. 건축물 밀도

(1) 건폐율

구 분	건 폐 율	비고
준주거지역	6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이하	-

■ 건폐율 완화계획(신설)

적용범위	완화범위	완화조건		완화량	비고
아현시장 공공보행통로변	건폐율 70%	1층 권장용도 도입시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10%	준주거지역에 한해 적용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5%	

주)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용적률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0%	350%이하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alpha)$ 이내	-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0%	35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0%	200%		신설

-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2. α 란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다. 건축물 높이

구분			최고높이	비고
기정	준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
		이면부	30m 이하	
변경	준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m 이하	신설 ¹⁾

- 주) 1. 아현시장의 통일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현시장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블록 포함에 따른 신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높이를 16m 설정하고, 높이 완화항목에 의해 최고높이까지 완화 가능

■ 높이 완화계획

구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6m	20m	기준높이: 최고높이의 0.8 적용

■ 높이 완화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적정개발규모		기준높이 $\times \alpha$	$\alpha = 0.3$ ※ 90㎡ 이상의 계획 규제가 없는 단독개발 필지인 경우 적용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높이 $\times \alpha$	2필지 : 0.2 / 3필지 : 0.25 / 4필지 이상 : 0.3
	공동개발(권장)	기준높이 $\times \alpha$	2필지 : 0.1 / 3필지 : 0.15 / 4필지 이상 : 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벽면한계선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벽면한계선 중복 불가
	보차혼용통로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높이 $\times (\text{권장용도 면적} \div 1\text{층바닥면적}) \times \alpha$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05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1

주) 1.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

1) 건축물의 배치

구 분	위 치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 1m	결정도 위치 표시
	• 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1m	• 건축한계선 1m	
벽면한계선	-	• 보차혼용통로변 폭 4~6m	• 1m, 공공보행통로변 폭 2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 건축물 형태·외관 및 환경친화적 요소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	
	야간조명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타 사 항	옥외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 시만 인정	
	중수도 시스템	•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준		• '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 및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물 외관	외벽면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관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금지	
	탑상형 건축물	•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규제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및 옹벽의 설치	• 담장허용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중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 에너지사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너지 절약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을 권장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 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	권장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보도형 전면공지 -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전면공지 -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기조성된 공공부분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 •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공개공지 위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위치 우선 준수	
쌈지형 공지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0㎡ 이상 •인접 대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접대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쌈지형공지 위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위치 우선 준수	
침상형 공지	•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 보도형 전면공지 -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 -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아현시장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상품적치 가능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기조성된 공공부분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결정도 위치표기
공 개 공 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 이상 •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건축조례상 설치 대상 건축물 적용
쌈지형 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5㎡ 이상 • 인접 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침상형 공지	• 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

주) 1. 위 사항을 포함하여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를 우선 적용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결정도 위치표기
공공보행통로	•보행흐름의 연속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 •아현시장의 도로 현황 고려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보차혼용통로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
주차장설치완화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필지 및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적용	-

■ 공공보행통로

구분	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	3개소	아현시장 도로 현황 고려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결정도 위치표기)

■ 보차혼용통로

구 분	번 호	계획내용	비 고
기정	SR-27	1개소(폭원 4m)	-
	SR-28	1개소(폭원 6m)	-
변경	SR-1 SR-3 SR-4 SR-5 R-1	5개소(폭원 4m)	현황도로 여건 및 차량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결정도 위치표기)

■ 주차장설치완화구역

구 분	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결정도 위치표기)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인센티브(기정)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n=1 \rightarrow \alpha=0.1$, $n=2 \sim 3 \rightarrow \alpha=0.2$ $n=4 \sim 5 \rightarrow \alpha=0.3$, $n=6$이상 $\rightarrow \alpha=0.4$ (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2$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rightarrow \alpha=0.1$ 3~4필지 $\rightarrow \alpha=0.15$ 5필지이상 $\rightarrow \alph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건축연면적) $\times 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 구조 $\alpha=0.5$ - 침상형 구조 $\alpha=1.0$ - 개방형 구조 $\alpha=1.2$
	섬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 구조 $\alpha=0.5$ - 개방형 구조 $\alpha=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 구조 $\alpha=0.5$ - 개방형 구조 $\alpha=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 구조 $\alpha=0.5$ - 개방형 구조 $\alpha=1.0$
			지하형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 구조 $\alpha=0.5$ - 개방형 구조 $\alpha=1.0$
건축물 형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준수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서울시기준 준수시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인센티브(변경)

①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 / 3필지 : 0.15 / 4필지 이상 : 0.2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07 / 3필지 : 0.1 / 4필지 이상 : 0.15
	적정개발규모유도	기준용적률 $\times 0.07$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0.1$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5$ (필로티 구조 $\alpha = 0.75$)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2$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2$ (필로티 구조 $\alpha = 1$)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0$ (필로티 구조 $\alpha = 0.6$)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2$ (필로티 구조 $\alpha = 0.6$)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 면적 \div 1층 바닥면적) \times \alpha$	•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1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2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 접도길이 \div 신촌로변 접도길이) \times \alpha$	• $\alpha = 0.2$ (전체 접도길이의 30% 이상시 적용, 연면적과 접도길이 기준 중복적용 가 능, 출입구는 접도길이 산정 시 제외)

- 주) 1. 미관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적 및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면적산정시 제외
 2. 1층 전면부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용도 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
 3. 자율적 공동개발(적정개발규모 유도)는 적정개발규모(대지면적 200㎡)이하인 부지를 공동개발을 통해 적정개발규모 이상의 부지로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공동개발 계획 되지 않은 대지면적 200㎡ 이상의 단일필지 포함)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최우수(1등급) : 0.12 우수(2등급) : 0.08 우량(3등급) : 0.04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등급 : 0.08, 2등급 : 0.06 3등급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등급 : 0.12, 2등급 : 0.10 3등급 : 0.08, 4등급 : 0.06, 5등급 :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5$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3$

- 주) 1.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필지간 공동개발의 지정 및 권장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에 대한 사항
8.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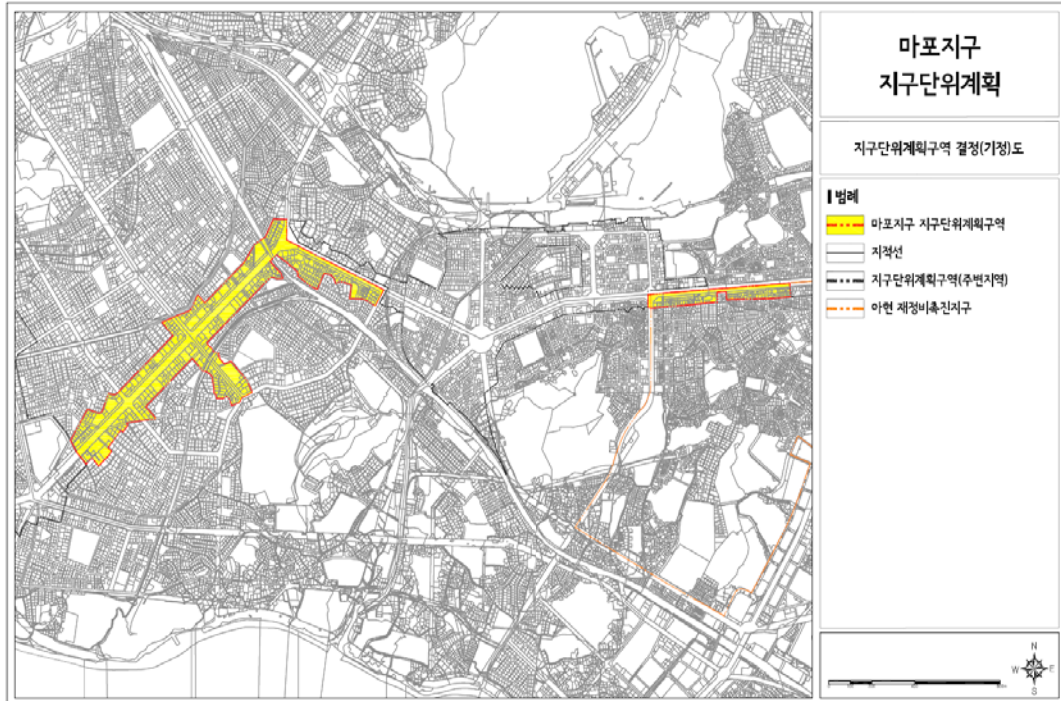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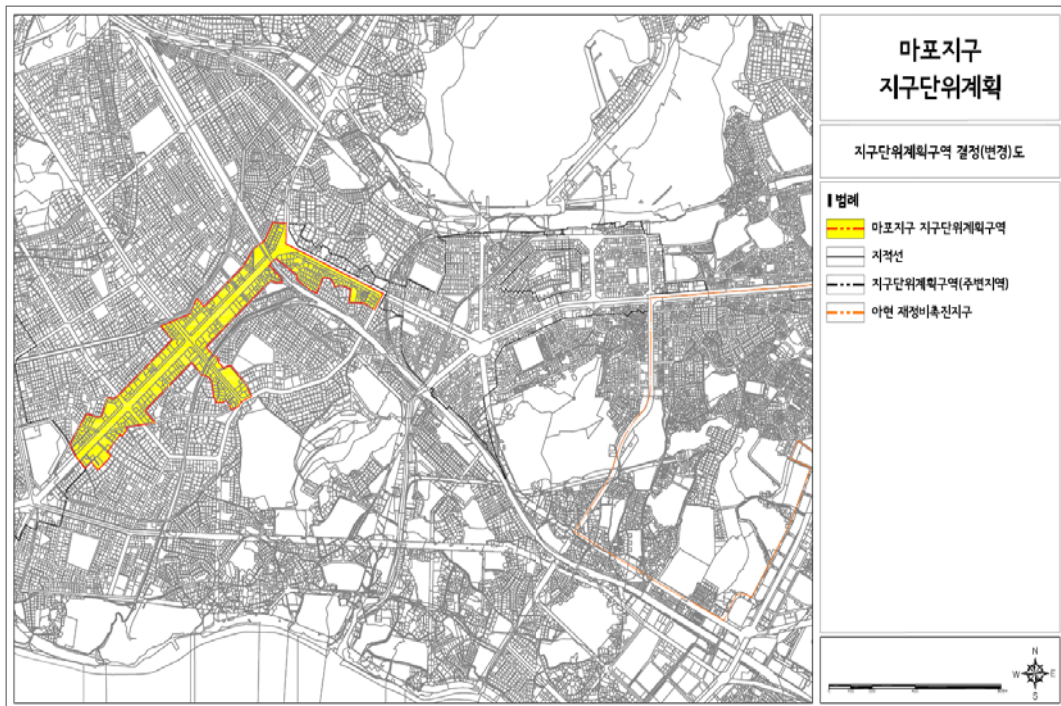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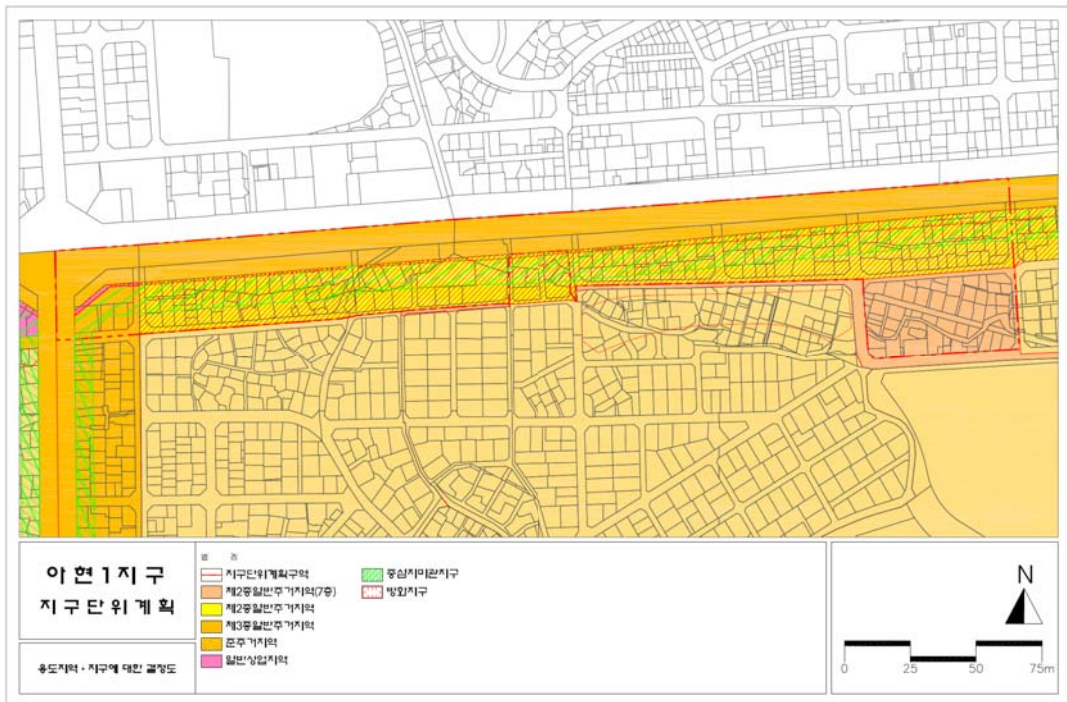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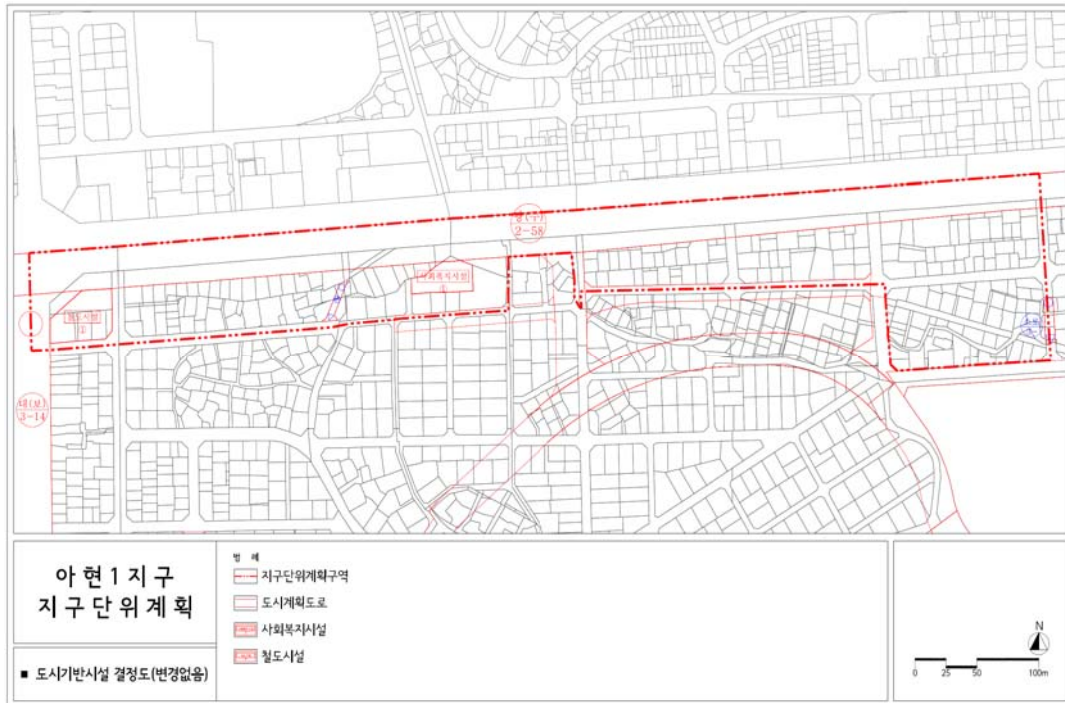
□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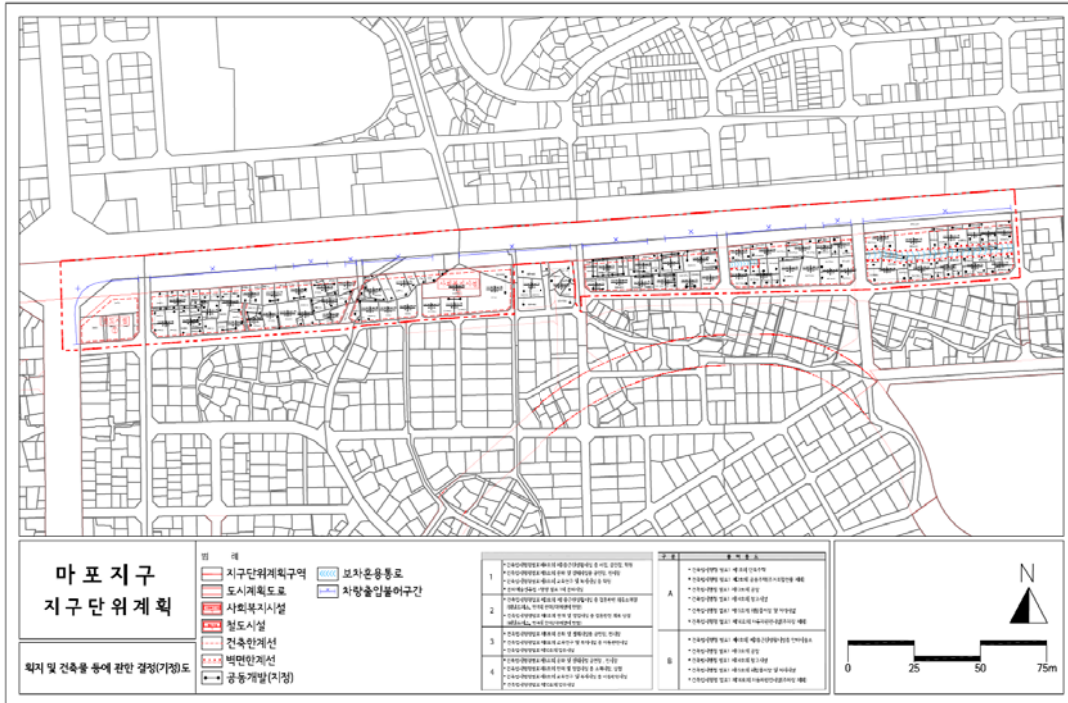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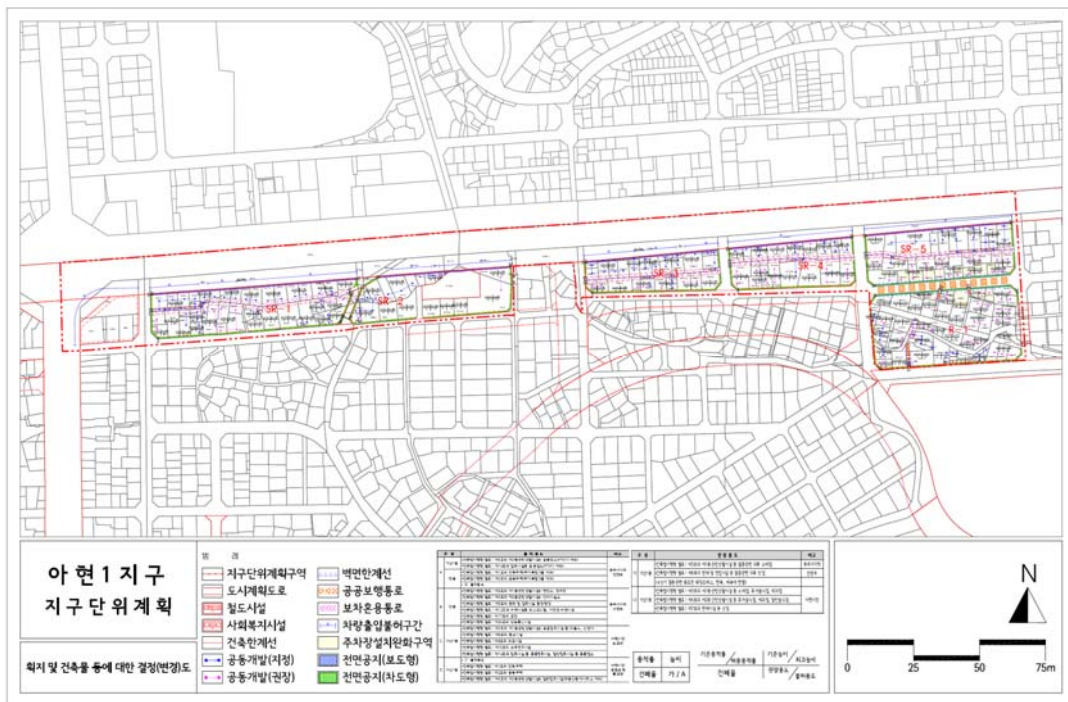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1호

도시관리계획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재정비를 위하여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아현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동 331번지 일대	35,255	증) 5,975	41,230	서고149호 (96.6.3)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 구역내 포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동 331번지 일대	41,230	· ‘마포지구’ 외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구역명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편입 – 아현시장의 통일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 구역 내 포함(5,97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1,230.0	—	41,230.0	100.0	—
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4,000.0	—	4,000.0	9.7	—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23,969.4	—	23,969.4	90.3	—
	제3종일반주거지역	6,646.6	—	6,646.6	16.1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14.0	—	6,614.0	16.1	—

나. 용도지구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신촌로	중심지 미관지구	의주로2가~제2한강교 (아현동331-11 ~아현동329-1)	1,440 (4,657)	6,000 (233)	15~20	서고438호 (80.12.31)	—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아현동~신촌로타리 (아현동331-11~아현동329-1)	67,440 (1,621)	건고727호 (63.12.13)	—
기정	—	방화지구	아현동327-30 일원	849.6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52	아현동 291-8	아현동 326-15	일반 도로	서고513호 (05.11.24)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8	아현동 570-32	아현동 570-38	일반 도로	마포구고시 제1998-77호 (98.9.22)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전기공급 설비시설	아현동 275-5	1,323.0	서고139호 (95.5.29)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준주거지역	SR-1, SR-2, SR-3, SR-4, SR-5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블록단위 획지계획 폐지
근린상업지역	NC-1, NC-2	

나. 최대개발규모 계획 : 신설

구분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비 고
신설	3,000㎡	2,000㎡	1,500㎡	· 블록단위 획지계획 폐지에 따른 최대개 발규모 신설

다. 획지 계획

■ 획지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지 번	면 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선	SR-1	아현동 331일원	3,469.40	획지선 지정	획지선 삭제	-
	SR-2	아현동 327일원	4,000.20	획지선 지정	획지선 삭제	-
	SR-3	아현동 326일원, 아현동 291일원	6,050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해제	-
	SR-4	아현동 282일원	3,323.30	획지선 지정	획지선 삭제	-
	SR-5	아현동 275일원	3,932.80	획지선 지정	획지선 삭제	-
	NC-1	아현동 330일원	2,451.40	획지선 지정	획지선 삭제	-
	NC-2	아현동 329일원	1,353.60	획지선 지정	획지선 삭제	-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와 같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분 류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 단독주택 -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단란주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변)
	B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단란주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준주거지역 (20m도로변)
변경	A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근린상업지역
	B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지역 전면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C' 불허용도	
	C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정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지역 이면부
	D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아현시장 도로변
	E	지상1층	-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아현시장 공공보행통로변

(2) 지정용도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지정용도	비고
			1 층	
기 정	A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변)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
	B	준주거지역 (20m도로변)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
변 경	A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변)	-	블록단위개발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지정용도 계획 폐지
	B	준주거지역 (20m도로변)	-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주2) 지정용도는 1층부 바닥면적의 30%이상 입지

(3) 권장용도

구분	분 류		권장용도	비고
기정	A	전층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변)
	B	전층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준주거지역 (20m 도로변)
변경	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근린상업지역
	나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준주거지역 전면부
	다	지상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아현시장

주1) 1층 권장용도는 1층부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봄(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나. 건축물 밀도

(1) 건폐율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근린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준주거지역	60%이하	
신 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 건폐율 완화계획(신설)

적용범위		완화범위	완화조건		완화량	비고
①	아현시장 공공보행통로변	건폐율 70%	1층 권장용도 도입시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10%	아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로연속성 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준주거지역에 한해 적용)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5%	
②	아현시장 도로변	건폐율 65%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5%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2%	

주)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용적률

구 분		접도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정	근린상업지역	간선변	300% 이하	500% 이하	-
	준주거지역	간선변, 20m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
		20m 도로변	240% 이하	340% 이하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가중치에 의한 계산)
변경	근린상업지역	간선변	400% 이하	530% 이하	-
		이면부	300% 이하	500% 이하	-
	준주거지역(A)	-	300% 이하	360% 이하	-
	준주거지역(B)	-	200% 이하	200% 이하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허용용적률 하향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00% 이하	구역 포함 블록

■ 상한용적률

구 분	상한용적률
전구역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 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을 말하며, α 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의 비율임

다.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 정	근린상업지역	간선 가각부, 간선변(신촌로)	80m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변(신촌로), 20m 도로, 특별계획구역	60m 이하	
변 경	근린상업지역	간선변(신촌로)	80m 이하	-
		이면도로변	50m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변(신촌로)	60m 이하	
		이면도로변(A)	40m 이하	
		이면도로변(B)	30m 이하	
		이면도로변(C)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 구역	20m 이하	

- 주) 1. 아현시장의 통일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현시장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블록 포함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높이를 16m 설정하고, 높이 완화항목에 의해 최고높이까지 완화

■ 높이 완화계획

구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6m	20m	기준높이: 최고높이의 0.8 적용

■ 높이 완화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적정개발규모		기준높이 $\times \alpha$	$\alpha = 0.3$ ※ 90㎡ 이상의 계획 규제가 없는 단독개발 필지인 경우 적용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높이 $\times \alpha$	2필지 : 0.2 / 3필지 : 0.25 / 4필지 이상 : 0.3
	공동개발(권장)	기준높이 $\times \alpha$	2필지 : 0.1 / 3필지 : 0.15 / 4필지 이상 : 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벽면한계선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 벽면한계선 중복 불가
	보차혼용통로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높이 $\times (권장용도 면적 \div 1층바닥면적) \times \alpha$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05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1

- 주) 1.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라. 건축물 배치

1) 건축물의 배치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기정	건축한계선 (규제)	-개방된 가로경관의 확보	역세권 가각부, 신촌로변(40m)	대지경계선에서 3m
		-이면도로의 확폭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에서 2m, 3m, 4m
	벽면한계선 (규제)	-저층부 연속된 가로경관 조성 -상접이용객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20m도로변	건축한계선에서 3m
변경	건축한계선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신촌로변 소규모 필지의 개별건축 행위를 위한 건축한계선 조정	신촌로변(40m)	1m (결정도 표시)
		-이면도로의 확폭	이면도로변	1m (결정도 표시)
		-보차혼용통로 확보	보차혼용통로변	폭4m (결정도 표시)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확보	공공보행통로변	· 폭2m(결정도 표시) · 1m(아현시장 변)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기정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조성지침 제시
	공개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위치 지정	- 조성지침 제시
	쌈지형공지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설치 미대상 필지	- 조성지침 제시
	침상형공지	- 지하철과 연계한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지하철과 연계 가능필지	- 조성지침 제시
변경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조성지침 제시
	공개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위치지정 삭제
	쌈지형공지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설치 미대상 필지	- 조성지침 제시
	침상형공지	- 지하철과 연계한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지하철과 연계 가능필지	- 조성지침 제시

나. 교통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규제)	- 신촌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	- 신촌로변 - 북개도로변	-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공간 단절 최소화	- 신촌로변	결정도 위치표기
	공공보행통로	- 아현시장의 도로 현황 고려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아현시장 내	결정도 위치표지
	보차혼용통로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결정도 위치표기
	주차장설치 완화구역	- 아현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결정도 위치표기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SR-1	전면부 확대지정	보차혼용통로 삭제에 의한 신촌로변 확대지정
	SR-2	신설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를 위해 신설
	SR-3	신설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를 위해 신설
	SR-4	신설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를 위해 신설
	SR-5	신설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를 위해 신설
	NC-1	변경없음	-
	NC-2	전면부 확대지정	굴레방길변 확대 지정
변경	-	신촌로변 (결정도 위치표기)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굴레방길변 삭제

■ 공공보행통로

구분	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	아현시장 도로 현황 고려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12개소)	결정도 위치표기

■ 보차혼용통로

구 분	번 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	현황도로 여건 및 차량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5개소)	결정도 위치표기

■ 주차장설치완화구역

구 분	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결정도 위치표기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외관 및 의장	1층부 형태 (규제)	-시각적 개방감 확보 -건축물 외벽의 일체감 및 동질감을 살려 구역 내 이 미지 및 가로경관 제고	-도로변에 접한 대지	-전면도로에 접한 지상1층 외벽은 투시율 50%이상 확보
	외벽처리 (규제)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전면부 처리	1층바닥높이 (규제)	-보행활동의 연속성과 안전 성 도모 및 가로경관 제고	-도로변에 접한 대지	-접한 도로 및 공지와 높이 차이는 15cm 이하로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 처리 (규제)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 의 설치 금지(상품적치형 전면공지 제외)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 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 시설	옥외 광고물 (규제,권장)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환 경 확보 -지구의 이미지 개선	-도로변에 접한 대지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광고물 조명 권장
	조명 (권장)			-장소성, 지역적특성을 고려한 조명 유도 -야간조명 설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 제	아현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아현동 326, 291번지 일대	6,050	감)6,050	-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결정사유
해 제	아현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아현동 326, 291번지 일대	6,050	- 사업 미시행 장기화 - 개발여건 향상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해제

5.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문화복지시설제공		기부채납		기준용적률× (도입시설연면적/대지면적)×α	· α는 지상1층 1.2, 지하1층, 지상2·3층 1.0, 기타 층 0.8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 준주거지역 α=0.1 · 근린상업지역 α=0.2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지침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α=0.3 · 기타 권장용도 α=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α	· 피로티 구조 α=0.8 (0.5) · 침상형 구조 α=1.0 (0.8) · 개방형 구조 α=1.2 (1.0)
	쌈지형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 구조 α=0.8 (0.5) · 침상형 구조 α=1.0 (0.8) · 개방형 구조 α=1.2 (1.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 구조 α=1.0 (0.8) · 개방형 구조 α=1.2 (1.0)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 ·완화고시 준수시
	지하철 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색주차장 조성면적/대지면적)×0.2	서울시기준 준수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 비교란의 ()는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시 적용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지정용도는 1층부 바닥면적의 30%이상 입지해야하며, 권장용도 산정시에 지정용도면적을 포함함
 3.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산정시 주차
장 면적 제외)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6.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7. 문화복지시설제공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
관, 노유자시설 등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자치구청장이 제공될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판
단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근린상업지역)

①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5 / 3필지 : 0.2 / 4필지 이상 : 0.2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2 / 3필지 : 0.14 / 4필지 이상 : 0.16
	적정개발규모유도	기준용적률 $\times 0.12$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0.1$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 (필로티 구조 $\alpha = 0.5$)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2$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6$ (필로티 구조 $\alpha = 0.3$)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2$ (필로티 구조 $\alpha = 0.6$)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 면적} \div 1\text{층 바닥면적}) \times \alpha$	•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07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1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 점도길이} \div \text{신촌로변 점도길이}) \times \alpha$	• $\alpha = 0.1$ (전체 점도길이의 30% 이상시 적용, 연면적과 점도길이 기준 중복적용 가 능, 출입구는 점도길이 산정 시 제외)

- 주) 1. 미관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적 및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면적산정시 제외
 2. 1층 전면부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용도 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
 3. 자율적 공동개발(적정개발규모 유도)는 적정개발규모(대지면적 200㎡)이하인 부지를 공동개발을 통해 적정개발 규모 이상의 부지로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공동개발 계획 되지 않은 대지면적 200㎡ 이상의 단일필지 포함)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최우수(1등급) : 0.12 우수(2등급) : 0.08 우량(3등급) : 0.04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등급 : 0.08, 2등급 : 0.06 3등급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등급 : 0.12, 2등급 : 0.10 3등급 : 0.08, 4등급 : 0.06, 5등급 :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text{녹화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5$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times (\text{보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4$

- 주) 1.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준주거지역 A)

①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5 / 3필지 : 0.2 / 4필지 이상 : 0.2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 / 3필지 : 0.12 / 4필지 이상 : 0.15
	적정개발규모유도	기준용적률 $\times 0.1$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0.0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 (필로티 구조 $\alpha = 0.5$)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4$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필로티 구조 $\alpha = 0.1$)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7$ (필로티 구조 $\alpha = 0.35$) (벽면한계선 중복 불가)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5$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 면적} \div 1\text{층 바닥면적}) \times \alpha$	•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07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1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 점도길이} \div \text{신촌로변 점도길이}) \times \alpha$	• $\alpha = 0.1$ (전체 점도길이의 30% 이상시 적용, 연면적과 점도길이 기준 중복적용 가 능, 출입구는 점도길이 산정 시 제외)

- 주) 1. 미관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적 및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면적산정시 제외
 2. 1층 전면부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용도 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
 3. 자율적 공동개발(적정개발규모 유도)는 적정개발규모(대지면적 200㎡)이하인 부지를 공동개발을 통해 적정개발 규모 이상의 부지로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공동개발 계획 되지 않은 대지면적 200㎡ 이상의 단일필지 포함)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최우수(1등급) : 0.12 우수(2등급) : 0.08 우량(3등급) : 0.04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등급 : 0.08, 2등급 : 0.06 3등급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등급 : 0.12, 2등급 : 0.10 3등급 : 0.08, 4등급 : 0.06, 5등급 :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text{녹화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times (\text{보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 주) 1.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필지간 공동개발의 지정 및 권장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에 대한 사항
8.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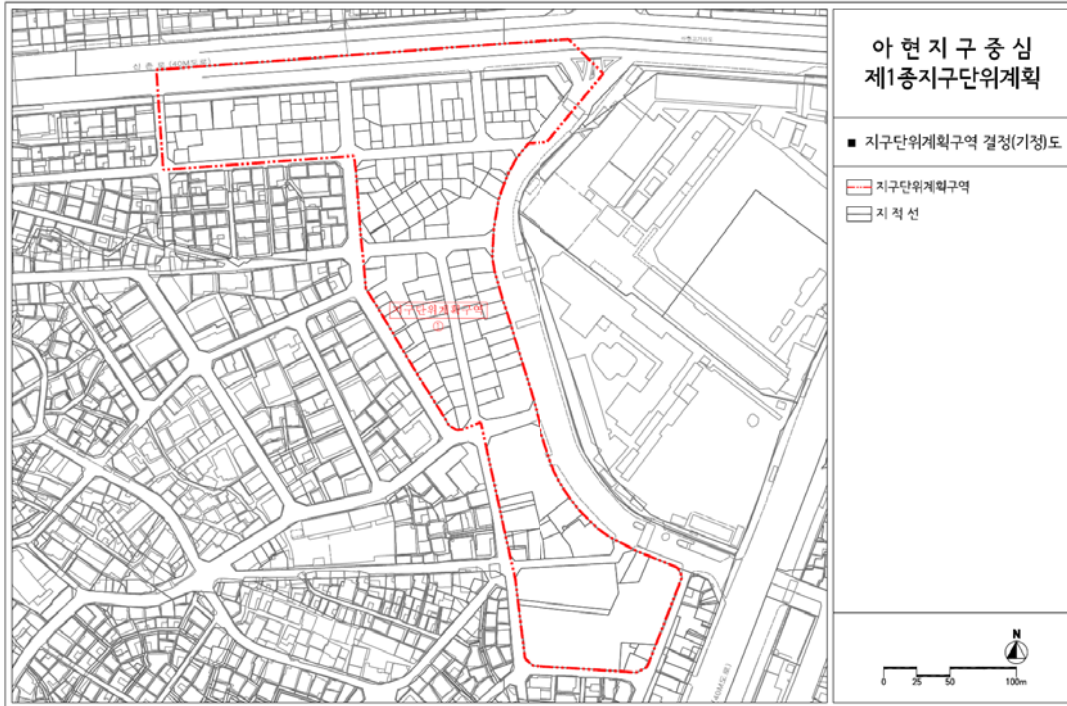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불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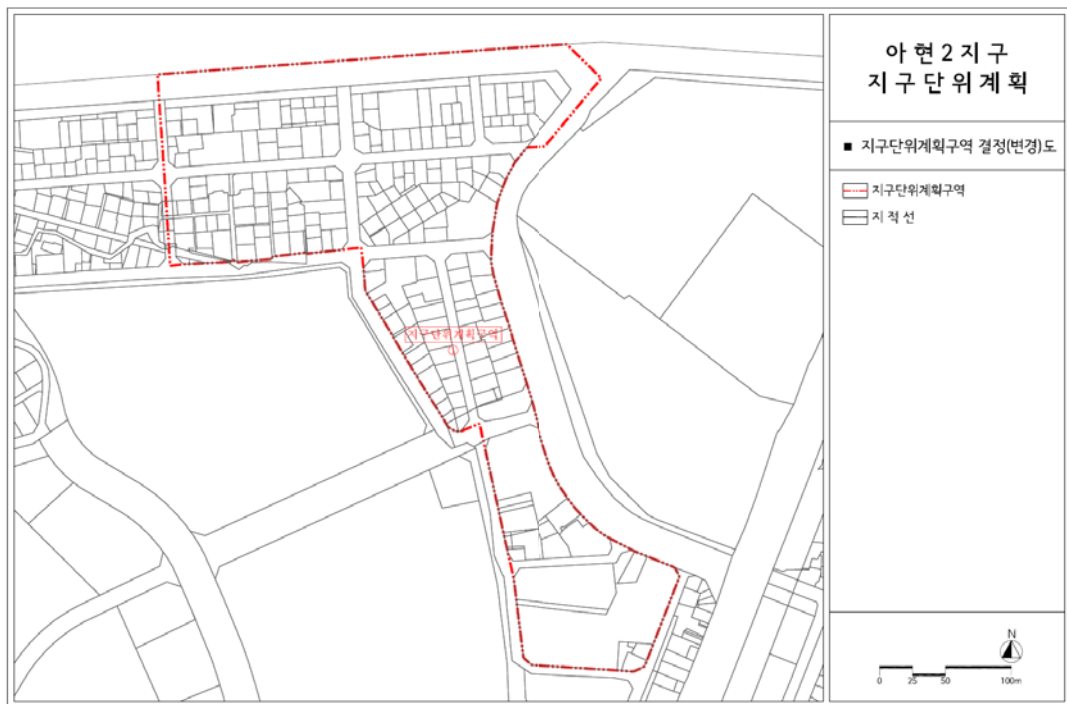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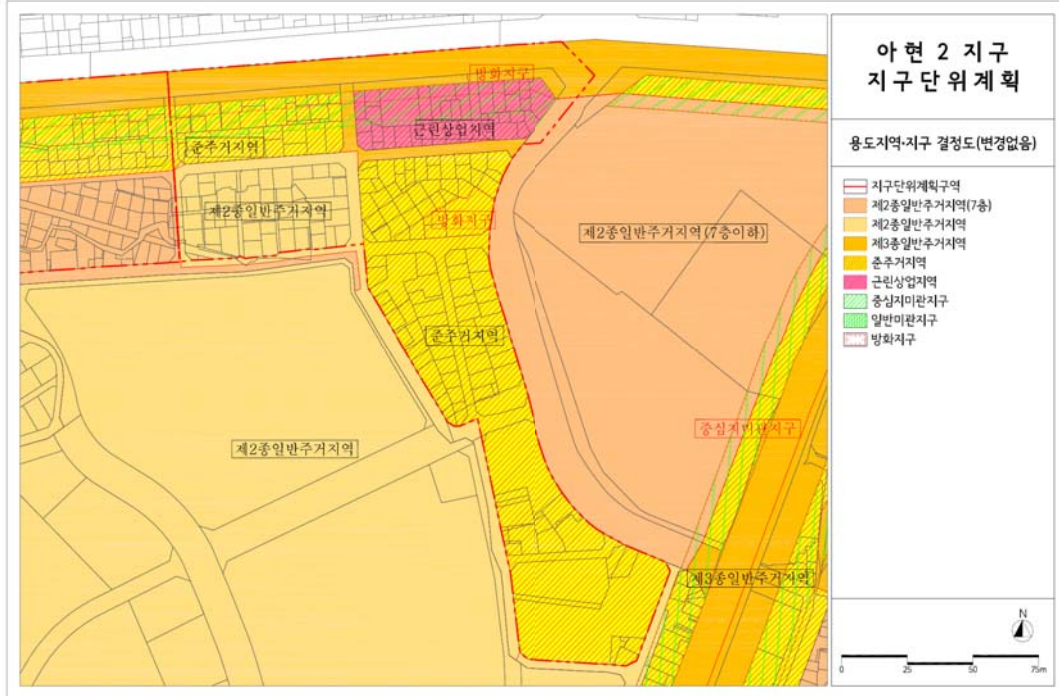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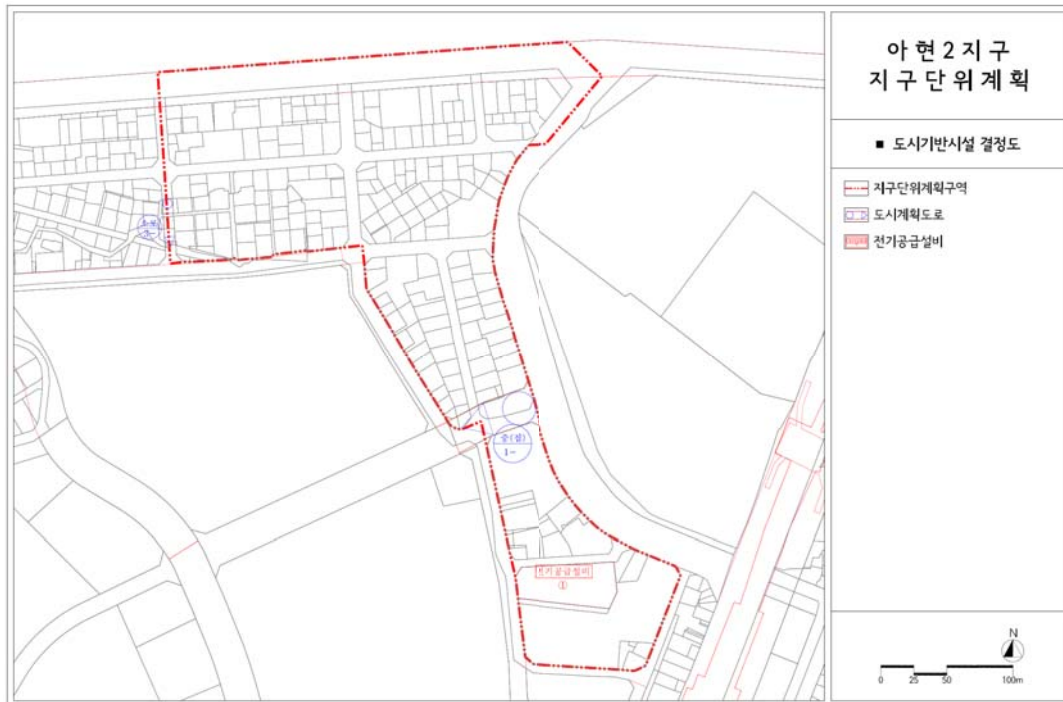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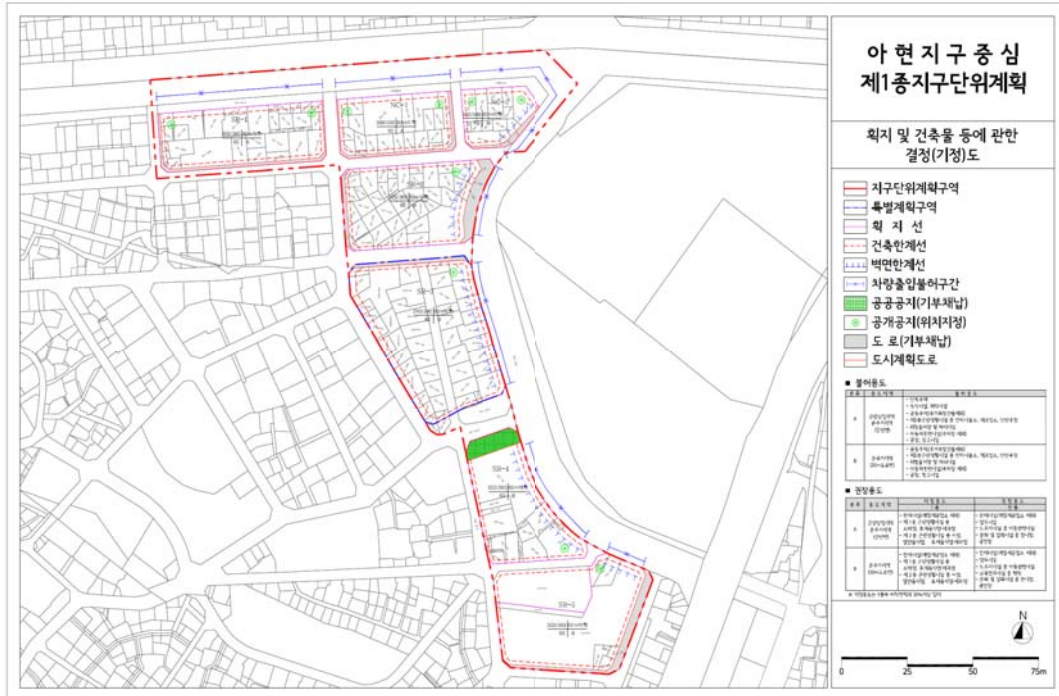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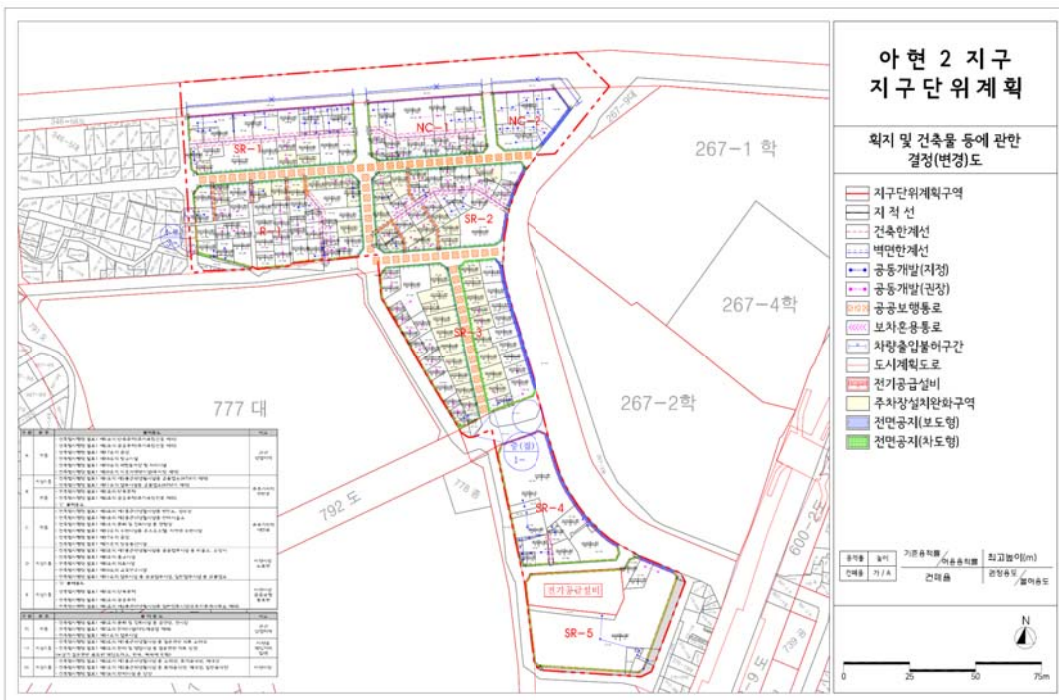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2호

도시관리계획(대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홍동 23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홍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대홍역 역세권 기능 유지 및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거지 관리를 위하여 「대홍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대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대홍동 234번지 일대	29,790	-	29,790	서울시고시 제2005-391호 (2005.12.1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790	-	29,790	100.0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5,570	-	5,570	18.7	
	제3종일반주거지역	24,220	-	24,220	81.3	

나. 용도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서강로	중심지 미관지구	연대~공덕동 ~삼각지	110,400 (5,787)	4,600 (436)	양측12	서고164호 82.4.22	-
기정	-	-	일반 미관지구	아현고가~용강동	48,000 (960)	2,000 (82)	양측12	서고164호 82.4.22	-

※면적, 연장, 폭원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8	30	주간선 도로	3,100 (14)	원효로 1가	신수동	일반 도로	1986.7.23	
기정	대로	3	14	25	보조 간선 도로	1,600 (13)	대흥동	용강동	일반 도로	1962.12.8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540 (92)	대흥동 50-2	대흥동 338	일반 도로	1964.1.24	
신설	소로	3	-	3	국지 도로	32	염리동 106-2	대흥동 486-2	보행자 우선도로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 (염리동 106-2 ~ 대흥동 468-2)	• 노선 신설 (B= 3m, L = 32m)	• 경의선숲길공원변 단절된 도로 확보를 위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목 적을 위한 도로(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염리동 106-2일대	31,330.3 (159.0)	-	31,330.3 (159.0)	서울시고시 제2011-401호 2011.12.29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SR-1, SR-2, SR-3, SR-4	-

나. 획지 계획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의선숲길공원 변	
신설	2,000㎡	1,500㎡	300㎡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최대개발규모 신설

※넓은 도로변 최대개발규모 적용(단, 경의선 숲길공원 변 제외)

■ 획지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 번호	지 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획지선	SR-1	대흥동 216번지일대	6,600	특별계획구역-A블럭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획지선 삭제
	SR-2	대흥동 214번지일대	7,660	특별계획구역-B블럭	-	
	SR-3	염리동 155-6번지일대	9,310	특별계획구역-C블럭	-	
	SR-4	염리동 155-6번지일대	5,360	특별계획구역-D블럭	-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와 같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

(1) 권장용도

구 분		용 도 지 역	권 장 용 도
기정	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의선숲길공원 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관광휴게시설

(2) 불허용도

구 분		용 도 지 역	불 허 용 도
기정	1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 특별계획구역-A,B블럭은 1~3층까지 적용
	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변경	지상1층	준주거지역 (백범로 전면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전층		■ 단독주택(주거복합 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3종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
	전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지상1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의선숲길공원 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용도지역이 2이상 혼재된 필지의 경우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의 불허용도 계획에 따름(단, 경의선 숲길공원변은 숲길공원변 용도 적용)

나. 건축물 밀도

(1) 건폐율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50%이하	60%이하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건폐율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 적용(단, 관계 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을 따름)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2) 용적률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정	기준용적률	220%		■ 면적기준에 따른 가중평균 적용
	허용용적률	24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함) 면적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
변경	기준용적률	준주거지역	3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 적용(단, 관계 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을 따름)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상한용적률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을 말하며, α 란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임

다.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정	전구역	최고높이	60m 이하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가능, 단, 용적을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변경	준주거지역 (백범로변)	최고높이	40m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 적용(단, 관계 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을 따름, 결정도 위치 표기)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변)		25m ~ 4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의선숲길공원변)		20m 이하	

■ 높이 완화계획

구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고
준주거(간선)	32m	40m	기준높이: 최고높이의 0.8 적용
3종(이면)	20 ~ 32m	25 ~ 40m	
3종(경의선숲길공원 변)	16m	20m	

■ 높이 완화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높이 $\times \alpha$	• 2필지 : 0.2 / 3필지 : 0.25 / 4필지 이상 : 0.3
	공동개발(권장)	기준높이 $\times \alpha$	• 2필지 : 0.1 / 3필지 : 0.15 / 4필지 이상 : 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5$
	벽면한계선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5$
	공공보행통로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 벽면한계선 중복 불가
	보차혼용통로	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높이 $\times$ (권장용도 면적 $\div$ 1층 바닥면적) $\times \alpha$	•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25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5

- 주) 1. 용적을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 가능
2.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라. 건축물 배치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기정	건축 한계선	■가로보행환경 제고 ■유효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서강로, 대흥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원활한 차량소통	■소공원변, 도시계획도로변, C블럭내 도로, 동측도로변, 남측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변경	건축 한계선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	■백범로, 대흥로변	■3m (결정도 위치 표기)
			■백범로16길 변	■1m (결정도 위치 표기)
			■이면도로 보차혼용도로변	■폭 4m (결정도 위치 표기)
신설	벽면 한계선	■경의선 숲길공원변 원활한 차량소통	■경의선 숲길공원변	■2.5m(유효높이 6m) (결정도 위치 표기)
			■이면도로 공공보행도로변	■폭 2m (결정도 위치 표기)

■ 건축한계선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정	SR-1	특별계획구역 -A블럭	■서강로변, 대흥로변 : 3m ■도시계획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
	SR-2	특별계획구역 -B블럭	■서강로변, 소공원변 : 3m ■도시계획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SR-3	특별계획구역 -C블럭	■서강로변, 소공원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SR-4	특별계획구역 -D블럭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서측이면도로변 : 3m	
변경	전구역		■백범로, 대흥로변 : 3m ■백범로16길 변 : 1m ■이면도로 보차혼용도로변 : 폭3~4m	결정도 표기

■ 벽면한계선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전구역	■경의선 숲길공원변 : 2.5m(유효높이 6m) ■이면도로 공공보행도로변 : 폭2m	결정도 표기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전면공지	특별계획구역-A블럭	■서강로변, 대흥로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
		특별계획구역-B블럭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서측도시계획도로변	
		특별계획구역-C블럭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이면도로변	
		특별계획구역-D블럭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변경	전면공지	전구역	■폭6m 이상 도로변 및 공공보행통로의 건축한계선 후퇴부 : 보도부속형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한계선 후퇴부 : 차도부속형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전면공지 변경
폐지	공개공지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역 입구 : 1개소(침상형으로 조성)	
		특별계획구역-B블럭	■소공원변 : 1개소	
		특별계획구역-C블럭	■소공원변 : 1개소	
		특별계획구역-D블럭	■동측도로변 : 1개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정	SR-1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로,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SR-2	특별계획구역-B블럭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SR-3	특별계획구역-C블럭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SR-4	특별계획구역-D블럭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변경	전구역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백범로 및 대흥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경의선 숲길공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폐지	결정도 표시

■ 보차혼용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전구역	■이면도로변 보차혼용도로 4개소 신설 (폭 3~4m)	-

■ 공공보행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전구역	■염리동 155-12, 155-13 경계부 3개소 신설 (폭 2m)	-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 태	고층부 형태	• 탑상형 건축물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유도	-
	저층부 형태 (5층이하)	• 넓은 쇼윈도 설치 / 투시형셔터 및 투시형 벽 설치 •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서강로변, 경의선지상부공원변 양방향으로 개구부 설치	-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
	개구부	•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 •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을 50%이상으로 유도 • 경의선지상부공원 방향으로 개구부 설치시에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계획과 연계된 가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용토록 함. (건축물 전면부의 50%이 상, 내부깊이 2m이상 오픈 유도)	-
	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 시 등 관련규정 준수	
환 경 친화적건축 물	자연지반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 설치시만 인정	-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동 216번지 일대	6,600	감) 6,600	-	
신설	특별계획구역-B블럭	대흥동 214번지 일대	7,660	감) 7,660	-	
신설	특별계획구역-C블럭	염리동 155-6번지일대	9,310	감) 9,310	-	
신설	특별계획구역-D블럭	염리동 156-1번지일대	5,360	감) 5,36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해 제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동 216번지 일대	6,600	'2008년 특별계획구역 결정 이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개별 건축 등 개발여건 향상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해제
해 제	특별계획구역-B블럭	대흥동 214번지 일대	7,660	
해 제	특별계획구역-C블럭	염리동 155-6번지 일대	9,310	
해 제	특별계획구역-D블럭	염리동 156-1번지 일대	5,360	

5.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인센티브(기정)

구 분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항 목				
A,B 블럭	건축물 용 도	최상층 용도지정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 0.1 \times \alpha$	■ α =스카이라운지 조성면적비율 (조성면적/최상층전체면적)
A블럭	건축물 형 태 및 외 관	지하철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5$	■지하철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전체 구역		경의선지상부공원 가로변1층부오픈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경의선가로변측 전면부의 50%이상, 내부깊이2m이상 오픈시 인정
		전면부 투시형벽면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1층 전면벽체의 50%이상 조성시 인정 (서강로, 대흥로 및 남측이면도로변)
전체 구역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보전 면적/대지면적) $\times 0.2$	-
		중수도시스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녹화 면적/대지면적) $\times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 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 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 계획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1등급 : $\alpha=0.08$ ■2등급 : $\alpha=0.05$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2.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20%는 친환경계획요소(환경친화적건축물)의 사용시에만 용적률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장기전세주택 도입) (기정)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적용
-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반영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패키지로 완화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기준

종전용도지역 적용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층이하	12층이하		
기준용적률	200	200	250	400
(패키지)허용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우수디자인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친환경 건축물 등	430	430	450	500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138	138	120	50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6/10 -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경우 (준주거지역) 5/10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500	500	500	500이상

-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기준 적용

구 분		내 용
필수	① 우수디자인	건축설계경기 등을 통한 우수디자인
	② 커뮤니티 지원시설	게스트 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선택 2개	③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75점이상-서울시 권장기준)
	④ 신재생에너지 사용	총건축비 및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⑤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⑥ 공공시설물 설치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 시설 등
	⑦ 역사문화보존계획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존

※ 7가지 사항 중 총 4가지 이상 의무 적용

●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준수 사항

항 목		내 용	준 수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조성시	■대흥로변, 서강로변, 동남측 이면도로변	-
	공개공지	위치및 규모준수	■동측이면도로변(1개소), 소공원변(2개소) 대흥역 입구(1개소)	■대흥역 입구는 침상형공지 로 조성 (권장)
	건축한계선	준수시	■종합지침도에 따라 준수	-
보행 및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준수시	■대흥로변, 서강로변, 동측이면도로변	■서강로에서의 차량진입 은 각블럭별로 1개소씩 허용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특별계획구역-B블럭에 1개소 신설	■폭원 6m

○ 노후도 기준 완화

-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수가 1/2 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

○ 기타 사항

-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계법령 준용

■ 인센티브(변경)

①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5 / 3필지 : 0.2 / 4필지 이상 : 0.2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 0.1 / 3필지 : 0.15 / 4필지 이상 : 0.2
	적정개발규모유도	기준용적률 $\times 0.2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 (필로티 구조 $\alpha = 0.5$)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7$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필로티 구조 $\alpha = 0.1$)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 (필로티 구조 $\alpha = 0.5$) (벽면한계선 중복 불가)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8$ (필로티 구조 $\alpha = 0.4$) (건축한계선 중복 불가)
건축물 권장용도	권장용도(1층)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 면적 \div 1층 바닥면적) \times \alpha$	• 1층 바닥면적 20% 이상 : 0.05 1층 바닥면적 50% 이상 : 0.1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 연면적) \times \alpha$	• $\alpha = 3$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 설치한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행개선	지하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5$

- 주) 1. 미관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적 및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면적산정시 제외
 2. 1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적용은 경의선 숲길공원변 필지에 해당하며 1층 권장용도 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 제외)
 3. 자율적 공동개발(적정개발규모 유도)는 적정개발규모(대지면적 180㎡)이하인 부지를 공동개발을 통해 적정개발 규모 이상의 부지로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공동개발 계획 되지 않은 대지면적 180㎡ 이상의 단일필지 포함)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최우수(1등급) : 0.12 - 우수(2등급) : 0.08 - 우량(3등급) : 0.04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1등급 : 0.08, 2등급 : 0.06 3등급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준용적률 $\times \alpha$	1등급 : 0.12, 2등급 : 0.10 3등급 : 0.08, 4등급 : 0.06, 5등급 :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25$

주) 1.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필지간 공동개발의 지정 및 권장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에 대한 사항
8.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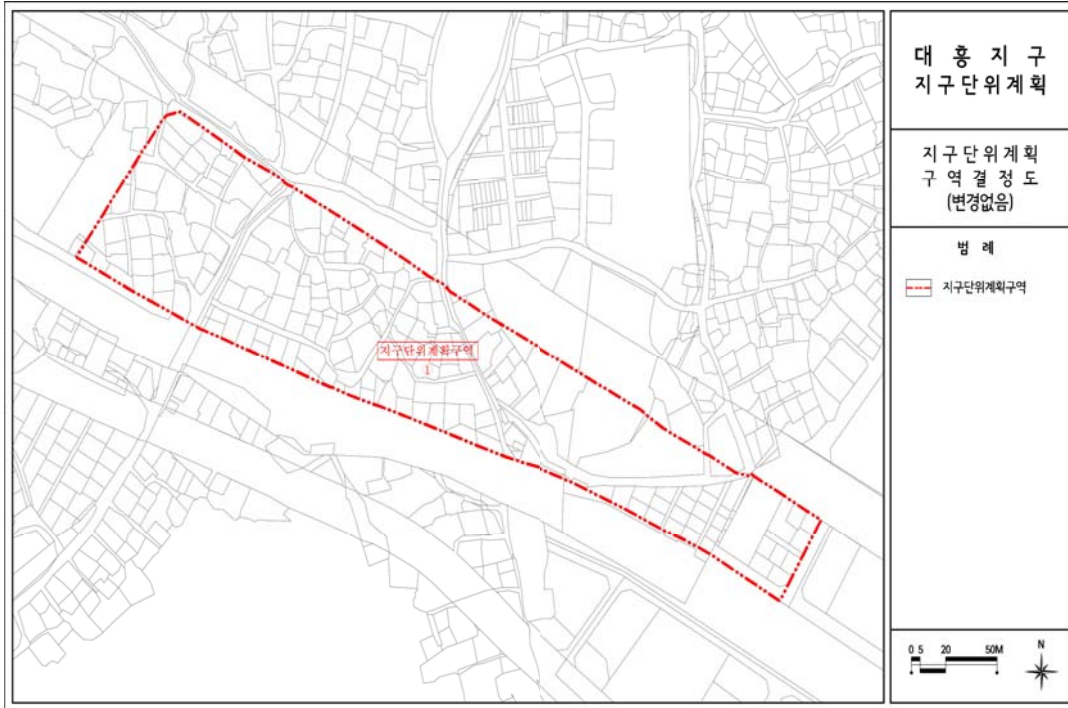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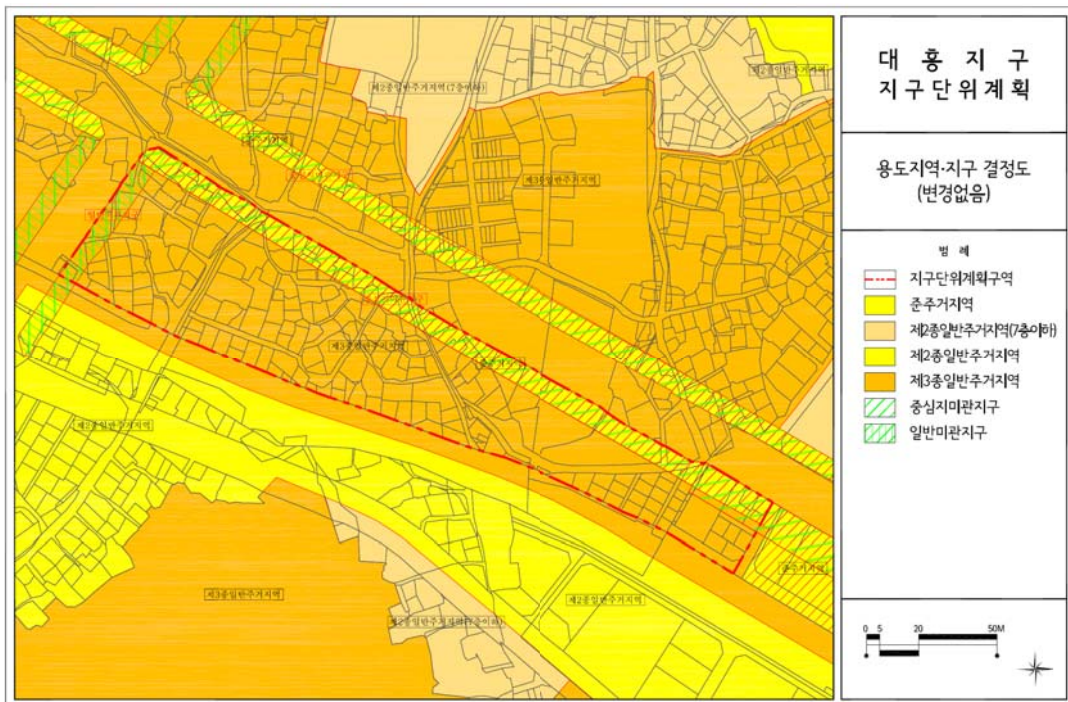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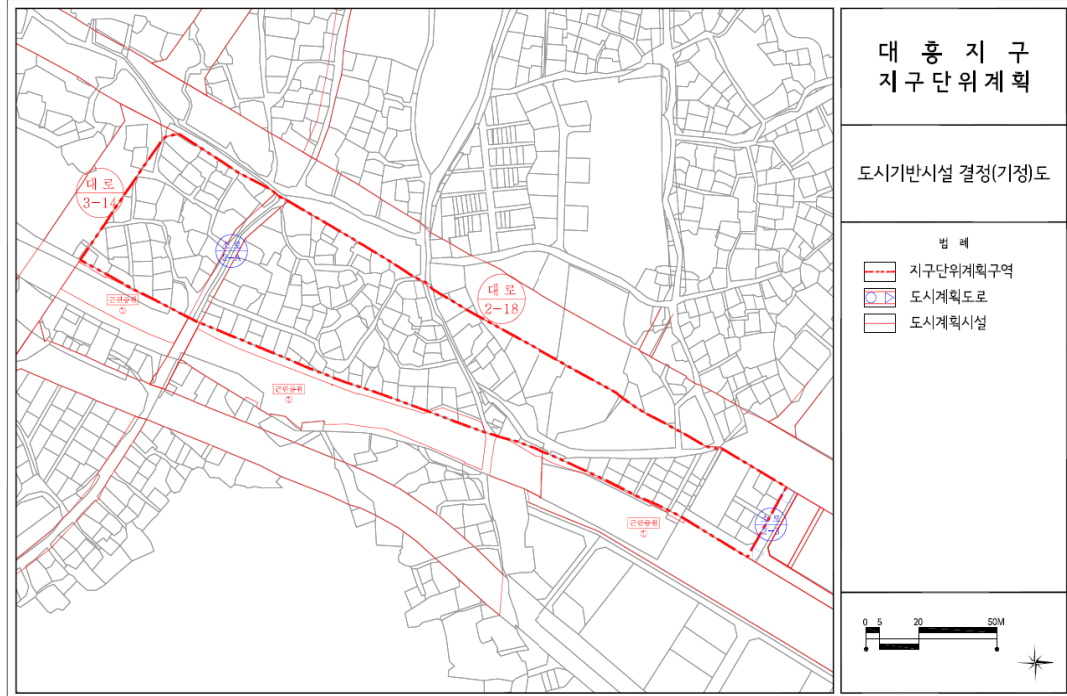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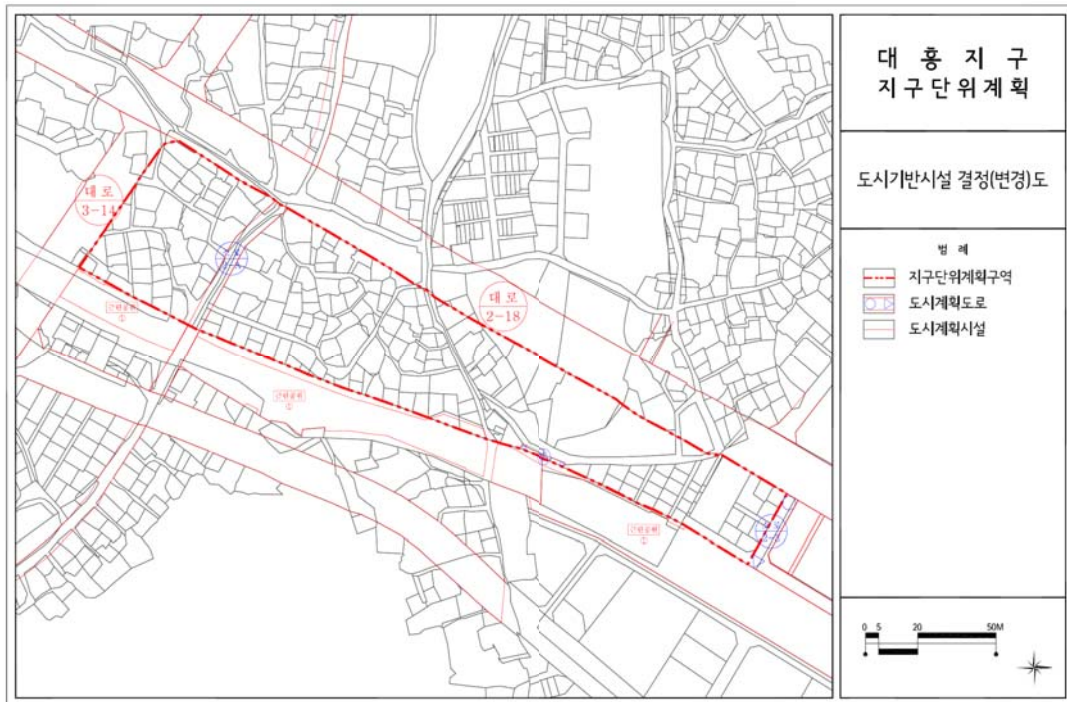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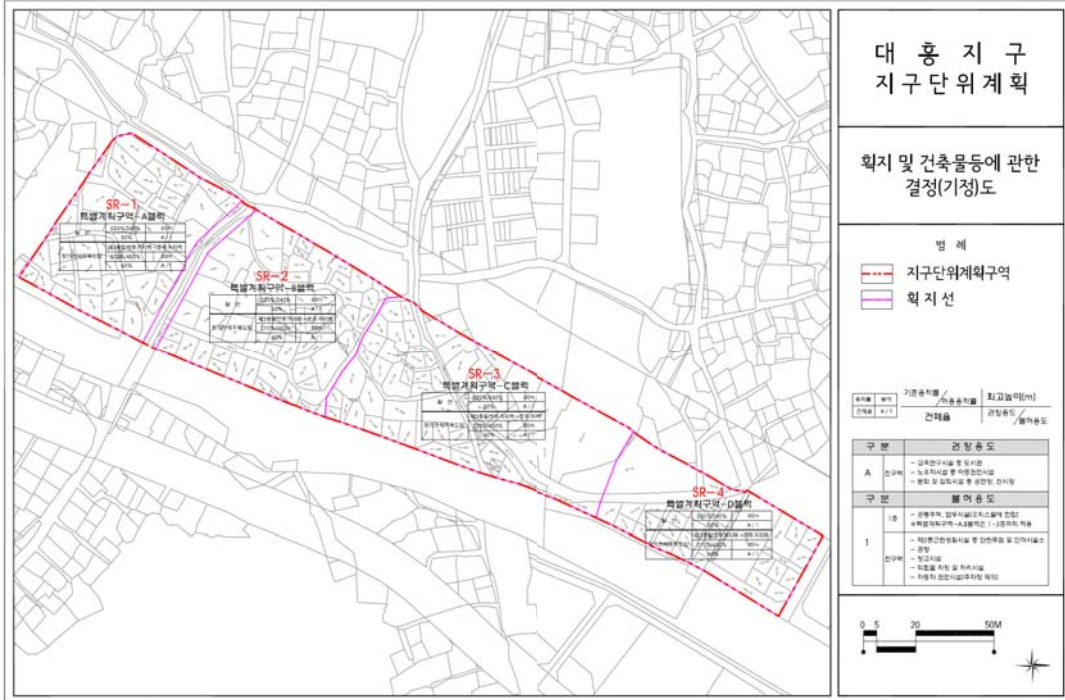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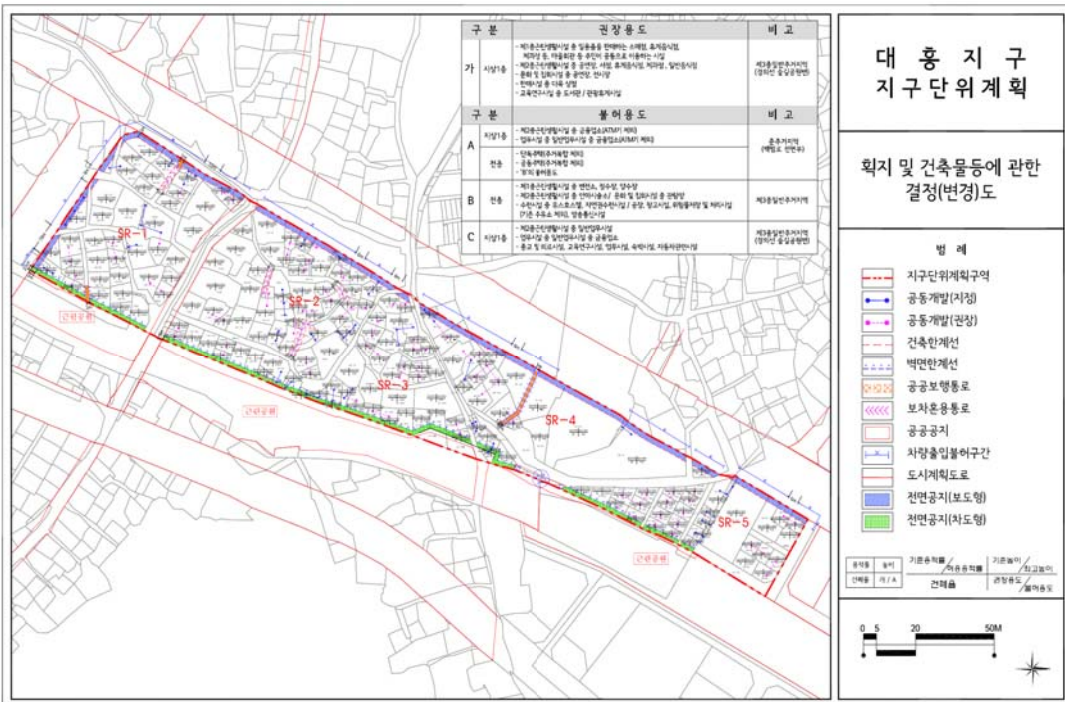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증 · 감	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8,013.1	-	738,013.1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년도 : 201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38,013.1	-	738,013.1	100.0	-
획지	소 계	499,336.2	증) 6,414.0	505,750.2	68.5	-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
	공동주택	304,421.0	증) 6,407.0	310,828.0	42.1	-
	복합시설	148,709.2	-	148,709.9	20.1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8,626.0	증) 7.0	8,633.0	1.2	-
기반 시설	소 계	238,676.9	감) 6,414.0	232,262.9	31.5	-
	공원녹지	49,899.6	감) 2,637.6	47,262.0	6.4	-
	공공시설	16,165.0	증) 393.0	16,558.0	2.2	-
	공공공지	10,353.4	감) 10,175.4	178.0	0.1	-
	문화시설	-	증) 5,566.0	5,566.0	0.8	-
	학 교	59,407.0	-	59,407.0	8.0	-
	도 로	102,851.9	증) 440.0	103,291.9	14.0	-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경계 조정 및 문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9,700	9,952	26,013	26,694	
기시행구역		475	511	1,282	1,379	
존치지역		1,471	1,471	3,796	3,796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7,754	7,970	20,935	21,519	
	40㎡ 이하	635	638	1,714	1,723	
	40㎡ ~ 60㎡	2,600	2,735	7,020	7,384	
	60㎡ ~ 85㎡	3,394	3,522	9,164	9,509	
	85㎡ 초과	1,125	1,075	3,037	2,903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인구수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교육 시설	계	2	59,407	-	59,407	
	초등학교	1	12,061	-	12,061	
	고등학교	1	47,346	-	47,346	
공공 청사	계	4	5,998	증) 393	6,391	
	치안센터	1	400	-	400	
	주민센터	1	2,971	증) 393	3,364	변경
	일자리+복지센터	1	2,027	-	2,027	
	도시재생지원센터	1	600	-	600	
문화시설	문화시설	1	-	증) 5,566	5,566	신설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경계 조정 및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주민센터 면적 증가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시설 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인구수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 정	증 · 감	변 경	
공원 시설	노량진 근린공원	1	-	1	49,899.6	감) 2,637.6	47,262.0	생태공원, 중앙공원, 송학공원, 노들공원, 대방공원, (유한)공원
공공 공지	공공공지	2	감) 1	1	10,353.4	감) 10,175.4	178.0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시설 계획에 따른 공공공지 1개소 폐지

5) 교통계획(변경)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 고
기정	1	뉴타운	노량진1동	232-19	7.3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2		노량진2동	278-2	13.1 13.2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3		노량진2동	294-220	7.4 7.3	21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2		노량진2동	312-75	1.6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3		노량진1동	227-5	4.1	21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4		노량진2동	270-3	3.7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5		대방동	13-31	3.3	195%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6		대방동	23-61	5.7	21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 노량진1,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8,013.1	—	738,013.1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2,296.5	감) 134.0	462,162.5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1,184.0	증) 934.0	132,118.0	주택재개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7.0	—	16,207.0	주택재개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153.0	—	73,153.0	주택재개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40,753.0	—	40,753.0	주택재개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6,918.0	—	36,918.0	주택재개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3,892.0	증) 1,068.0	72,824.0	주택재개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7,035.0	—	57,035.0	주택재개발	
존치 구역	소계 (5개 구역)		147,416.0	—	147,416.0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노량진13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0	—	34,555.0	—	
존치시설		—	103,436.0	증) 134.0	103,570.0	—	※
기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학교용지 제척에 따른 존치시설 면적 증가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주거지역	계	131,184	증) 934	132,11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467	감) 490	16,977	12.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71	증) 113	3,084	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746	증) 1,311	112,057	84.8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노량진2~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주거지역	계	36,918	-	36,91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8	감) 147	1,411	3.8
	제3종일반주거지역	35,360	증) 147	35,507	96.2

※ 중로2-9호선(보행자우선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주거지역	계	73,892	감) 1,068	72,8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7,896	감) 3,039	4,857	6.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887	감) 3,041	5,846	8.0
	제3종일반주거지역	57,109	증) 5,012	62,121	85.3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경계 조정 및 촉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주거지역	계	33,154.5	-	33,154.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887.6	증) 890.4	7,778.0	23.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66.3	감) 890.4	2,075.9	6.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00.6	-	23,300.6	70.3

※ 공공공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변경)

구역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순부담률 (%)
			계	계획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	
합 계	기정	462,296.5	129,402.5	40,555.8	20,586.4	—	68,260.3	14.77
	변경	462,162.5	126,662.5	35,003.8	22,303.4	—	69,355.3	15.01
노량진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31,184	30,629	3,681	5,664	—	21,284	16.22
	변경	132,118	30,252				20,907	15.8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7	4,099	215	1,038	—	2,846	17.56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	28,853	14,415	5,046	—	9,392	12.84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753	10,008	2,095	2,100	—	5,813	14.26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6,918	8,391	467	1,034	—	6,890	18.66
노량진6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73,892	24,451	12,285	1,442	—	10,724	14.51
	변경	72,824	22,197	6,733	3,159		12,305	16.90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0,676.5	5,442.5	1,061	—	4,173	12.59
노량진8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035	12,295	1,955.3	3,201.4	—	7,138.3	12.52
	변경		12,186				7,029.3	12.32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면적 변경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면적은 건축물(문화시설 5,566㎡)환산 기부채납면적 반영(3,719㎡)

※ 중로2-9호선(보행자우선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면적 변경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역명		계 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 계	기정	7,754	6,370	1,384	574	539	250	21	22
	변경	7,970	6,567	1,403	577	541	264	21	23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997	1,657	340	162	140	38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421	315	106	—	—	85	2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1,012	838	174	80	74	20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860	713	147	60	64	23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623	515	108	45	48	15	—	
노량진6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283	1,040	243	103	104	36	—	22
	변경	1,499	1,237	262	106	106	50	—	2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551	457	94	44	39	11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1,007	835	172	80	70	22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방재계획(변경없음)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20)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구역별 정비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노량진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31,184.0	100,555.0	190	250	22.49	244.21	-/30이하	-
	변경	132,118.0	101,866.0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7.0	12,108.0	190	414	43.59	397.94	-/29이하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	44,300.0	190	250	24.34	244.03	-/30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753.0	31,729.0	210	260	23.55	253.03	20/30이하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6,918.0	28,527.0	190	250	22.42	249.65	-/30이하	-
노량진6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73,892.0	49,352.0	210	300	18.90	260.02	-/28이하	-
	변경	72,824.0	54,346.0			20.61	268.01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22,478.0	195	240	23.67	237.44	18/30이하	-
노량진8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035.0	42,106.0	210	300	26.06	227.59	22/30이하	-
	변경		42,215.0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경계 조정 및 촉진계획 변경

※ 중로2-9호선(보행자우선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계	기정	7,754 (22)	6,370 (22)	1,872	3,373	1,125	1,384	574	539	250	21
	변경	7,970 (23)	6,567 (23)	1,991	3,501	1,075	1,403	577	541	264	
노량진1촉진구역		1,997	1,657	269	812	576	340	162	140	38	—
노량진2촉진구역		421	315	99	216	—	106	—	—	85	21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노량진4촉진구역		860	713	352	361	—	147	60	64	23	—
노량진5촉진구역		623	515	80	250	185	108	45	48	15	—
노량진6 촉진구역	기정	1,283 (22)	1,040 (22)	341	601	98 (22)	243	103	104	36	—
	변경	1,499 (23)	1,237 (23)	460	729	48 (23)	262	106	106	50	
노량진7촉진구역		551	457	208	230	19	94	44	39	11	—
노량진8촉진구역		1,007	835	325	460	50	172	80	70	22	—

※ ()는 부분임대 세대임

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변경)

※ 금회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사항은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계 조정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사항임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1,184	증) 934	132,118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131,184	증) 934	132,118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30,629	감) 377	30,252	22.9	－
	도 로	10,193	－	10,193	7.7	－
	공 원	17,465	감) 490	16,975	12.9	－
	공공시설	2,971	증) 113	3,084	2.3	－
택 지 (획 지)	소 계	100,555	증) 1,311	101,866	77.1	－
	1-1	30,702	－	30,702	23.2	－
	1-2	35,054	－	35,054	26.5	－
	1-3	16,410	증) 1,311	17,721	13.4	－
	1-4	12,081	－	12,081	9.2	－
	1-5	6,308	－	6,308	4.8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없음)

○ 공 원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1,855.0 (6,780)	감) 147 (-)	11,708.0 (6,780)	
변경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 일대	18,226.0 (10,685)	감) 2,490.6 (감) 490)	15,735.4 (10,195)	

주) ()는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②	노량진2동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번지 일대	2,971 (2,971)	증) 393 (증) 113)	3,364 (3,084)	

주) ()는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1 재정비	131,184	-	-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일대	830	-	-	830	-	-
변경	촉진구역	132,118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1 재정비 촉진구역	131,184	1-1	30,702	동작구노량진동 278-2번지일대	공동 주택	22.49 이하	244.21 이하	90이하	-	25층 이하						
			1-2	35,054	동작구노량진동 254-11번지일대												
			1-3	16,410	동작구노량진동 362-14번지일대												
			1-3	17,721													
변경		132,118	1-4	12,081	동작구 노량진동 242-9번지일대	주거 복합						60이하	200이하	-	-	7층 이하	
			1-5	6,308	동작구 노량진동 234-7번지일대												
			1-6	2,971	동작구노량진동 294-41번지일대	공공 청사											
			1-6	3,08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분		계	임대(㎡)				분양(㎡)								
		기정	주택 (호)	1,997	340	162	140	38	1,657	269	812						576
			비율 (%)	100.00	17.03	8.11	7.01	1.91	82.97	13.47	40.66						28.8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장승배기길 변 : 건축한계선 7.5m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5m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 다)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라)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36,918	-	36,918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8,391	-	8,391	22.7	-
	도 로	6,771	증) 147	6,918	18.7	-
	공 원	1,620	감) 147	1,473	4.0	-
택 지 (획 지)	소 계	28,527	-	28,527	77.3	-
	5-1	28,527	-	28,527	77.3	-

※ 중로2-7호선 및 중로2-9호선(보행자우선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0 (2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변경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5 (2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0 (-)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3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선형 변경

주) ()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㉓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1,855 (1,620)	감) 147 (감) 147)	11,708 (1,473)	

주) ()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3,892	감) 1,068	72,824	-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3,892	감) 1,068	72,824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4,540	감) 6,062	18,478	25.3	－
	도 로	7,719	증) 268	7,987	11.0	－
	공 원	7,536	감) 2,891	4,645	6.3	－
	공공공지	9,285	감) 9,285	－	－	－
	문화시설	－	증) 5,566	5,566	7.6	－
	공공시설	－	증) 280	280	0.4	－
택 지 (획 지)	소 계	49,352	증) 4,994	54,346	74.7	－
	6-1	18,776	증) 35,085	53,861	74.0	－
	6-2	30,098	감) 30,098	－	－	－
	6-3	478	증) 7	485	0.7	－

※ 구역경계 조정 및 문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0 (325)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변경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5 (33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0 (197)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20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선형 변경

주)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 원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 일대	18,226.0 (7,536)	감) 2,490.6 (감) 2,891)	15,735.4 (4,645)	

주)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폐지	②	공공공지	노량진동 294-432번지 일대	10,175.4 (9,285)	감) 10,175.4 (감) 9,285)	-	

주)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②	노량진2동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번지 일대	2,971 (-)	증) 393 (증) 280)	3,364 (280)	

주)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문화시설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314-10번지 일대	-	증) 5,566	5,566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6 재정비 촉진구역내	203	증) 47	250	
	주민공동시설		814	증) 36	850	
	경로당		282	증) 138	420	
	보육시설		276	증) 454	600	
	문고		208	증) 22	230	
	주민운동시설		894	증) 206	1,100	
	어린이놀이터		1,832	감) 32	1,800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6 재정비 촉진구역	73,892	-	-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일대	364	-	-	364	-	-
변경		72,824				347	-	-	347	-	-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6 재정비 촉진구역	73,892	6-1	18,776	동작구노량진동 194-198번지일대	공동 주택	18.90 이하	260.02 이하	90이하	-	28층 이하	
			6-2	30,098	동작구노량진동 302-72번지일대							
			6-3	478	동작구노량진동 294-399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변경		72,824	6-1	53,861	동작구 노량진동 194-198번지일대	공동 주택	20.61 이하	268.01 이하	90이하	-	28층 이하	
			6-3	485	동작구 노량진동 313-97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주택 (호)	1,283 (22)	243	103	104	36	1,040 (22)	341 -	601 -	98 (22)
			비율 (%)	100.0	18.94	8.03	8.11	2.80	81.06	26.58	46.84	7.64
		변경	주택 (호)	1,499 (23)	262	106	106	50	1,237 (23)	460 -	729 -	48 (23)
			비율 (%)	100.0	17.48	7.07	7.07	3.34	82.52	30.69	48.63	3.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12m,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대지내 통로 계획		●남북간 연결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B=10~15m)를 설치하되 24시간 개방할 것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	규모별 세대수				비고
					합계	40㎡이하	40㎡~50㎡	50~60㎡	
기정	노량진6구역	48,874	-	-	243	103	104	36	-
변경		53,861	-	-	262	106	106	50	

바)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33,154.5	－	33,154.5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0,676.5	－	10,676.5	33.2	－
	도 로	2,533.5	－	2,533.5	7.6	－
	공 원	6,887.6	증) 890.4	7,778.0	23.5	－
	학 교	365.0	－	365.0	1.1	－
	공공공지	890.4	감) 890.4	－	－	－
택 지 (획 지)	소 계	22,478.0	－	22,478.0	67.8	－
	7-1	22,478.0	－	22,478.0	67.8	－

※ 공공공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없음)

○ 공 원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226-7번지	6,881.6	—	6,881.6	
변경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 일대	18,226.0 (6.0)	감) 2,490.6 (증) 890.4	15,735.4 (896.4)	

주) ()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학 교 (변경없음)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공공공지	노량진동 294-432번지 일대	10,175.4 (890.4)	감) 10,175.4 (감) 890.4	—	

주) ()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57,035	－	57,035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3,548	감) 109	13,439	23.6	－
	도 로	11,296	감) 109	11,187	19.6	－
	학 교	799	－	799	1.4	－
	공공시설	1,453	－	1,453	2.6	－
택 지 (획 지)	소 계	43,487	증) 109	43,596	76.4	－
	8-1	42,106	증) 109	42,215	74.0	－
	8-2	1,381	－	1,381	2.4	－

※ 중로2-9호선(보행자우선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 도로	745 (268)	노량진동 240-79	대방동 23-5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류	9	15	특수 도로	640 (35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35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 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 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 43-2	일반도로	

주) ()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학 교 (변경없음)
- 공공청사 (변경없음)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57,035	8-1	42,106	동작구대방동 23-61번지일대	공동 주택	26.1 이하	227.6 이하	88이하	22층 이하	29층 이하	
			8-2	1,381	동작구대방동 44-1번지일대	종교 시설, 도로	건축법규에 따름					
변경			8-1	42,215	동작구대방동 23-61번지일대	공동 주택	26.1 이하	227.6 이하	88이하	22층 이하	29층 이하	
			8-2	1,381	동작구대방동 44-1번지일대	종교 시설, 도로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주택 (호)	1,007	172	80	70	22	835	325	460	5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8,013.1	－	738,013.1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722,477.1	－	722,477.1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9,790.6	감) 2,785.6	47,005.0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1,574.1	감) 3,684.4	167,889.7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109.6	－	127,109.6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4,002.8	증) 6,470.0	380,472.8	51.6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 ~ 40	주간선도로	6,490 (73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장승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변경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5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도로선형 변경
기정	중로	3류	A	12 ~ 15	집산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101	12		200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중로	3류	33	12	국지도로	3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46-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류	34	12	국지도로	65	노량진동 233-5	노량진동 248-1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도로		동작구고시 제2000-45호 2000.10.26	
기정	소로	2류	C	8	국지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D	8	국지도로	61	노량진동 256-51	노량진동 294-6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4.25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3류	3	6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A	6		130	대방동 39-1	대방동 68-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 1976.06.02	
기정	소로	3류	6	6~15	국지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7	4		93	노량진동 219-37	노량진동 215-87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C	4		242	노량진동 83-15	노량진동 92-2				사도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745	노량진동240-79	대방동23-5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도로	64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변경	중로	2류	9	15	국지도로	645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선형 변경
기정	중로	2류	25	15~20	집산도로	1,325 (292)	대방동49-6	상도동366-5	일반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등용길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제264호 1981.07.11	
기정	소로	3류	10	5~6	특수도로	25	대방동11-25	대방동11-8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기정	중로	2류	1	15~20	국지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03.12	만양로3길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43-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안은 지구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노량진근린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일대	413,203.0 (49,277.6)	감) 2,637.6	409,675.0 (46,640.0)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03.12	()는 지구 내
지 구 내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226-7번지	6,881.6		6,881.6	-	-
	②	노량진근린공원 (송학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번지일대	11,080.0		11,080.0	-	-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855.0	감) 147.0	11,708.0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일대	18,226.0	감) 2,490.6	15,735.4	-	-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119-171번지일대	1,235.0		1,235.0	-	-

☐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노량진동 329-12번지일대	178	-	178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2003.8.30)	-
폐지	②	공공공지	노량진동 294-432번지일대	10,175.4	감) 10,175.4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400	-	400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6.3)	-
변경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일대	2,971	증) 393	3,364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③	공공청사	동작구 일자리+복지센터	노량진동 225-171일대	2,027	-	2,027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600	-	6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영화초교, 영등포 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46	-	47,346	서울시고시 제178호 (1978.4.26)	-
기정	②	노량진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	-	12,061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	노량진동 224-6	159	-	159	동작구고시 제2008-33호 (2008.7.31)	-

☐ 문화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294-432일대	-	증) 5,566	5,566	-	-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마.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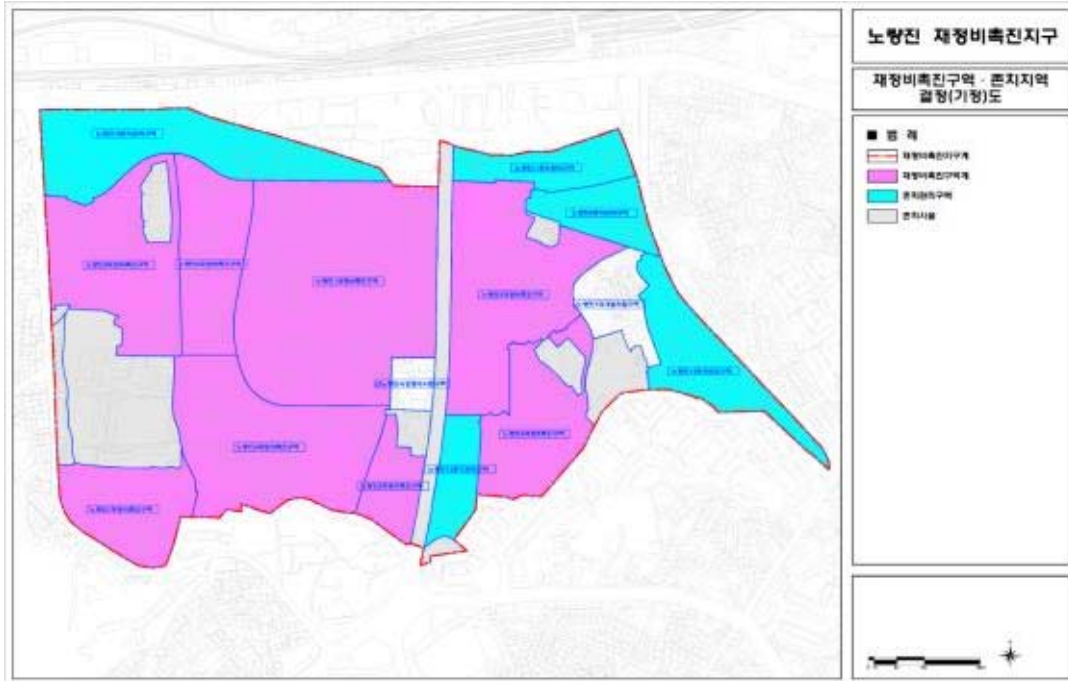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시민의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3) 및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26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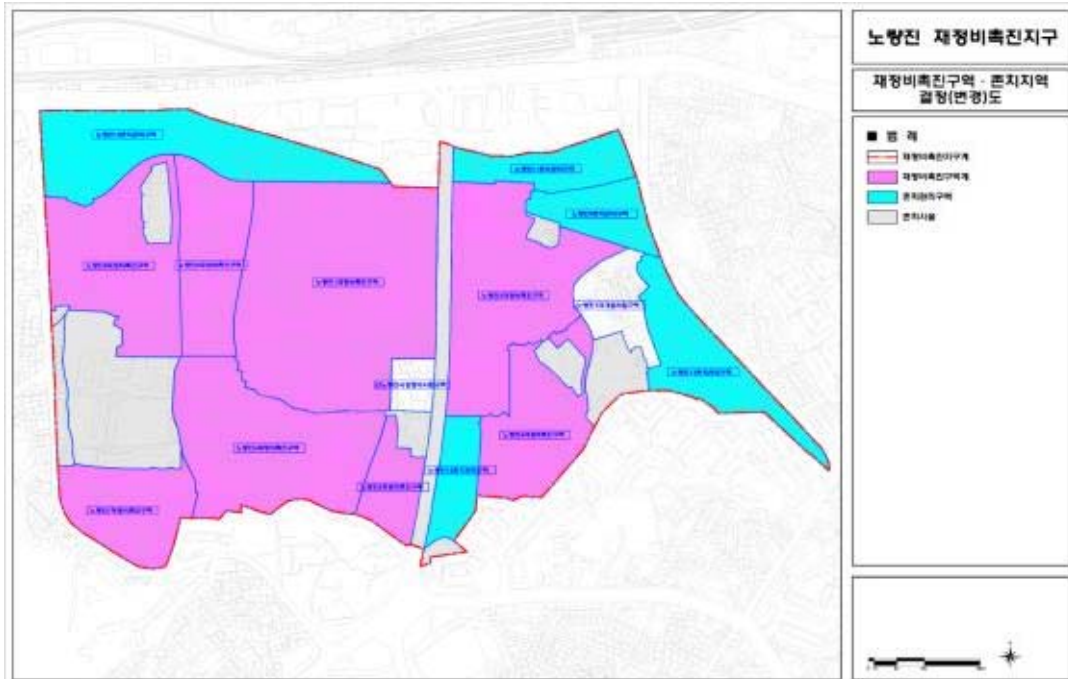
■ 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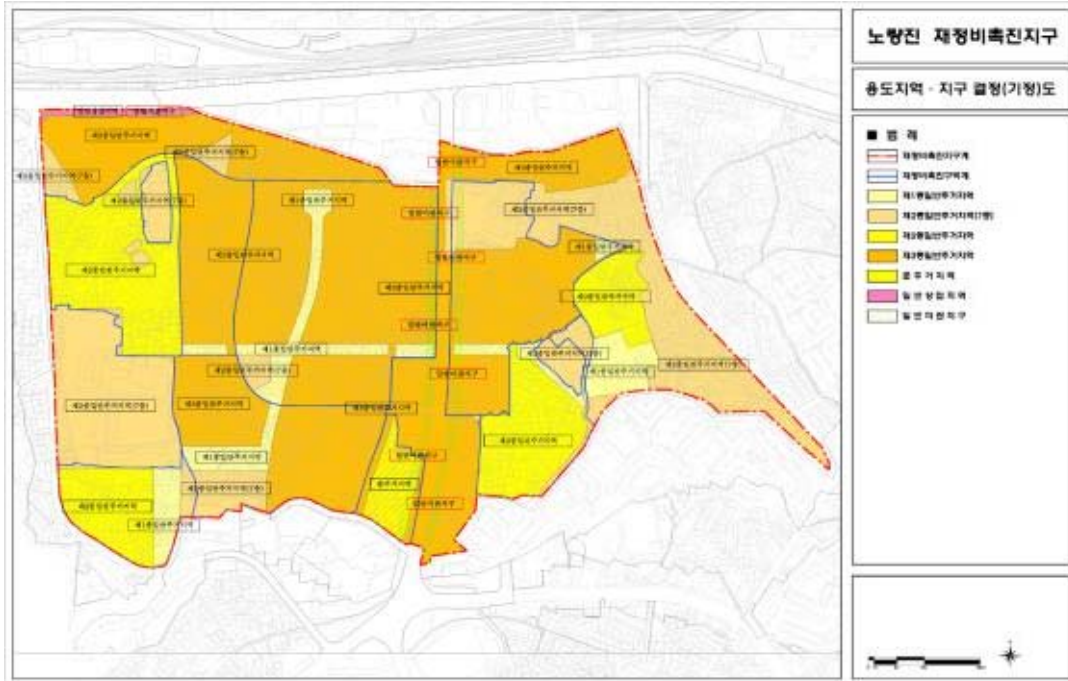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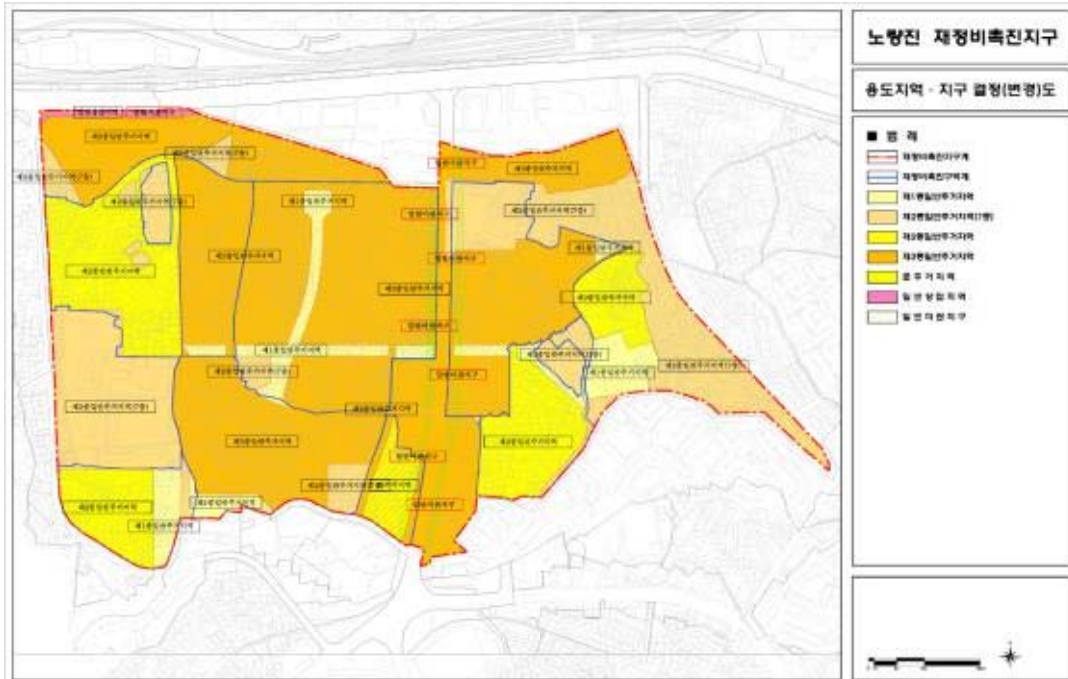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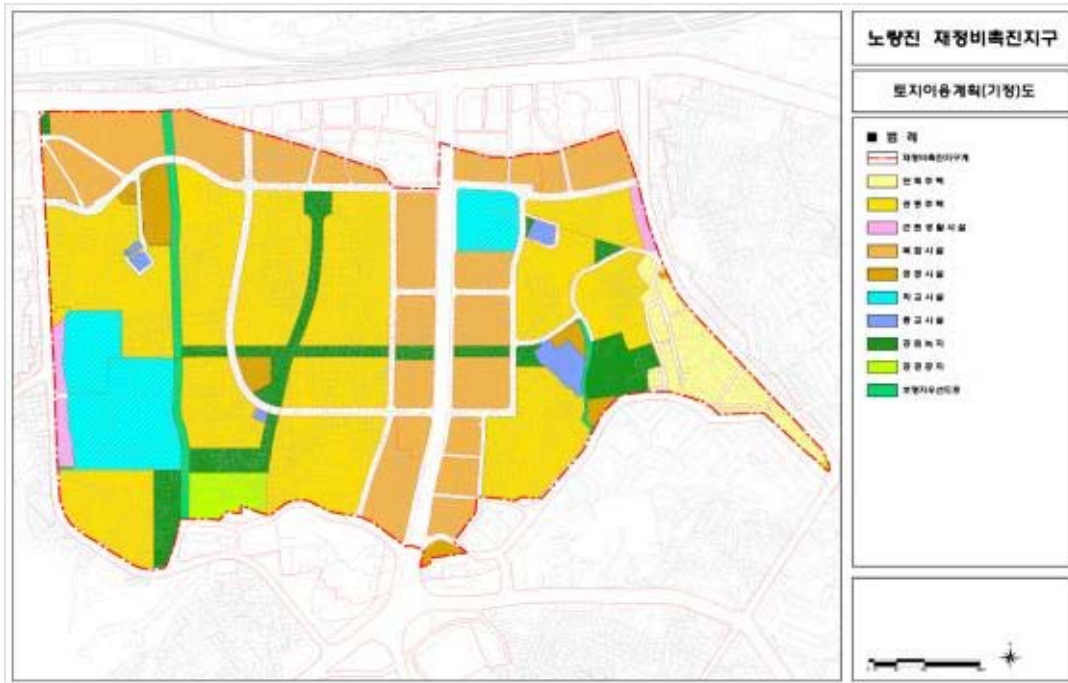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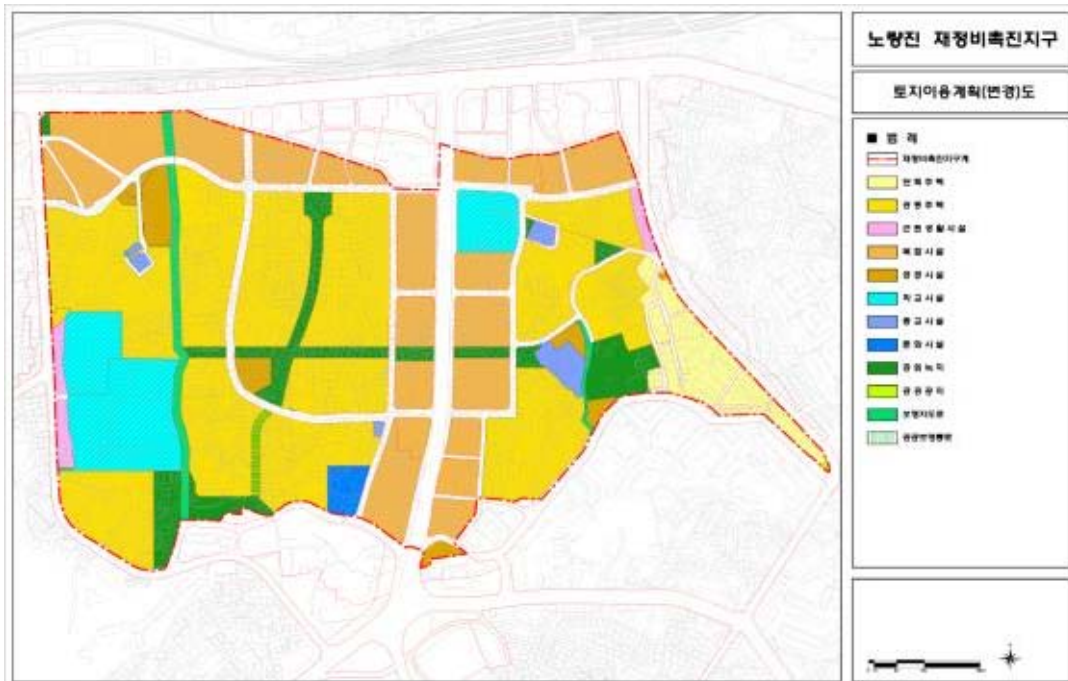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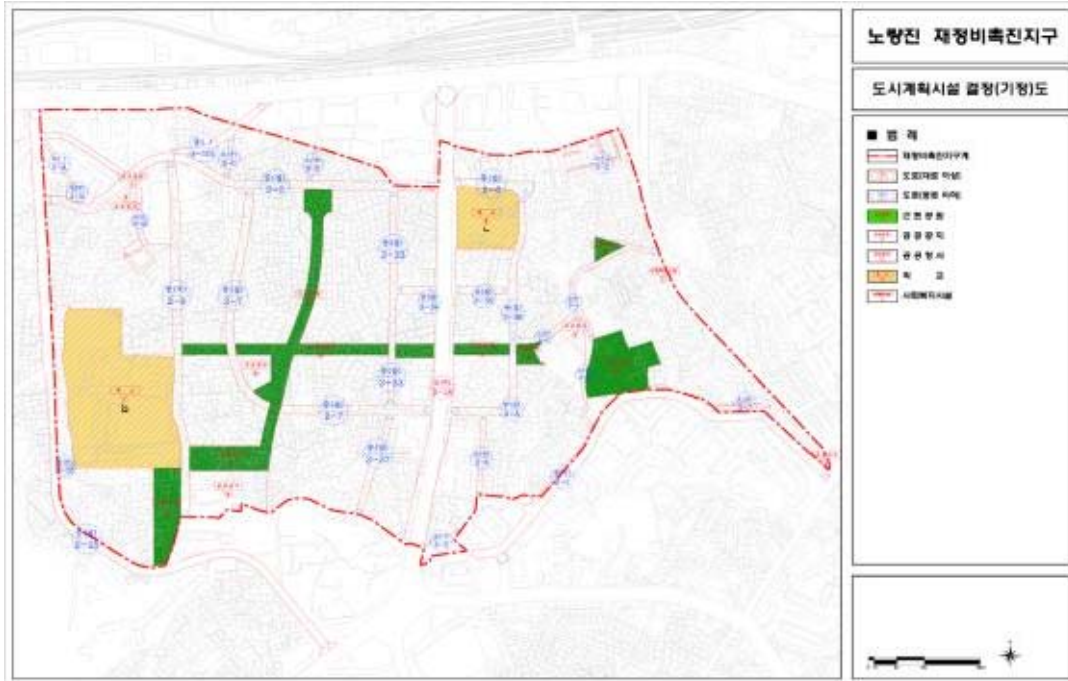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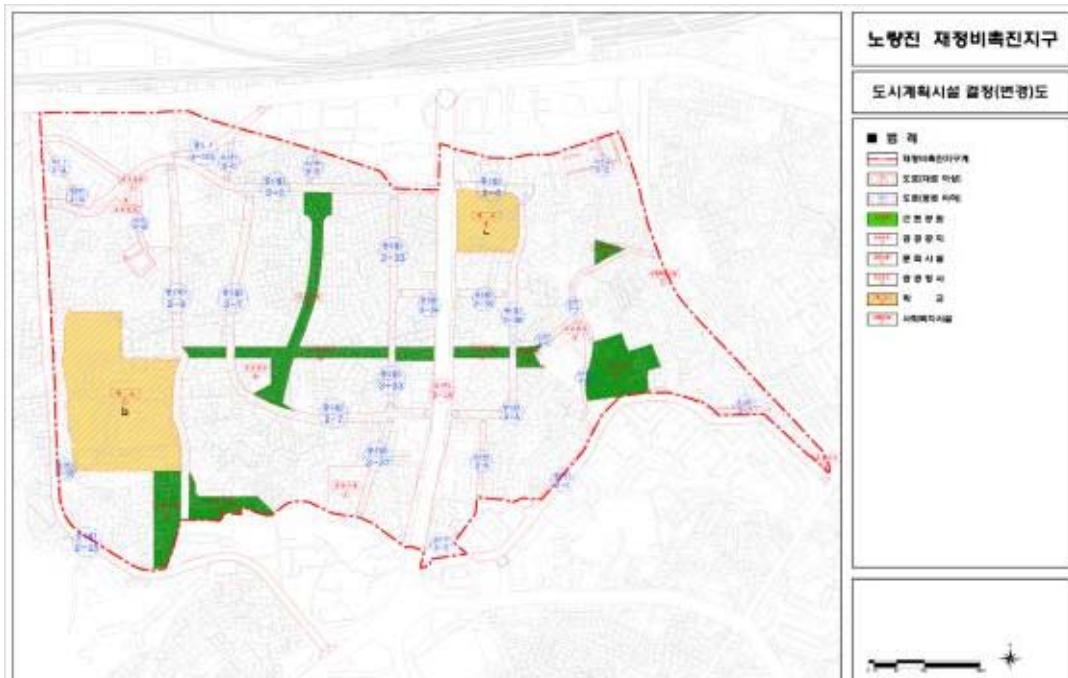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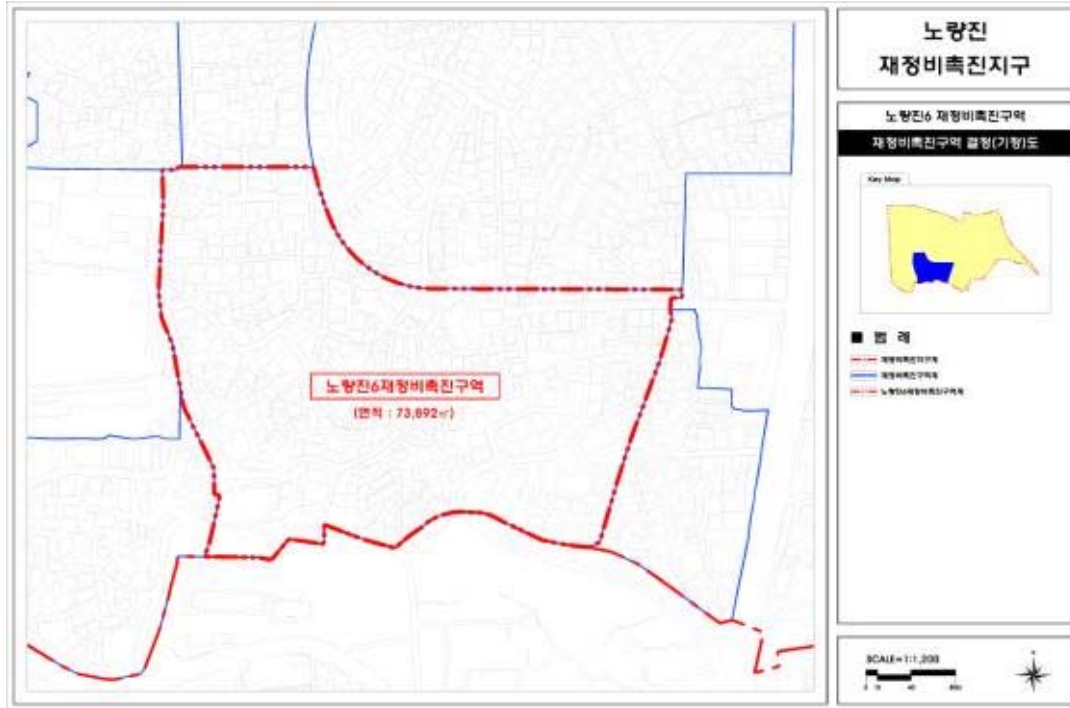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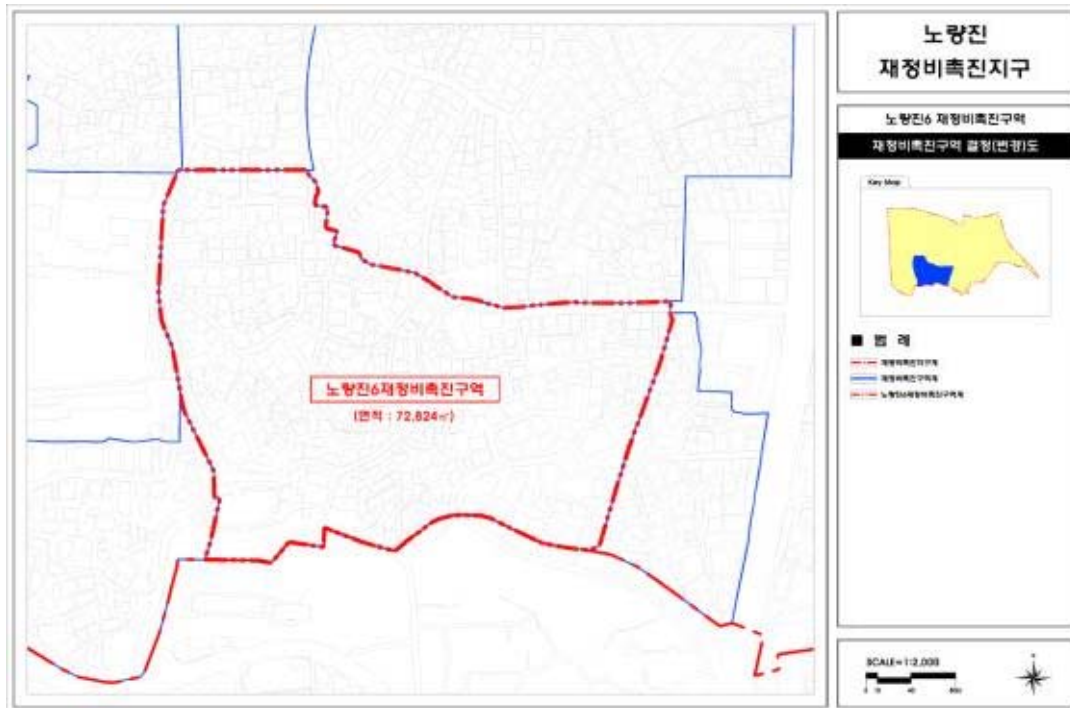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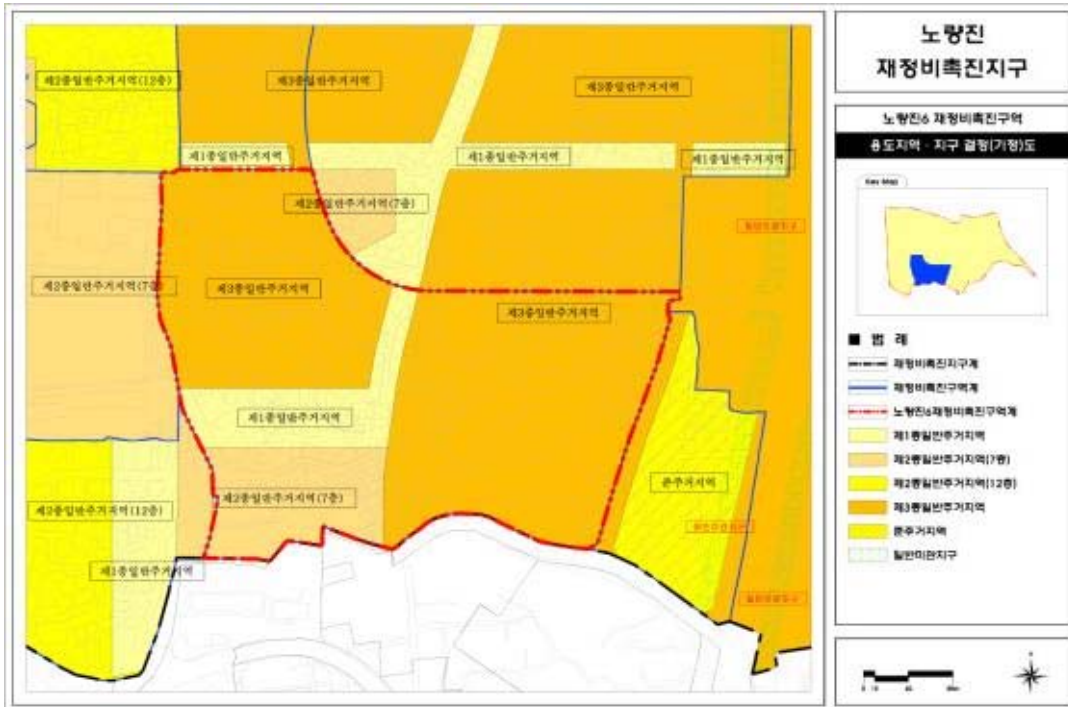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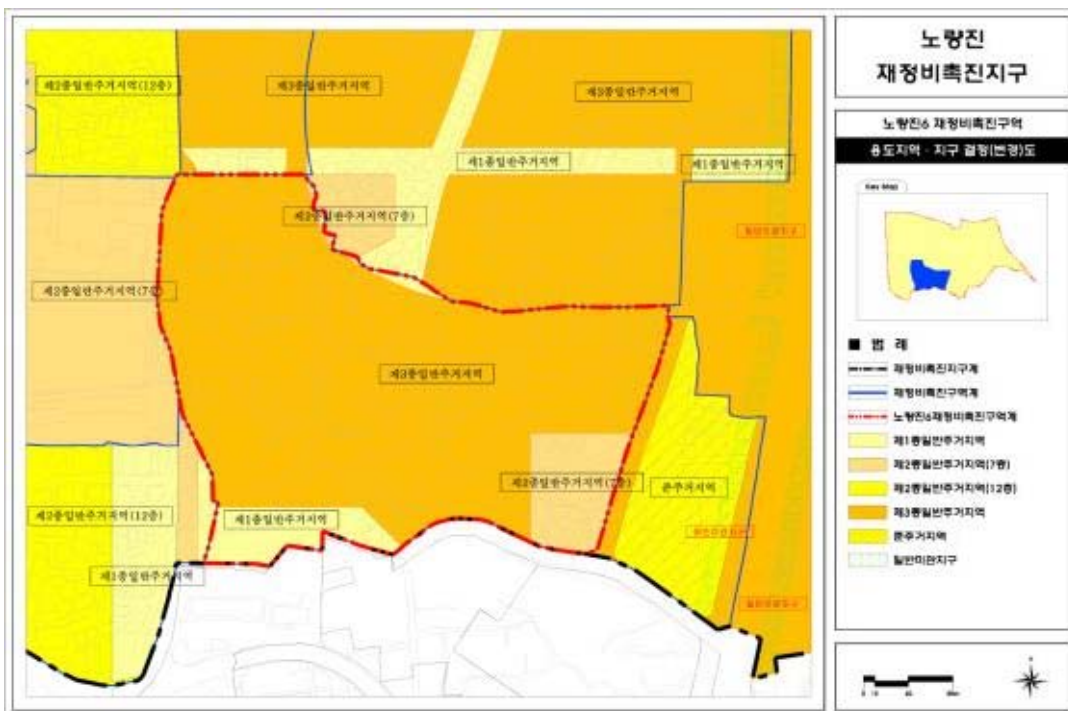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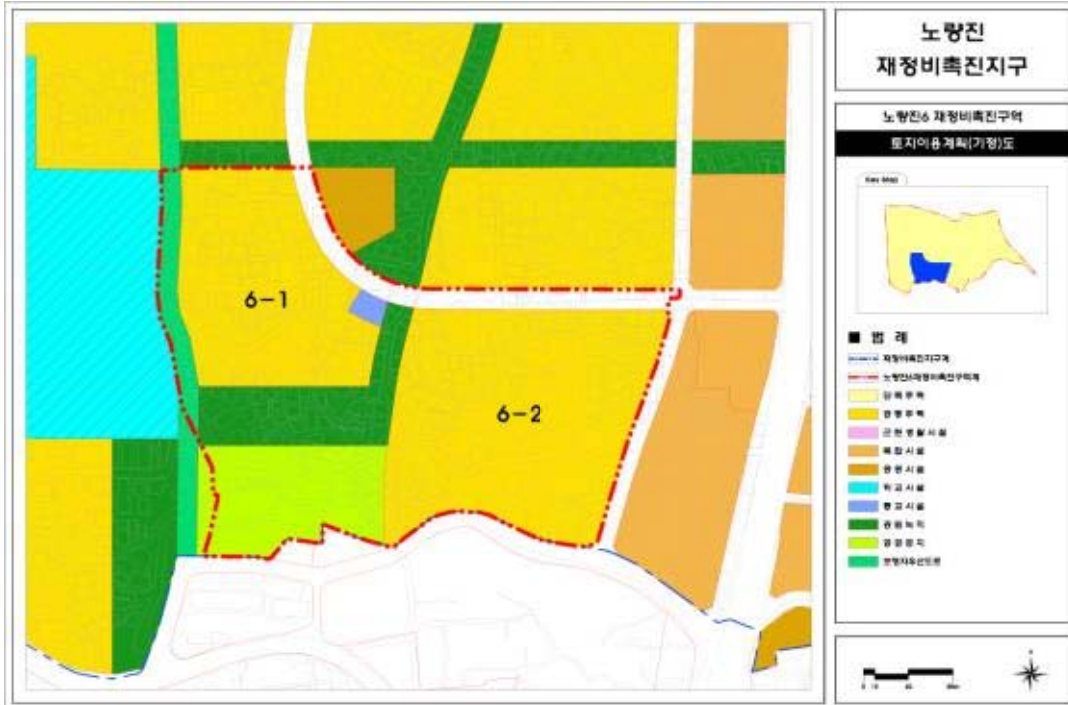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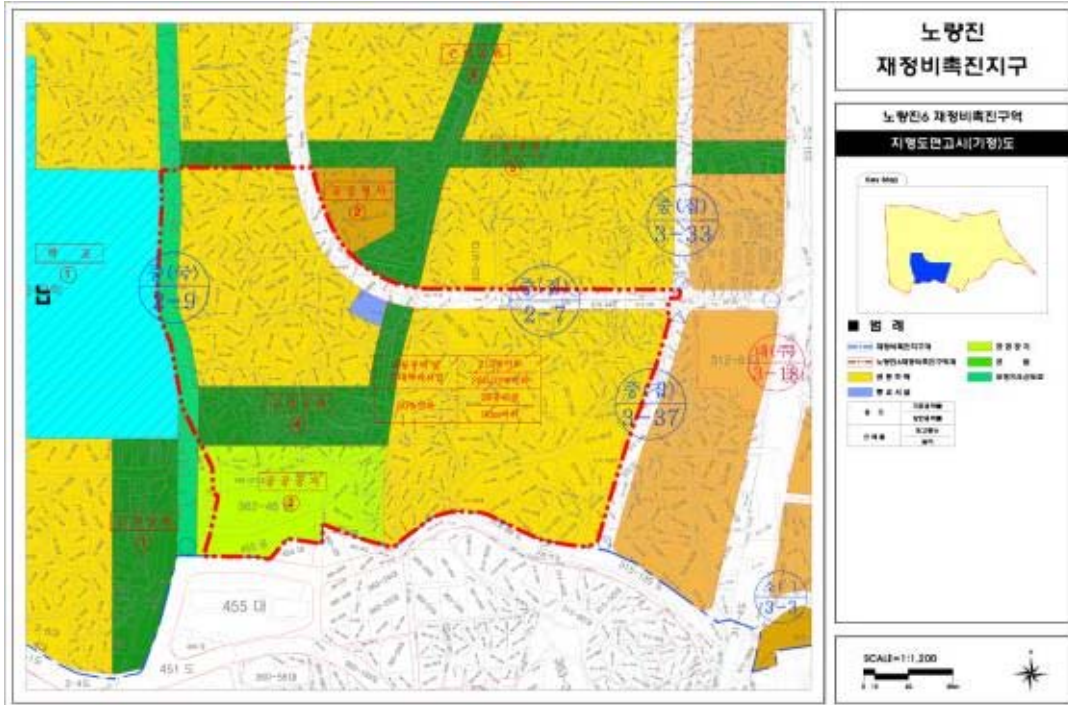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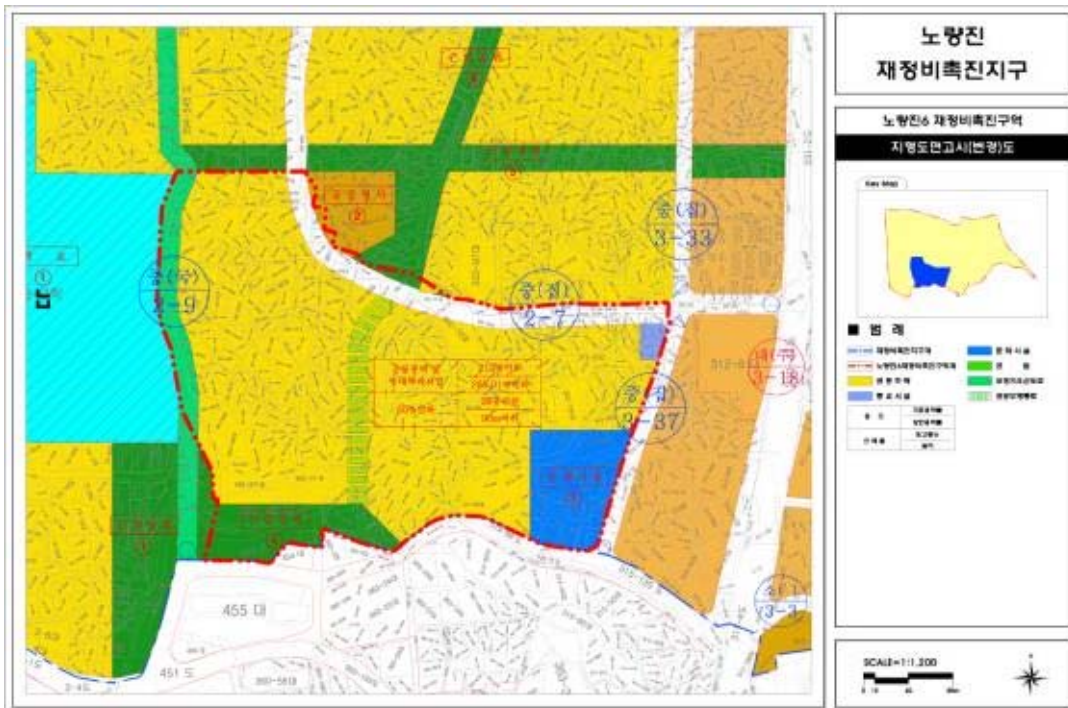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지형도면 고시(기정)도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4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3.30.)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2017.5.11.)호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증 감	변 경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67,873.5	감)29.1	167,844.4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150.4	감)104.2	160,046.2	100.0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6,801.4	100.0	8,844.4	100.0	
택지 (획지)	계	112,323.7	감)7.7	112,316.0	70.1	100,412.8	감)7.7	100,405.1	69.5	5,510.1	81.0	6,400.8	72.4	
	주택 용지	95,657.4	감)8.6	95,648.8	59.7	95,657.4	감)8.6	95,648.8	66.2	-	-	-	-	
	종교 시설	1,671.2	증)0.6	1,671.8	1.0	1,671.2	증)0.6	1,671.8	1.2	-	-	-	-	
	상업 업무	14,995.1	증)0.3	14,995.4	9.4	3,084.2	증)0.3	3,084.5	2.1	5,510.1	81.0	6,400.8	72.4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7,826.7	감)96.5	47,730.2	29.9	44,091.8	감)96.5	43,995.3	30.5	1,291.3	19.0	2,443.6	27.6	
	공원	7,068.3	증)126.2	7,194.5	4.5	6,234.3	증)126.2	6,360.5	4.4	834.0	12.3	-	-	
	녹지	1,044.3	감)1.3	1,043.0	0.6	1,044.3	감)1.3	1,043.0	0.7	-	-	-	-	
	도로	27,033.2	감)194.2	26,839.0	16.8	24,255.5	감)194.2	24,061.3	16.7	457.3	6.7	2,320.4	26.2	
	공공 공지	123.2	-	123.2	0.1	-	-	-	0.0	-	-	123.2	1.4	
	광장	594.5	-	594.5	0.4	594.5	-	594.5	0.4	-	-	-	-	
	공공 청사	2,920.7	감)27.2	2,893.5	1.8	2,920.7	감)27.2	2,893.5	2.0	-	-	-	-	
	문화 시설	9,042.5	-	9,042.5	5.7	9,042.5	-	9,042.5	6.3	-	-	-	-	

※ 167,844.4㎡(지구면적) - 7,718.6㎡(존치건물) - 79.6㎡(소로2-102호선 인접 존치부지) = 160,046.2㎡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	11,963.2	감)27.2	11,936.0	
문화시설	1	9,042.5	-	9,042.5	
공공청사	3	2,920.7	감)27.2	2,893.5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	8,830.3	증)124.9	8,955.2	
공원	소계	5	7,068.3	증)126.2	7,194.5	
	어린이공원	1	834.0	－	834.0	
	소공원	4	6,234.3	증)126.2	6,360.5	
녹지	완충녹지	2	1,044.3	감)1.3	1,043.0	
기타	소계	2	717.7	－	717.7	
	공공공지	1	123.2	－	123.2	
	광장	1	594.5	－	594.5	

5) 교통계획(변경)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변경)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삭제)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 변경사유 : 통일로변 좌회전 신호 신설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부결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7,873.5	감)29.1	167,844.4	
돈 의 문	촉진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227.7	감)29.1	152,198.6	도시환경 정비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	8,844.4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주거지역	소 계	140,738.7	감)107.0	140,631.7	97.4	
	일반 주거	제1종	18,965.7	감)68.0	18,897.7	13.1
		제2종(7층이하)	4,720.6	-	4,720.6	3.3
		제2종(12층이하)	40,871.3	-	40,871.3	28.3
		제3종	76,181.1	감)39.0	76,142.1	52.7
상업지역	일반상업	3,765.9	증)2.8	3,768.7	2.6	

- 변경사유 : 측량성과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면적 (㎡)	존치 면적 (㎡)	현 황(㎡)			사업구역 계획(㎡)					
명칭				계	대지	공공용지	계	사업시행면 적(㎡)	공공용지 부담계획(㎡)			공공용지 부담율 (%)
									소계	기존	부담	
기정	돈의문 1	144,504.6	548.5	143,956.1	111,895.7	32,060.4	143,956.1	102,785.0	41,171.1	32,060.4	9,110.7	8.14
변경	돈의문 1	144,400.4	548.5	143,851.9	111,791.5	32,060.4	143,851.9	102,750.1	41,101.8	32,060.4	9,041.4	8.09

- (2) 돈의문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재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227.7	감)29.1	152,198.6	

- 변경사유 : 촉진구역 변경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존치면적(7,798.2㎡) 제외
택지 (획지)	계	100,412.8	감)7.7	100,405.1	69.5	
	주택용지	95,657.4	감)8.6	95,648.8	66.2	·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 및 존치부지(서원빌딩)와의 경계조정에 따른 획지1-1의 면적변경 : 감)10.5㎡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1-2 면적변경 : 증)0.5㎡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1-3면적변경 : 감)1.1㎡ · 경찰청협의를 고려한 획지1-12 선형조정 : 증)2.5㎡
	종교시설	1,671.2	증)0.6	1,671.8	1.2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상업업무	3,084.2	증)0.3	3,084.5	2.1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증)0.3㎡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4,091.8	감)96.5	43,995.3	30.5	
	공원	6,234.3	증)126.2	6,360.5	4.4	·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공원의 면적변경
	녹지	1,044.3	감)1.3	1,043.0	0.7	
	도로	24,255.5	감)194.2	24,061.3	16.7	·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광장	594.5	-	594.5	0.4	
	공공청사	2,920.7	감)27.2	2,893.5	2.0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문화시설	9,042.5	-	9,042.5	6.3	

(나)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0,738.7	감)107.0	140,631.7	97.4
	일반 주거	제1종	18,965.7	감)68.0	18,897.7	13.1
		제2종 (7층이하)	4,720.6	-	4,720.6	3.3
		제2종 (12층이하)	40,871.3	-	40,871.3	28.3
		제3종	76,181.1	감)39.0	76,142.1	52.7
상업 지역	일반상업		3,765.9	증)2.8	3,768.7	2.6

- 변경사유 : 측량성과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도로(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77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3	16	집산도로	199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3-16.5	집산도로	815	평동 9-1	교북동 35-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0	13	집산도로	148	교북동 10-38	행촌동 37-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20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1	11	국지도로	224	평동 13-30	평동 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02	7.5-9.5 (5.1-8)	국지도로	309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폭원 및 선형변경 구역외 근린공원1 중복결정(면적231㎡) (종로구고시제2017-80호)
기정	소로	3	103	4	국지도로	64	교북동 35-7	교북동 10-9	일반도로	

주) ()안은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②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송월동 2-3 일원	3,202.9	증)126.2	3,329.1	
기정	④	공원	소공원	송월동 94-1 일원	1,812.4	-	1,812.4	
기정	⑤	공원	소공원	신문로2가 54 일원	727.6	-	727.6	
기정	⑥	공원	소공원	행촌동 180-31 일원	491.4	-	491.4	

※ 소공원4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변경 - 면적 : 3,202.9㎡ → 3,329.1㎡ (증:126.2㎡)	• 인접한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③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평동 76-13 일원	475.6	증) 0.3	475.9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평동 108 일원	386.8	감) 2.6	384.2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평동 18 일원	63.4	증) 1.0	64.4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평동 16-1 일원	118.5	-	118.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변경 - 면적 : 475.6㎡ → 475.9㎡ (증:0.3㎡)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녹지	• 변경 - 면적 : 386.8㎡ → 384.2㎡ (감:2.6㎡)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③	녹지	• 변경 - 면적 : 63.4㎡ → 64.4㎡ (증:1.0㎡)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④ 광장(변경없음)

⑤ 공공청사(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행촌동 180-10 일원	548.5	-	548.5	
변경	③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2,005.1	감)29.7	1,975.4	
변경	④	공공청사	파출소	행촌동 180-17 일원	367.1	증)2.5	369.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청사	• 변경 - 면적 : 2,005.1㎡ → 1,975.4㎡ (감:29.7㎡)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④	공공청사	• 변경 - 면적 : 367.1㎡ → 369.6㎡ (증:2.5㎡)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⑥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1	행촌동 27-1	12,766.80	50이하	-	250이하	23/3이하	70이하	주거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 및 존치부지(서원빌딩)와 의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12,756.30							
기정	1-2	홍파동 42-1	54,530.60	50이하	-	253이하	23/4이하	70이하	주거 /판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54,531.10							
기정	1-3	평동 13-1	26,281.5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주거 /판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26,280.40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4	교북동 11-2	4,074.30	-	-	-	-	-	주거/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50이하	70이하	주거	주거
			3,084.20	60이하	-	583이하	25/50이하	73이하	주거/판매 /업무	상업
변경			4,074.6	-	-	-	-	-	주거/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50이하	70이하	주거	주거
			3,084.50	60이하	-	583이하	25/50이하	73이하	주거/판매 /업무	상업
기정	1-5	행촌동 37-26	968.8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969.60							
기정	1-6	홍파동 5-18	702.4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702.20							
기정	1-7	행촌동 158-8	2,005.10	50이하	-	250이하	8이하	30이하	공공청사 (교통 순찰대)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1,975.40							
기정	1-8	행촌동 180-10	548.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주민 자치센터)	
기정	1-9	송월동 116	599.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주거/판매 /근린생활 시설	
기정	1-10	행촌동 180-17	367.1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파출소)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369.60							
기정	1-11	신문로2가 6	9,042.50	60이하	-	150이하	4이하	-	문화시설	
기정	1-12	교북동 10-38	488.9	50이하	-	323이하	7이하	28이하	주거/판매 /업무 /근린생활 시설	경찰청협의를 고려한 선형조정
변경			491.4							

주1) 획지 1-3의 부속용도의 경우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등

젊은이들의 이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

주2) 획지1-1의 공공보행통로(승강기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주거사업과)가 부담하며, 향후
유지관리비용은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에서 부담함

구 분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변경없음)	○건설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용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90.5%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9.5%						
	구 분	전용 면적	세 대 수		비 율	비 고	
			소 계				
	계	-	2,415	2,415		100%	
	전용 면적 85㎡ 미만	33㎡	16	2,185		0.6%	
		37㎡	91			3.8%	
		39㎡	232			9.6%	
		42㎡	136			5.6%	
		44㎡	68			2.8%	
		45㎡	75			3.1%	
		59㎡	400			16.6%	
		77㎡	71			2.9%	
	84㎡	1,096			45.4%		
전용 면적 85㎡ 이상	101㎡	130	230		5.4%		
	116㎡	79			3.3%		
	138㎡	21			0.9%		
건축한계선 (변경없음)	○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 3m ○중로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6m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중로2-43호선 북측 도로변 : 10m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새문안로 문화시설용지 : 3m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변경없음)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생활가로변 : 17m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차량진입금지 구간(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 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도록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완화하는 사항임 - 획지1-11(문화시설) 및 공원5 - 획지1-8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기타사항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 - 획지1-1에 중로3-40호선과 소로3-102호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확보 : 2m(신설)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변경)

-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삭제)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 변경사유: 통일로변 좌회전 신호 신설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 부결

5.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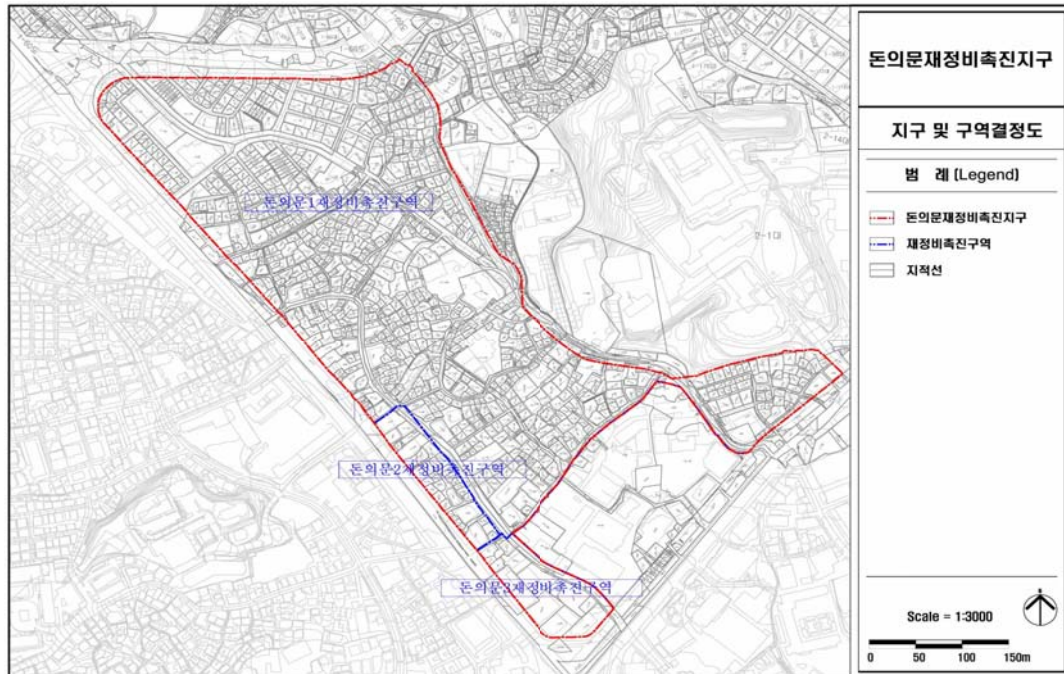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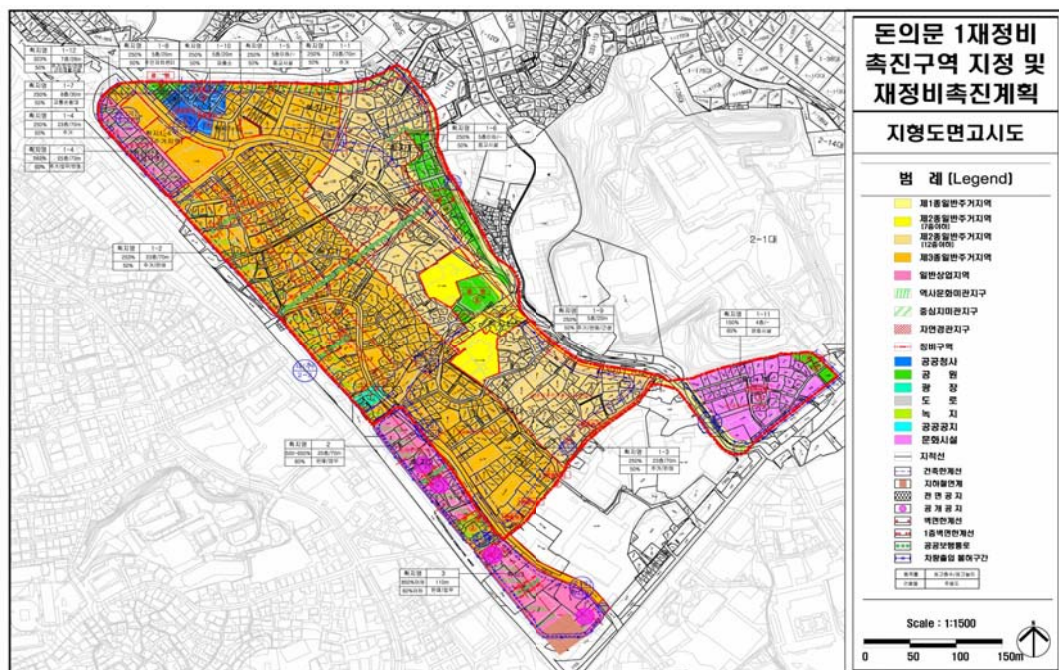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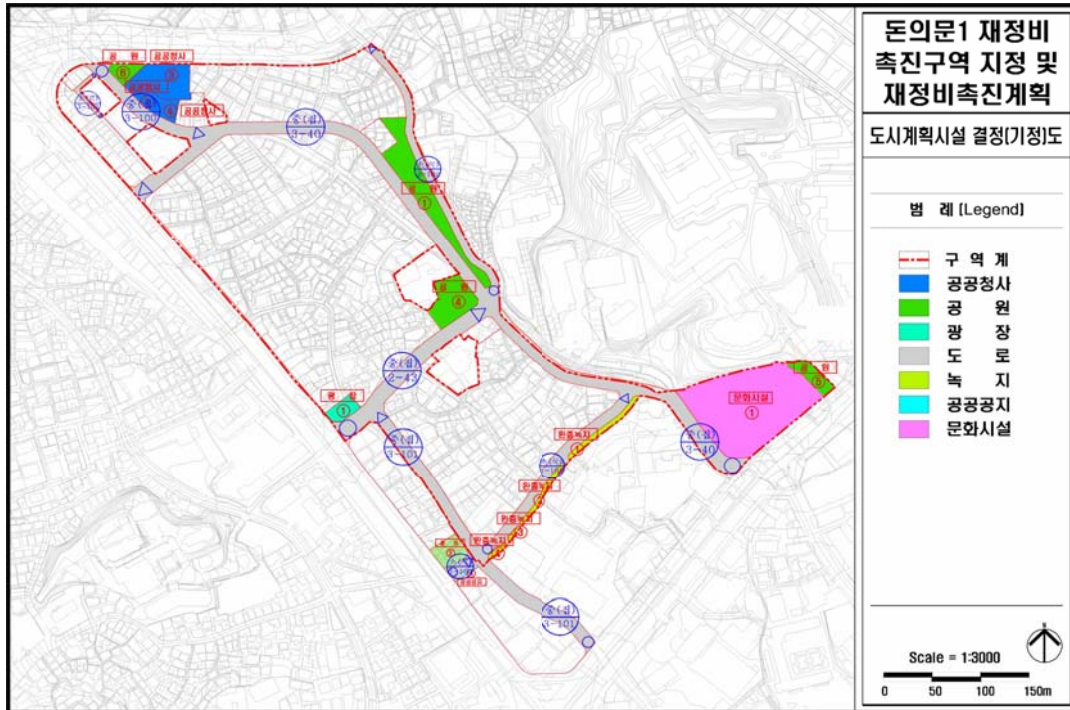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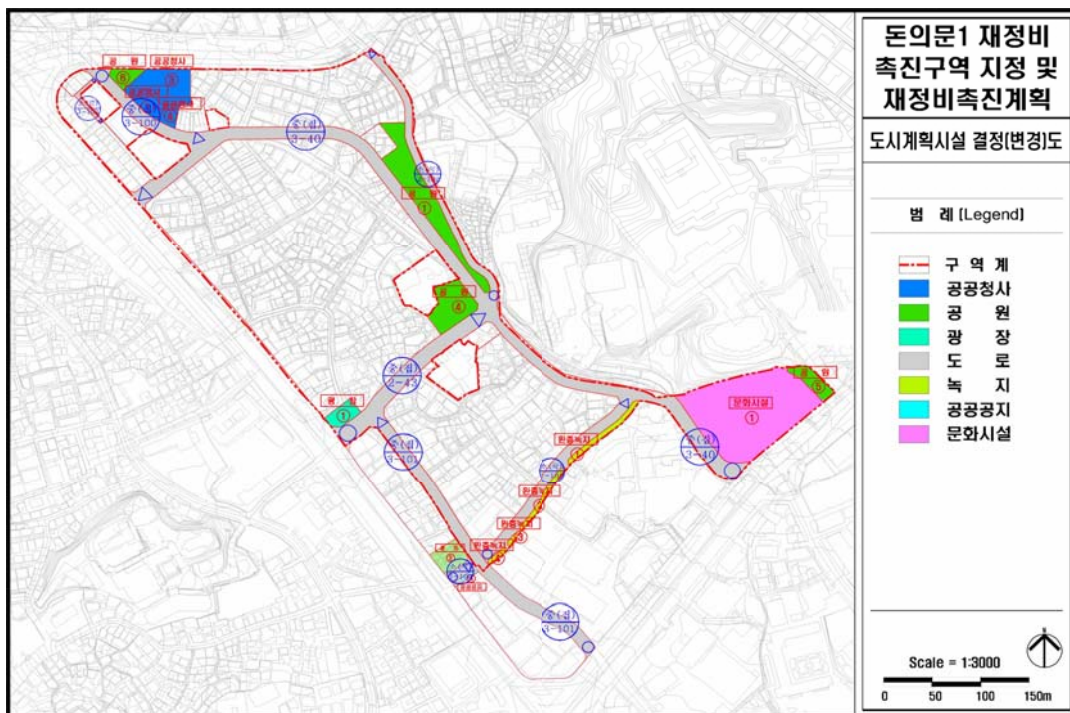
■ 지형도면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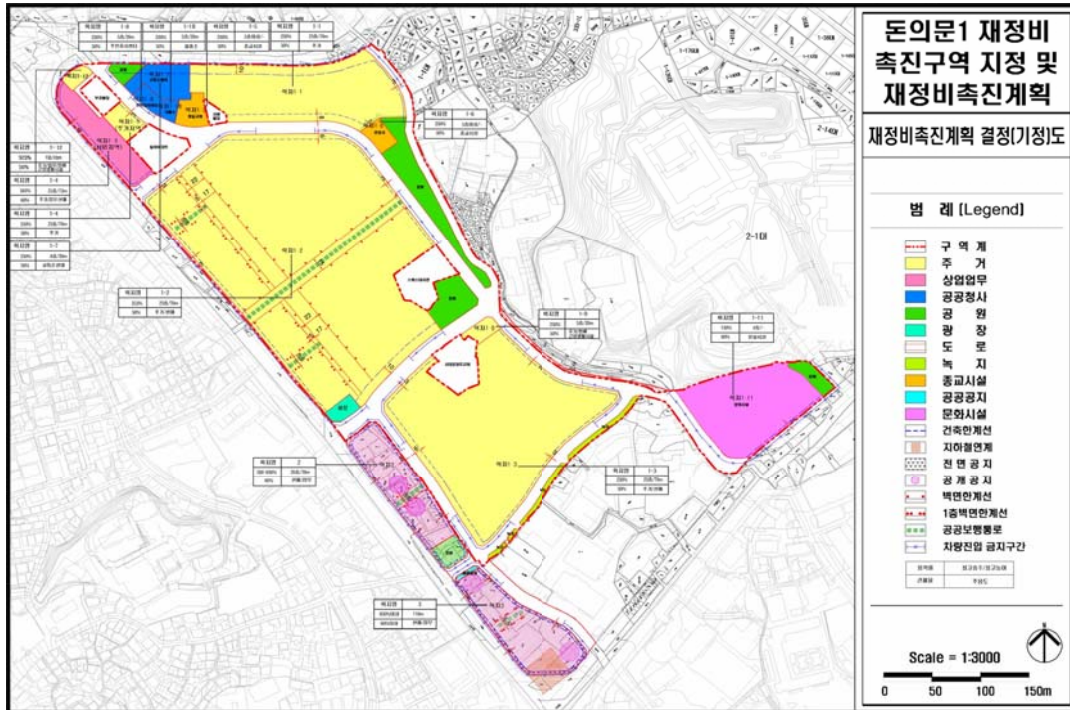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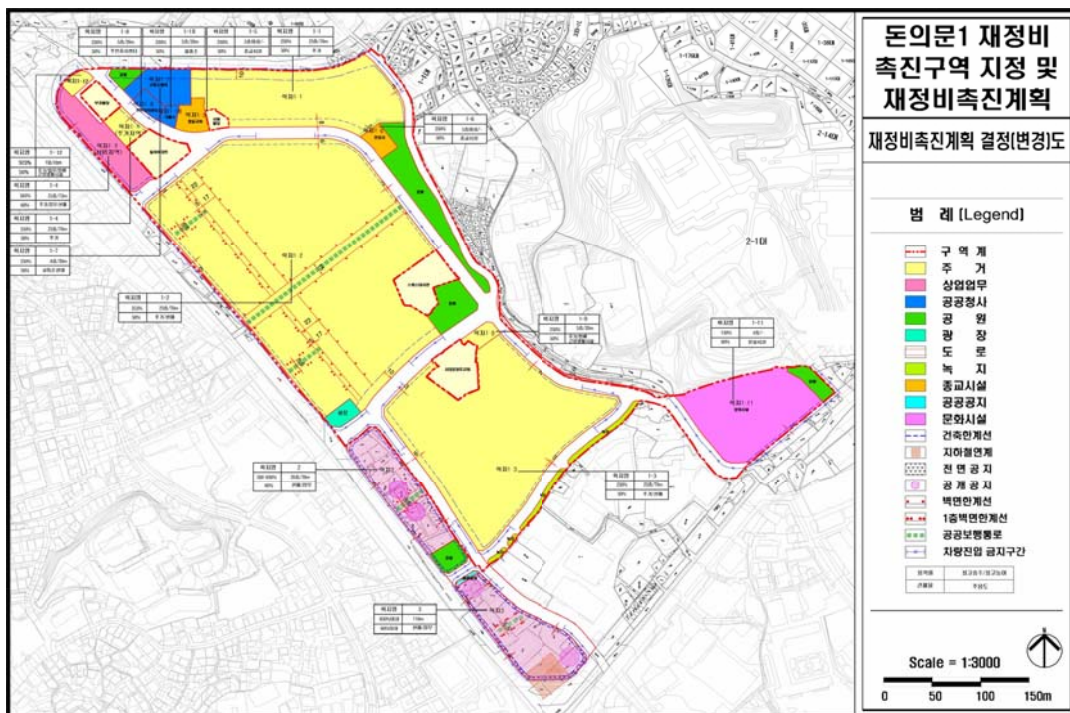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6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오휘 태릉지사	서울 후- 제475호	한정희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47, 4층(목동) (02-975-3595)	소재지 (‘17.04.29.)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21, 801호 (목동, 진송빌딩)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47, 4층(목동)
마임 길음지사	서울 후- 제62호	김혜숙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 18, 2층 (길음동) (02-987-6054)	상 호	마임수유변동지사	마임길음지사
				소재지 (‘17.04.2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05, 2층 (번동)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 18, 2층 (길음동)
엘비라이프(주)	서울 후- 제488호	임세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 (논현동) (02-1688-7676)	소재지 (‘17.05.0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 6층 (논현동)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 (논현동)
알즈너 거상대리점	서울 후- 제454호	윤옥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47길 36, 1층 (방학동) (02-3492-1544)	소재지 (‘17.05.10.)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16, 203-2002 (방학동)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47길 36, 1층 (방학동)
금필대리점	서울 후- 제615호	오금필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5길 50, 1층 (미아동) (010-3715-5995)	소재지 (‘17.05.20.)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5길 95, (미아동)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5길 50, 1층 (미아동)

2)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발건강대리점	서울 후-제450호	박명월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43길 9, 지층4호(일원동) (010-8249-5386)	'17.05.12.	사업부진
김정문알로에 성동지부	서울 후-제38호	서정례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503호(도선동) (02-2298-5659)	'17.06.01.	개인사정

3)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나르샤 코리아	서울-제682호	양문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18층 (삼성동, 산학재단빌딩) (02-3452-7311)	소재지 ('17.04.2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9, 2층, 3층 (삼성동, 영풍빌딩)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18층 (삼성동, 산학재단빌딩)
포에버 코리아(유)	서울-제41호	알제이 로이드 (미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1호(서초동, 서초디타워) (02-587-3250)	상 호	포에버코리아(주)	포에버코리아(유)
				소재지 ('17.04.1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8, (방배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1호 (서초동, 서초디타워)
(주)마이아	서울-제818호	김옥선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24, 3층 (논현동, 삼환아르누보3) (02-6925-2015)	상 호 ('17.05.18)	(주)디바이오	(주)마이아
				전화번호	02-515-1998	02-6925-2015
				소재지 ('17.05.1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9, 302호 (논현동, 국제빌딩)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24, 3층 (논현동, 삼환아르누보3)

4)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헵시바엘	서울 - 제701호	김미정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7, 3층(역삼동,동보빌딩) (02-587-0707)	'17.05.02.	공제조합해지
바이오앤(주)	서울 - 제815호	박창복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비동 713호(문정동,문정동테라타워) (02-563-5567)	'17.05.17.	공제조합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72호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건설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건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건설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생활 주변에서 건설분야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술인과 단체를 수상후보자로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시상분야 : 토목분야, 건축분야, 설비(전기·기계)분야
2. 시상예정인원 : 16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3. 시상내용 : 상패
4. 추천대상자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 신기술(건설신기술 등) 개발·적용으로 서울시 건설공사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건설기술과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 시 건설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자격요건

- ▶ 수상후보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현저한 공적을 가진 자

※ 단,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추천방법

(1) 추천권자 :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만19세이상 10인이상이 연서로 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수상후보자추천서(기관 및 단체추천용, 개인추천용),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각 1부

○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상기 관련자료(수상후보자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를 저장장치(CD, USB) 또는 E-mail [ccckil@seoul.go.kr(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로 별도 제출

6.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신청사 9층)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접수방법 : 전자우편(ccckil@seoul.go.kr)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

8. 접수기간 : 2017년 6월 15일 ~ 2017년 7월 5일(우편접수도 도착일 기준)

9. 시상대상자 결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단, 공적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수상자발표 :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17. 8월말 예정)

11. 시 상 일 : 2017년 9월 8일(금) (※사정에 의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첨부하는 공적조서(증빙서류)는 A4용지를 사용, 공적내용은 최근 5년 이내 서울시에 기여한 실적만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시는 접수처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천서 및 제출서식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배부 받으시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분야별정보→건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담당 : 조창길, 전화 : 2133-8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77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코웨이엔텍(주)

2. 대표자 : 정 준 호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76, 2층 202호(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 02-910-2564)
4. 업종 : (유독물)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유독물[제4호]
6. 지정일자 : 2017. 6. 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82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6월 28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취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631	서울해운(주)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48 14층 (견지동, 에스앤에스빌딩)	2016-04-28
2	1905	퍼펙트해운항공(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3길 6-6 (반포동, 신청담빌딩) 5층 1호	2016-06-19
3	1968	케이티엘항공해운(주)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9길 20 닛시빌딩 에이동 101호 (가양동)	2016-06-06
4	3075	주식회사 피플인터내셔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도화동)	2016-05-08
5	3100	주식회사 아이비엘해운항공	서울시 중구 무교로 15 남강빌딩 1806호 (무교동)	2016-06-18
6	3541	주식회사 제이케이쉬핑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5 에이스에이존 901호	2016-04-21
7	4150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종합물류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40, 관리동513호 (외발산동, 강서농수산물식품공사)	2016-04-25
8	4331	주식회사 파이브오션스코리아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40 (신정동, 성원빌딩) 305호	2016-06-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85호**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7.6.8.~2017.6.28. (15일간, 공휴일 불산입)
3. 공고장소 : 서울시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5. 공시송달 내역 :

대상자		납기	체납액	반송사유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주소			
한O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50 (대방동, 상가동, 대림아파트)	5	48,868,050원	폐문 부재

6. 기타사항

-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tel.02-3146-4503, fax.02-3146-4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91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보관일자	대상자	예치사유(적요)	귀속대상금액(원)	비 고
1	2005.9.22	중앙개발	논현동 279-92 임시급수보증금	금4,954,890원	폐전일 : 2012.05.07. 소재불명, 등기반송
2	2005.12.16	윤재역	서초구 서초3동 1498-34 임시급수보증금	금577,980원	폐전일 : 2011.07.22. 소재불명, 등기반송 요금과-14921(2011.7.20.)호와 관련, 직권폐전함.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남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출담당 (☎ 02-3146-471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9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석찬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용전길	일시 : 2017-04-15 06:26 장소 : 천호대로(광장사거리) 내용 : 전남83바2595(카고)차량 폭 0.28미터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하찬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안로	일시 : 2017-04-18 11:31 장소 : 푼도정수장(성수동) 내용 : 서울06타6680(덤프)차량 축하중 1.2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박연규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일시 : 2017-04-28 20:53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경기98자8910(트레일러)차량 폭 0.23미터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7. 31.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03호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호(2005.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61호(2005.3.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64호(2015.3.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나들이근린공원
2.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3. 면 적 : 32,000.00㎡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32,000.00	10,430.8	32,000.00	11,219.30	증)788.50㎡
기 반 시 설	소계	5,596.00	5,596.00	5,828.10	5,828.10	증)232.10㎡
	도로	3,922.00	3,922.00	4,154.10	4,154.10	증)232.10㎡
	광장	1,674.00	1,674.00	1,674.00	1,674.00	-
조경시설		700.00	700.00	700.00	700.00	-
휴양시설		144.00	144.00	58.00	58.00	감)86.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흥시설	663.00	663.00	663.00	663.00	-
운동시설	793.50	793.50	1,435.90	1,435.90	증)642.40㎡
교양시설	964.60	964.60	964.60	964.60	-
편익시설	1289.50	1289.50	1289.50	1289.50	-
관리시설	280.20	280.20	280.20	280.20	-
녹지	21,569.20	-	20,780.70	-	감)788.50㎡
시 설 율 (법정 40%)	$10,430.80 \div 32,000.00 \times 100 = 32.59\%$		$11,219.30 \div 32,000.00 \times 100 = 35.06\%$		
건 폐 율 (법정 15%)	$256.90 \div 32,000.00 \times 100 = 0.80\%$		$256.90 \div 32,000.00 \times 100 = 0.80\%$		

○ 세부 변경내용

- 도 로 : 3,922.0㎡ → 4,154.1㎡ (증 232.1㎡)
- 휴양시설 : 144.0㎡ → 58.0㎡ (감 86.0㎡)
- 운동시설 : 793.5㎡ → 1,435.9㎡ (증 642.4㎡)
 - 풋살경기장 신설 : 1,216.8㎡, 맨발건강원 폐지 : 627.0㎡
- 녹 지 : 21,569.2㎡ → 20,780.7㎡(감 788.5㎡)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0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무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복무관리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 2,196명에서 2,198명으로 2명 증원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나.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신청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26조제2항)
 - 공무직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사용부서 장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에 동의하는 공무직을 초과근무명령의 대상으로 변경
- 다. 유급휴일 관련 준용범위 동일로 해석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 안 제28조제1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를 제2항과 동일(제2호~제11호)하여 박물관 등 휴관일이 월요일인 사용부서의 유급휴일 부여 관련 해석상 오해소지의 해소
- 라. 연차유급휴가 공제 시, ‘제29조에 따른’ 추가 및 공제대상에서 ‘정직일수 및 휴직’ 삭제(안 제34조)
 - 제29조에 따른 결근일수 및 지참, 조퇴, 외출 등과 같이 사전 허가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
 - 정직일수,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공제대상이 아닌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므로 삭제
- 마. 채용결격사유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 경과규정 마련으로 개정민법 시행(‘13. 7. 1.) 이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채용결격사유 유지(‘13. 7. 1.~’18. 6.30.)
- 바.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정비(안 별표 1)
 - 소방재난본부 및 그 직속기관의 공무직 정원을 실제 사용부서별로 세분화
- 사.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 7. 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35, FAX 2133-0822, E-mail : ramen777@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17-53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호(2012.05.03)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광진구 중곡동 157-6호 등 5필지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중곡동 157-6호 등 5필지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필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E	중곡동 157-11호	231.4	• 공동개발권장: 157-13, -15
		중곡동 157-13호	115.7	• 공동개발권장: 157-11, -15
		중곡동 157-15호	162.0	• 공동개발권장: 157-11, -13
		중곡동 157-14호	162.0	• 공동개발지정: 157- 6
		중곡동 157- 6호	279.0	• 공동개발지정: 157-14
변경		중곡동 157-11호	231.4	• 공동개발권장: 157-13
		중곡동 157-13호	115.7	• 공동개발권장: 157-11
		중곡동 157-15호	162.0	• 공동개발권장: 157- 6, -14
		중곡동 157-14호	162.0	• 공동개발권장: 157- 6, -15
		중곡동 157- 6호	279.0	• 공동개발권장: 157-14, -15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군자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광진구고시 제2017-56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7호(2012. 9. 27.)로 결정된 광진구 중곡동 30-1번지 일원 「중곡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중곡역 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기 결정('12. 9. 27)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로총괄표 및 가구계획은 면적 산정착오에 의해 정정하고, 기존 지하 구조물의 간섭으로 공개공지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불가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완화항목, 건축물 형태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기정	41	7,777	3	495	8	1,492	30	5,790
	변경	41	7,790	3	495	8	1,505	30	5,790
대로	기정	2	1,398	-	-	-	-	2	1,398
	변경	2	1,398	-	-	-	-	2	1,398
중로	기정	1	525	-	-	-	-	1	525
	변경	1	525	-	-	-	-	1	525
소로	기정	38	5,854	3	495	8	1,492	27	3,867
	변경	38	5,867	3	495	8	1,505	27	3,867

※ 변경사유 : 소로 2-8호선 전체 연장 착오에 의한 정정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GR-5	중곡동 16 일대	6,499.8	6,153.3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GR-6	중곡동 29-29 일대	4,772.1	5,118.6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변경사유 : GR-6 가구 내 29-88대, 29-89대, 29-90대 3개 번지는 착오 정정으로 인하여 GR-5에서 GR-6으로 변경

3.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높이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준 높이 완화	우수디자인		•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	-	-
	지하철 출입구 연계	기정	• 기준높이 × 0.2	• 공개공지 내 지하철 출입구 연계 - 80m × 0.2 = 16m → 80m + 16m = 96m	-
		변경	• 기준높이 × 0.2	• 지하철 출입구 설치 - 80m × 0.2 = 16m → 80m + 16m = 96m	
	권장용도		• 기준높이×(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

주1) '우수디자인'의 적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주2) 높이완화항목은 용적률 완화항목(허용/상한용적률)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 이면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 간선변(능동로, 용마산로) 5m - 이면도로변(용마산로 23길) 3m - 남측 인접대지변 5m	-
	건축물 형태	기정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변경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기존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보도확장(건축한계선3~5m) 및 소공원 설치(1,276.7㎡) • 지하철 출입구 설치	-

4.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고시 제2017-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범만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1호(2016. 7. 28)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산5-11번지 일대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15(2017.3.16)호로 인가고시 하였으나 일부 사업대상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7-493(2017.5.25)호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산5-11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 3) 사업의 면적 : 4,500㎡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중랑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5)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등
-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 송창선(☎02-2094-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법만사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 초】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10,064	4,500						
1	중랑구 중화동 산5-12	임야	3,122	1,600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2	중랑구 중화동 산5-11	임야	3,174	1,300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중랑구 중화동 산5-10	임야	1,785	400	김종덕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705					
					정석진	도봉구 창동 347, 주공아파트 314-903					
4	중랑구 중화동 산5-2	임야	1,983	1,200	서병욱	미합중국 뉴욕주 11373엘름hurst 94-31 60번가	박재숙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아파트 232동 501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변 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8,071	4500						
1	중량구 중화동 산5-12	임야	3,122	2,372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2	중량구 중화동 산5-11	임야	3,174	1,300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중랑구 중화동 신5-10	임야	1,785	828	김종덕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705					
					정석진	도봉구 창동 347, 주공아파트 314-90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범만사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이	하	여		백			

◆ 강서구고시 제2017-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5호(2012.08.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6-105호(2016.11.23.)로 변경결정된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일대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 원 명 : 도시계획시설 신안빌라 주택재건축구역 내 소공원

다.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일대

라. 면 적 : 993㎡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 개채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 (☎ 02-2600-4182)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강서구 마곡동 327-53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993.00	186.70				23	시설율 18.80%
기 반 시 설	소계	125.30	125.30					
	진입광장	51.40	51.40					
	도 소로-1	30.90	30.90					
	소로-2	43.00	43.00					
조경시설		32.20	32.20				4	
휴양시설		29.20	29.20				10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9	
녹지 및 기타		806.30						녹지율 81.2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마곡동 327-53	993.00	186.70					23	시설율 18.80%
기반 시설	소계		마곡동 327-53	125.30	125.30						
	진입광장	가	“	51.40	51.40						
	도로(소계)			73.90	73.90						
	소로	소로-1	“	30.90	30.90						
	소로	소로-2	“	43.00	43.00						
조경 시설	소계		마곡동 327-53	32.20	32.20					4	
	파고라	①	“	14.00	14.00					1	
	식수대	②	“	18.20	18.20					3	
휴양 시설	소계		마곡동 327-53	29.20	29.20					10	
	휴게소-1	나	“	20.90	20.90						
	휴게소-2	다	“	6.90	6.90						
	등의자	③	“							6	
	평의자	④	“							3	
	앉음벽	⑤	“	1.40	1.40					1	
관리 시설	소계		마곡동 327-53							9	
	공원등	⑥	“							4	
	헨스	⑦	“							2	
	안내판	⑧	“							1	
	CCTV	⑨	“							2	
녹지 및 기타	소계		마곡동 327-53	806.30							
	녹지		“	791.90							녹지율 81.20%
	기타		“	14.40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8.00	73.90				
신설	소계				38.00	73.90				
	소로	3류	1	2.0	14.10	30.90	산책로	진입광장	소로-2	
	소로	3류	2	1.5	23.90	43.00	산책로	소로-1	동측 공원경계	

◆ 구로구고시 제2017-93호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63호(1988.6.28)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되고 구로구공고 제 1991-67호(1991.06.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완료 공고된 우리구 고척동 50-48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고척동 50-4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 2) 명 칭 : 고척프라자 용도변경 공사

다. 사업의 내용

- 1) 사업면적 : 3,966㎡
- 2)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지상5층 2개동, 연면적 11,964.85㎡
- 3) 용도변경 내용

구 분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동	층별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나동	2층	판매시설(소매시장)	1,135.10	제2종근린생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91.54
				판매시설(소매시장)	843.56

4) 건축물의 조서

건물명	건물번호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고척 프라자	가동	2,249.85	1,993.5	지하1층 지상5층	
	나동	2,249.85	9,971.35	지하1층 지상4층	
	소계	2249.85	11,964.8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이종웅

2)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08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6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결정면적(㎡)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성명	주소
1	구로구 고척동	50-48	대	3,966	3,966	이종웅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08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건축과(860-2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고시 제2017-60호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Ⅴ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5호(2010.9.24), 서초구고시 제2014-84호(2014.7.10)로 변경결정 고시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Ⅴ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서초구역 (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42,760	증) 1.7	42,761.7	서울시고시 제2000-169호 (2000.6.23.)	-

■ 도시 기반시설(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변경내용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57	서초동 1501-13	서초동 1499-5	-	-
변경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57	서초동 1501-13	서초동 1499-5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 면적 변경(감 : 0.8㎡)	-

■ 도시 기반시설(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세 부 사 항		비 고
					면적(㎡)	변경내용	
기정	②	-	소공원	서초동 1499-2일대	380.0	-	-
변경	②	-	소공원	서초동 1499-2일대	380.7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증 : 0.7㎡)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명	위 치	세 부 사 항		비 고
				면적(㎡)	변경내용	
기정	V-1 BL	V-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8-17 일대	15,955.6	-	-
변경	V-1 BL	V-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8-5 일대	15,957.4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증 : 1.8㎡) ·지적 합필에 따른 지번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I	특별계획구역 I	서초동 1500-1일대	4,087.6	-	4,087.6	-
II	특별계획구역 II	서초동 1541-1일대	9,819.0	-	9,819.0	-
III	특별계획구역 III	서초동 1500-10일대	3,631.3	-	3,631.3	-
IV	특별계획구역 IV	서초동 1499-5일대	2,163.8	-	2,163.8	-
V	특별계획구역 V	서초동 1498-5일대	23,058.3	증) 1.7	23,060.0	-

○ 특별계획구역 V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세 부 사 항		비 고
			면적(㎡)	변경내용	
기정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V	서초동 1498-17 일대	23,058.3	-	-
변경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V	서초동 1498-5 일대	23,060.0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증 : 1.7㎡) ·지적 합필에 따른 지번 변경	

■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명	위 치	세 부 사 항		비 고
				V-1 BL	V-1	
기정	V-1 BL	V-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8-17 일대	15,955.6	-	-
변경	V-1 BL	V-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8-5 일대	15,957.4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증 : 1.8㎡)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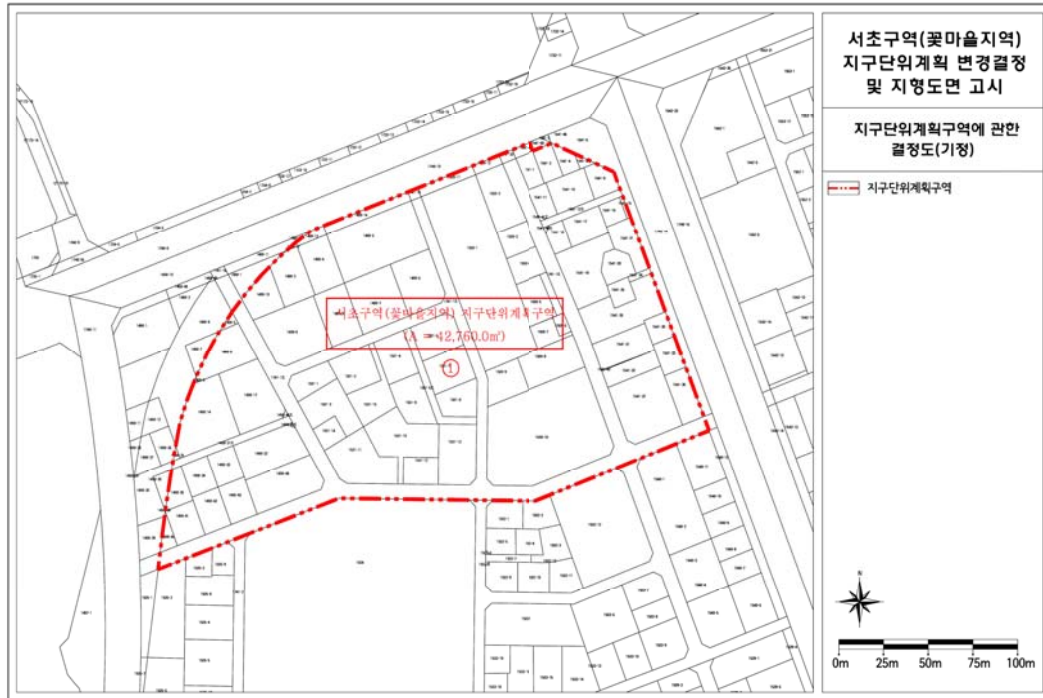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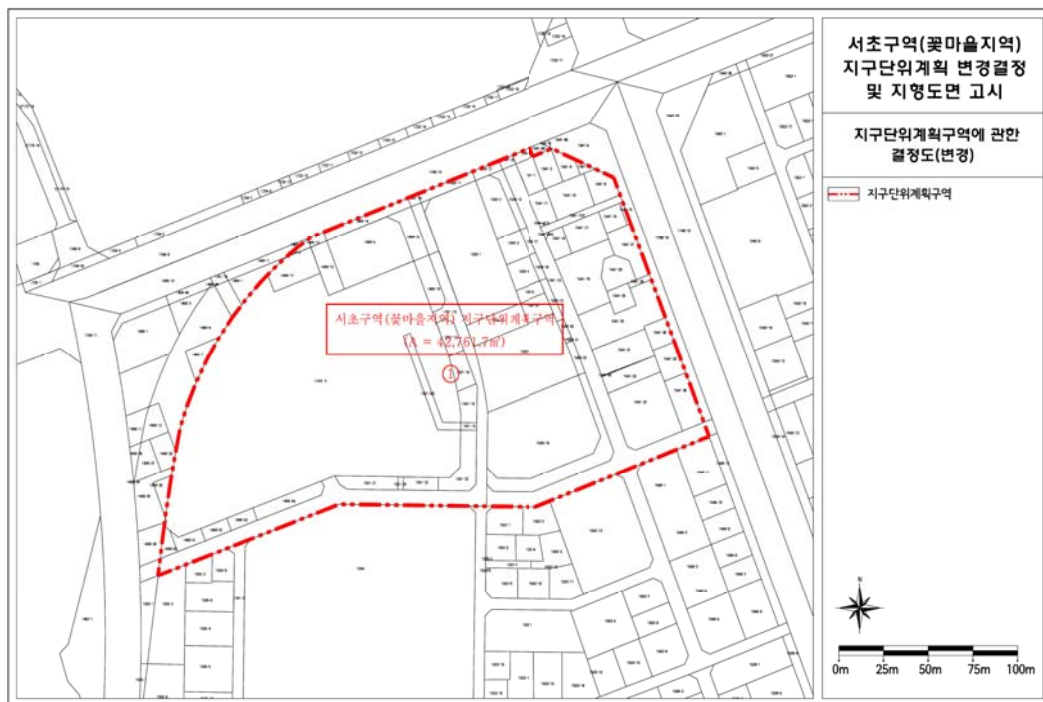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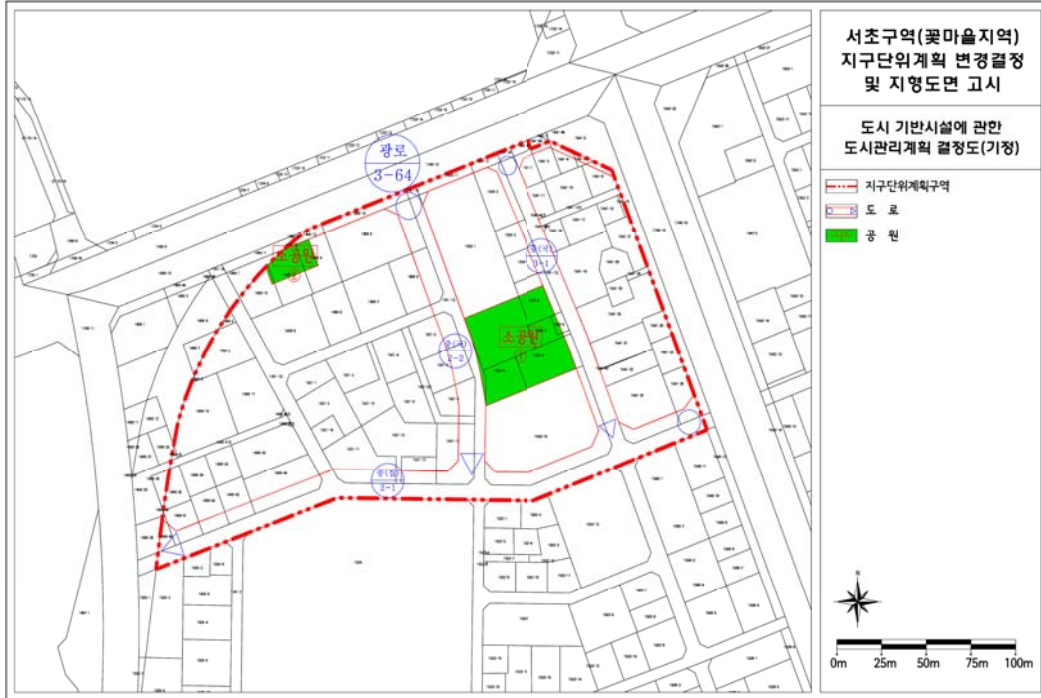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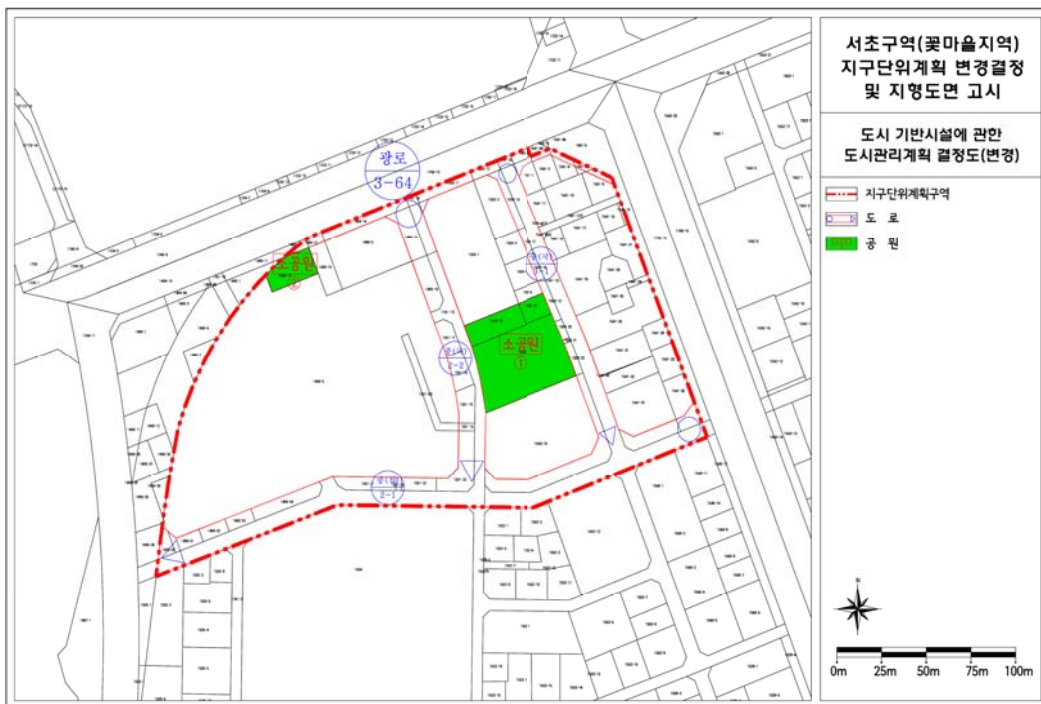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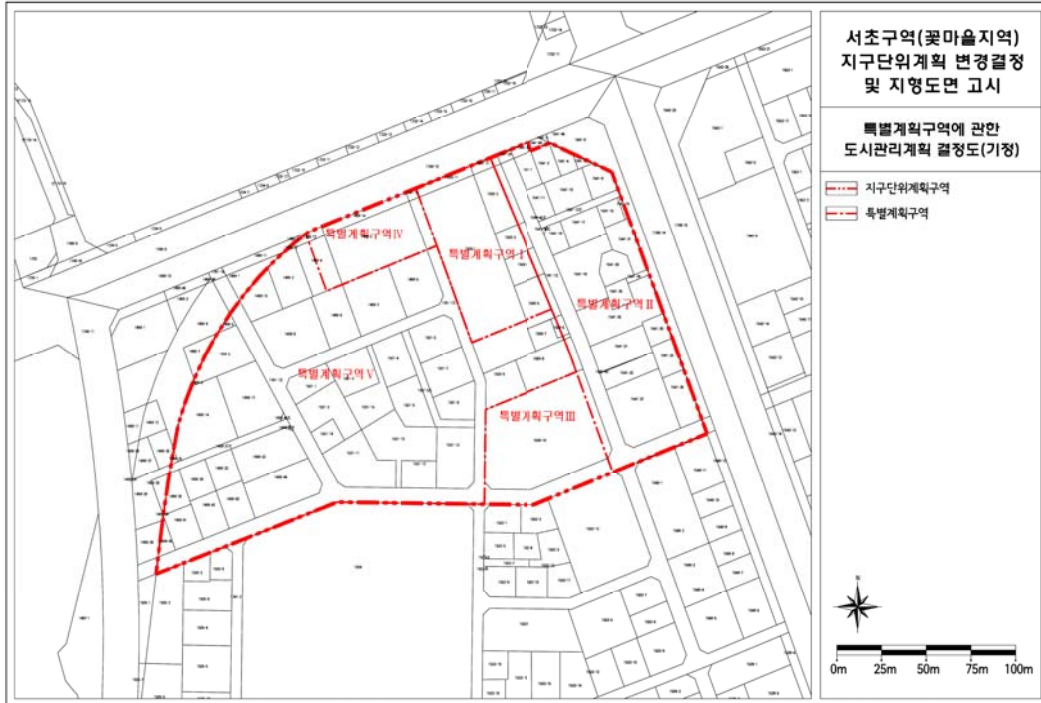
■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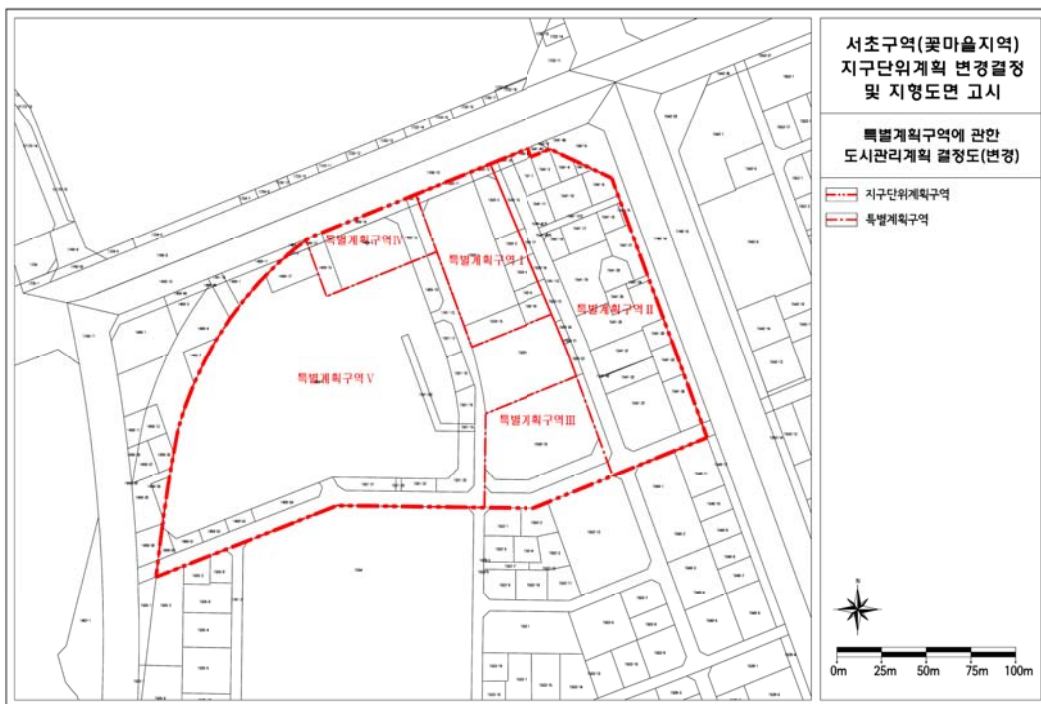
■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17-5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배봉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73호(1999.11.29.)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배봉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산7-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배봉산근린공원(동대문)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5,085㎡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원녹지과(☎2127-4772)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배봉산근린공원(동대문) 조성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권리의 종류및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휘경동 산7-11	임야	5,085	5,085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 은평구공고 제2017-7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34호(1989.12.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시행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2호(2017.1.5)로 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사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5-1호 등 3필지
2.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나. 사업의 명칭 : 봉산도시자연공원(수국사지구) 조성
3. 사업시행면적 : 33,305㎡
4. 시설규모

시 설 명	면적(㎡)	주 요 시 설	비 고
계	33,305.0		
휴 양 시 설	180.0	휴게소 180㎡	
교 양 시 설	1,490.0	전시관 1,080㎡(건축면적 388.44㎡, 연면적 388.44㎡) 야외극장 410㎡	
편 익 시 설	346.0	화장실 110㎡(건축면적 60.5㎡, 연면적 60.5㎡), 전망대 156㎡(건축면적 46.57㎡, 연면적 46.57㎡) 음수장 80㎡	
유 희 시 설	325.0	어린이놀이터 325㎡	
관 리 시 설	300.0	관리사무소 300㎡(건축면적 79.92㎡, 연면적 79.92㎡)	
기 반 시 설	1,318.5	도로 1,318.5㎡	
녹지및기타	29,345.5	녹지 29,345.5㎡	

5.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대표:이만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47가길 19 (갈현동 314)

6. 사업착공 및 준공일 : 1990. 2. 20. ~ 2016. 12. 30.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 강서구공고 제2017-821호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65호(1979.04.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06호(1993.10.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강서구고시 제1994-57호(1994.10.20)로 도시계획사업(공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공원조성면적 정정 132,704㎡)된 강서구 가양동 산4-7번지 일대 공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공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산4-7번지 일대

다. 면 적 : 132,704.0㎡(기정) → 135,002.7㎡(변경)

2.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주요 변경 내용 : 공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따른 공원 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기반시설 : 5,888.0㎡ → 16,182.0㎡ (증10,294.0㎡)

- 휴양시설 : 2,754.0㎡ → 1,138.0㎡ (감1,616.0㎡)

- 유희시설 : 792.0㎡ → 1,500.0㎡ (증708.0㎡)

- 운동시설 : 1,944.0㎡ → 2,593.9㎡ (증649.9㎡)

- 교양시설 : 0㎡ → 3,529.5㎡ (증3,529.5㎡)

- 편익시설 : 188.0㎡ → 95.8㎡ (감92.2㎡)

- 관리시설 : 150.0㎡ → 0.0㎡ (감150.0㎡)

- 녹지 및 기타 : 120,988.0㎡ → 109,963.5 (감11,024.5㎡)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2600-4185)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강서구 가양동 산4-7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계	132,704.0	11,696.0	114.93 114.93	6	135,002.7	25,039.2	784.1 888.3	112	증2,298.7㎡
기 반 시 설	소계	5,888.0			16,182.0	16,182.0			증10,294.0㎡
	도로	3,706.0			16,182.0	16,182.0			증12,476.0㎡
	광장	2,182.0							감2,182.0㎡
	조경시설	(30.0)		1					(감 1기)
휴양시설	2,754.0	2,754.0	28.35 28.35	2	1,138.0	1,138.0		54	감1,616.0㎡ (증 52기)
유희시설	792.0	792.0		3	1,500.0	1,500.0			증708.0㎡ (감 3기)
운동시설	1,944.0	1,944.0			2,593.9	2,593.9	691.9 796.1	29	증649.9㎡ (증 29기)
교양시설	0.0	0.0			3,529.5	3,529.5			증3,529.5㎡
편의시설	188.0	188.0			95.8	95.8	92.2 92.2	1	감92.2㎡ (증 1기)
관리시설	150.0	130.0	86.58 86.58					28	감150.0㎡ (증 28기)
녹지 및 기타	120,988.0				109,963.5				감11,024.5㎡
시설율 (법정 40%)	(11,696.0 / 132,704.0) X 100 = 8.8%				(25,039.2 / 135,002.7) X 100 = 18.55%				
건폐율 (법정 10%)	(114.93.0 / 132,704.0) X 100 = 0.09%				(784.1 / 135,002.7) X 100 = 0.58%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132,704.0	11,696.0			114,93	114.93	6		135,002.7	23,539.2		3등	784.0	888.3	112
	소 계		5,888.0								16,182.0	16,182.0					증10,294.0㎡
	도 로		3,706.0								16,182.0	16,182.0					증12,476.0㎡
	가		2,182.0														감2,182.0㎡
	광 장	가-1 마곡동 산4	(1,804.0)														
조 경 시 설	가-2 기양동 산4-1	(378.0)															
	소 계		(30.0)						1								(감 1기)
	파고라	① 기양동 산9	(30.0)						1								
	소 계		2,754.0						2		1,138.0	1,138.0				54	감1,616.0㎡ (증 52기)
	간이휴식시설	나	2,070.0							가	387.4	387.4					감1,682.6㎡
휴 양 시 설	간이휴식시설1	나-1 기양동 산6-4	(468.0)							가-1 기양동 산4-7	(54.6)	(54.6)					
	간이휴식시설2	나-2 기양동 산8-1	(918.0)							가-2 기양동 산4-7	(185.5)	(185.5)					
	간이휴식시설3	나-3 기양동	(684.0)							가-3 기양동 산8-1	(136.5)	(136.5)					
	간이휴식시설4									가-4 기양동 산8-1	(10.8)	(10.8)					
	소악루 휴게공간									나 기양동 산4-7	750.6	750.6					증750.6㎡
	정자	1 기양동 산6-4	684.0		한식기 와 목재	1등	28.35	28.35	1								감684.0㎡ (감 1기)
	장의자								1								(감 1기)
	파고라								②							2	(증 2기)
	등의자								③							22	(증 22기)
	평의자								④							18	(증 18기)
	아외테이블								⑤							12	(증 12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하·수·설	소계		792.0					3			1,500.0						증708.0㎡ (감 3기)	
	어린이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다	마곡동 3-3	792.0		철재		3									감792.0㎡	
	소계		1,944.0							다	1,500.0						증1,500.0㎡	
	체력 단련장									라	311.4						증649.9㎡ (증 29기)	
온·냉·방·설	배드민턴장	라	마곡동 2-1	1,944.0							2,593.9	2,593.9	1동		691.9	796.1	29	
	축구장										311.4						감311.4㎡	
	주민 운동시설 육기									라-1	가양동 산8-1 (221.1)	(221.1)					증 221.1㎡	
	올리기									라-2	가양동 산8-1 (90.3)	(90.3)					증 90.3㎡	
	철봉									1	가양동 산2-7	998.4	철근 1동		691.9	796.1	감945.6㎡	
	평행봉									마	가양동 산4-3	1,284.1					증 1,284.1	
	소계									⑥						17	(증 17기)	
	양천 고성지 아워 학습장									⑦						2	(증 2기)	
	소계									⑧						8	(증 8기)	
	소계									⑨						2	(증 2기)	
교·양·수·설	양천 고성지 아워 학습장										3,529.5	3,529.5					증3,529.5㎡	
	소계									바	가양동 산4-7	3,429.7					증3,429.7㎡	
	주차장	마	마곡동 산3	188.0	188.0					사	가양동 산8-1	99.8					증 99.8㎡	
	화장실 1										95.8	95.8	2동		92.2	92.2	1	감 92.2㎡ (증 1기)
편·안·수·설	화장실 2									2	가양동 산4-3	86.2	철근 1동		86.2	86.2		감 188.0㎡
	출민지 탈이끼									3	가양동 산4-7	6.0	철근 1동		6.0	6.0	증 86.2㎡	
	음수전									아	가양동 산8-1	3.6					증 6.0㎡	
	소계									⑩							증 3.6㎡ (증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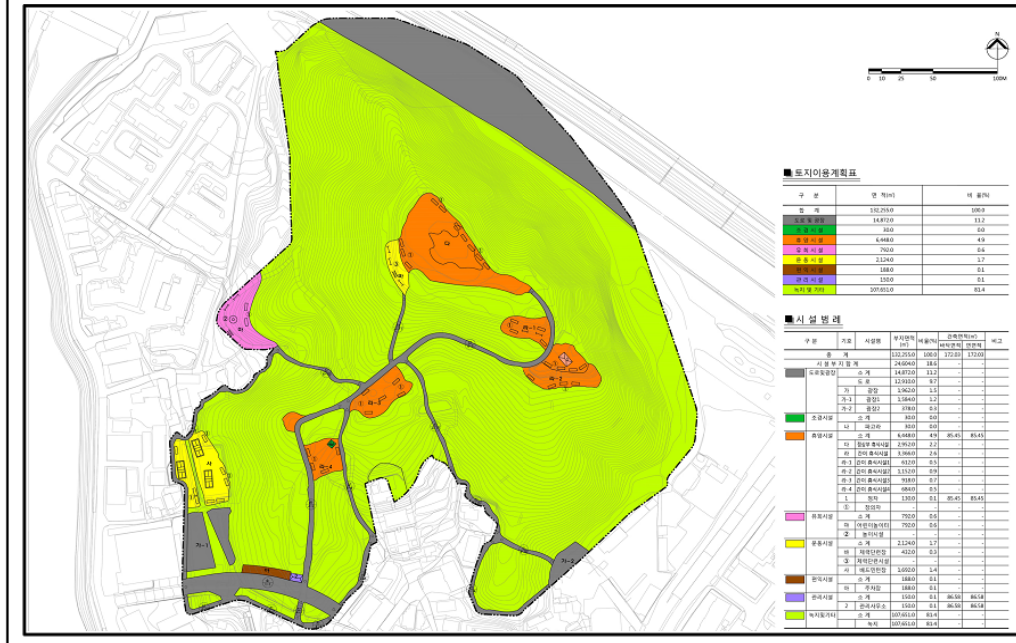
구분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관리시설	소계			150.0	130.0													28	감 150.0㎡ (증 28기)
	관리사무소	2	마곡동 산3	150.0	130.0	조적	1동	86.58	86.58										감 150.0㎡
	안내판										⑪							19	(증 19기)
	표지판										⑫							8	(증 8기)
	CCTV										⑬							1	(증 1기)
녹지 및 기타	소계			120,988.0								109,963.5							증11,024.5㎡
	녹지		전지역	120,988.0								109,963.5							증11,024.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339.0	3,706.0				
변경					3,069.4	16,182.0				
신설	광로		1	60.0	260.0	7,747.0		가양동 439-1	가양동 439-1	
신설	소로	1	1	10.0	128.0	1,280.0		마곡동 산5	가양동 산10	
당초	소 계				1,775.0	3,883.0				
변경					2,681.4	7,155.0				
당초	산책로	4	1	6.0	14.0	84.0	주진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10	
변경		4	1	3.0	131.2	603.5	부진입로	소 1-1	부출입구	
당초		4	2	6.0	180.0	1080.0	주진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9	
변경		4	2	6.0	180.0	1280.0	주진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9	
당초		4	3	5.0	160.0	800.0	산책로	가양동 산9	가양동 산8-4	
변경		4	3	5.0	190.0	1154.0	산책로	가양동 산9	가양동 산8-4	
당초		4	4	2.0	32.0	64.0	산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10	
변경		4	4	4.5	34.5	190.1	산책로	가양동 산 4-3	데크쉼터 3	
당초		4	5	2.0	74.0	148.0	산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10	
변경		4	5	4.0	9.0	59.0	산책로	데크쉼터3	소악루 휴게공간	
당초		4	6	2.0	110.0	220.0	부진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9	
변경		4	6	2.0	98.8	197.5	부진입로	부출입구	산 4-2	
당초		4	7	2.0	48.0	96.0	산책로	가양동 산10	마곡동 산9	
변경		4	7	1.5	561.6	827.4	산책로	가양동 4-8	가양동 120-88	
당초		4	8	2.0	40.0	80.0	산책로	가양동 산5	마곡동 산5	
변경		4	8	4.0	129.4	502.8	산책로	가양동 산 4-3	가양동 산 4-10	
당초		4	9	2.0	220.0	440.0	산책로	가양동 산4	마곡동 산5-39	
변경		4	9	1.5	112.4	256.7	산책로	가양동 산 4-1	가양동 산 4-13	
당초		4	10	1.5	73.0	110.0	부진입로	마곡동 5-39	가양동 산8-1	
변경		4	10	1.5	405.8	547.3	부진입로	가양동 산 4-3	가양동 산 4-8	
당초		4	11	1.5	60.0	90.0	산책로	가양동 산8-1	가양동 산8-4	
변경		4	11	1.5	110.4	178.4	산책로	가양동 산 4-3	데크쉼터2	
당초		4	12	1.5	95.0	143.0	부진입로	가양동 산8-3	가양동 산8-4	
변경		4	12	1.5	42.2	63.3	산책로	가양동 산 4-17	가양동 산 4-19	
당초		4	13	1.5	63.0	95.0	산책로	가양동 산8-3	가양동 산4-1	
변경		4	13	1.4	51.8	72.5	산책로	체력단련장2	야외학습장	
당초		4	14	1.5	123.0	185.0	산책로	가양동 산4-1	가양동 산4-1	
변경		4	14	1.5	15.5	23.3	부진입로	부출입구	가양동 산 4-15	
당초		4	15	1.5	47.0	71.0	부진입로	가양동 산4-1	가양동 산4-1	
변경		4	15	1.5	25.7	45.9	산책로	부출입구	가양동 산 4-15	
신규		4	16	1.5	169.0	297.8	산책로	가양동 산 4-15	가양동 산 4-17	
신규		4	17	1.3	140.7	220.3	산책로	가양동 산 4-16	가양동 산 4-7	
신규		4	18	1.5	52.4	111.6	산책로	가양동 산 4-16	가양동 산 4-19	
신규		4	19	1.5	64.0	107.9	산책로	가양동 산 4-18	가양동 산 4-4	
신규		4	20	3.0	137.1	415.7	산책로	가양동 산 4-16	가양동 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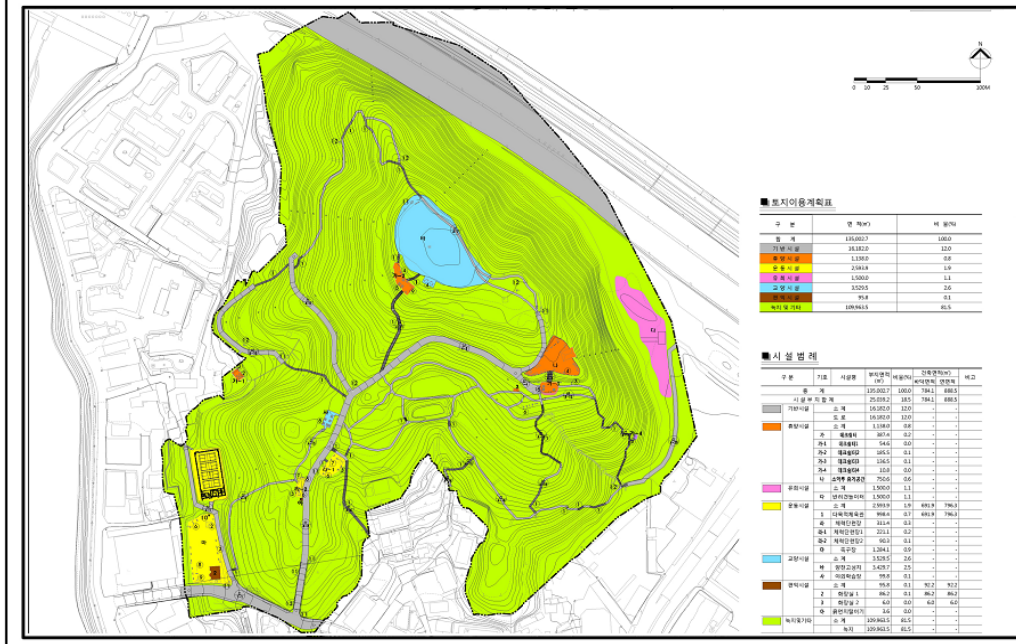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공산근린공원



◆ 구로구공고 제2017-8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구로구공고 구로구고시 제2016-17호(2016.2.4)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로구고시 제2016-137호(2016.9.1)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1차)』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완료 (준공일)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개설공사(1차) (구로동 551-210~551-88호)	도로개설 B=8m, L=55m	구로구고시 제2016-17호 (2016.02.04)	2016.12.16 ~2017.06.01	2017.05.29 (2017.06.01)

라. 위치도 : 1부 (게재생략)

◆ 구로구공고 제2017-8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108~551-165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8m, 연장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108	대	288	12	박영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3(구로동)	영등포 농업협동 조합	영등포구 도신로 194(신길동.가산 디지털지점)	근저당	
2	구로동 551-163	대	24	24	한광두	서대문구 증가로10길 82-7(홍은동)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	
3	구로동 551-165	임	129	129	한광두	서대문구 홍은동 408-2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	
4	구로동 551-96	도로	5	5	기획재정부					무상귀속대상
5	구로동 551-230	대	6	6	구로구					

※ 상기 연번1(구로동551-108)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 정정 예정임.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10 8	창고	판넬	1	창고	박영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3(구로동)				
		담장	조적	1식	담장						
		대문	철재	1식	대문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2	구로동 551-16 5	가건물	철재/판넬/목재	15	야외매 장	김광미	구로중앙로34길 33-4(구로동)				
		자판기	음료자판기계	2대	자판기						
		야외 테이블	목재	4개	야외 테이블						

※ 상기 연번2번(구로동551-165)의 가건물 면적은 측량 전 면적으로 현황측량 후 면적 정정 예정임.

◆ 구로구공고 제2017-905호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내 부대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15호(2013.01.17)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최초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3호(2013.11.28)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경미한) 변경결정, 구로구고시 제39호(2016.03.17)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내 부대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169호(2016.11.1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내 부대시설(주차장)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궁동 11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내 부대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서울전파관리소 부대시설(주차장)설치공사

다. 사업의 내용

- 사업면적 : 10,670㎡ 중 372㎡
- 사업기간 : 2016.11.10 ~ 2017.12.31

- 3) 사업완료일 : 2017.05.23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국,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 마.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17-9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6호(2015.9.10)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지적승인 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5-51호(2015.4.9) 및 제2016-153호(2016.10.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구로구청장

-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2396),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 → 고시·공고)
- 다.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온수동 6-3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사유토지보상
 - 3) 사업의 면적(변경) : 347㎡ 중 331㎡
 -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ㄱ 성명 : 구로구청장
 - ㄴ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 5)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 : 따로 붙임
 - 7)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 권리명세	
계				33,575	33,559						
1	변경 없음	온수동 9-49	임야	8,064	8,06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2	변경 없음	온수동 9-44	임야	170	17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3	변경 없음	온수동 9-50	임야	1,794	1,79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4	변경 없음	온수동 산1-1	임야	3,687	3,68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5	변경 없음	온수동 산3	임야	8,908	8,90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6	변경없음	온수동 산4-19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7	변경없음	온수동 산4-20	임야	45	4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8	변경없음	온수동 산4-21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9	변경없음	온수동 산4-22	임야	4,018	4,01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10	변경없음	온수동 산4-23	임야	1,342	1,34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11	변경	온수동 6-3	전	347	331	정준○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구로2동 새마을 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근저당권	
								구로2동 새마을 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지상권	

◆ 구로구청 제2017-9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5호(2014.4.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지적승인 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5-101호(2015.7.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2396),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 → 고시·공고)

다.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항동 149-7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변경) : 1,100㎡ 중 570㎡
 -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 성명 : 구로구청장
 - ㄴ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 5)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 : 따로 붙임
 - 7)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관리명세	
계				27,550	27,020						
1	변경 없음	향동 149-2	대	520	520	국유지(캠코)	국유지				국유지
2	변경 없음	향동 149-3	대	8,792	8,792	국유지(캠코)	국유지				국유지
3	변경 없음	향동 149-1	공원	11,932	11,93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4	변경 없음	향동 산39-4	임야	3,003	3,00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5	변경 없음	향동 146-1	대	2,203	2,20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6	변경	향동 149-7	대	1,100	570	김호○(28/56) 현진○(14/56) 김휘○(7/56) 김용○(7/5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물건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920.79					
1	변경 없음	향동 산39-4	건물	백회블록 조	1,855	김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기매수]
2	변경	향동 149-7	건물	연와조 1층	65.79	김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동

◆ 동작구공고 제2017-611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4.30.)로 변경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6-999호(2016.11.24)로 열람공고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26.)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3,001	감) 16	82,985	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상도10주택재개발구역 및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생략 :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도로,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광장, 주차장 등

■ 공공청사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공공업무· 근린공공시설 (종합행정타운)	상도동 176-3 일대	3,046	증) 11,000	14,046	서울시고시 제338호 (‘94.10.15)	공간적 범위 결정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구성에 따른 시설의 세분변경 및 면적 증가

※ 기존 영도시장 일원 상인의 생계보호대책 일환으로 일부 비도시계획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도입을 위해 공간적 범위 결정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	상도1(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176-1 일대	12,122	감)12,122	-	• 서고시 제2002-30호 ('02. 2.15) • 종합행정타운 조성
신설	①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8-19 일대	-	증)3,839	3,839	• 우리국민은행 일원
신설	②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5-1 일대	-	증) 2,987	2,987	• 신협 일원

※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결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하고, 지구중심지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개발거점 활용 및 역세권 기능강화의 견인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 지정

라.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경미한 사항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행정타운조성과 (☎ 02-820-9342, FAX : 02-820-1409)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본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행정타운조성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유통센터2 동 327호	서울시계 내 한강 (잠원 K&P 유선장 상부체 공사현장)	선박 2척 (기선1, 부선1)	K&P 유선장 상부체 공사 보조를 위한 선박운항	2017.6.11. ~ 2017.8.10.	2017. 6.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동력선 3척(78㎡) - 모터보트 2척 - 파워보트 1척	수상레저사업	2017.6.10. ~ 2017.10.31.	2017. 6.9.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0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공덕동)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3번지
 - 면 적 : 영구 132㎡, 일시 146.6㎡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금조성용 지주이용광고물 설치
 - 내 역 : 광고탑 2개소(A=18×8m, H=30m)
5. 공사기간 : 인가일로부터 40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1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2-1번지 등 8필지
 - 면 적 : 영구 405㎡, 임시 1,8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공원 나들목 설치
- 내 역 :
 - 보행자전용 연결통로 1개소(압입추진)
 - 육갑문 1개소
 -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각 1개소 등

5. 공사기간 : <당초>2014.10.16.~2017.05.31.
 <변경>2014.10.16.~2017.06.30.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규칙 제3494호 정정

서울시보 제3352호(2016.06.02.)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규칙 제3494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 제3494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 6. 2.자 시보 제3352호)

정정전	정정후	비 고						
[별표 2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2. (생략)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별 표 23] (좌동) 2. (현행과 같음)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평 정 점</th> </tr> <tr> <td>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td> <td>0.5</td> </tr> <tr> <td>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td> <td>0.25</td> </tr> </table>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시보 제3352호 제156쪽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 정 정

중구고시 제2017-45호 정정

서울시보 제3366호(2017.06.08.)에 게재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중 구 청 장

[정정 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중복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필동2가 59-4 일대	-	증)315.0	315.0	-	

[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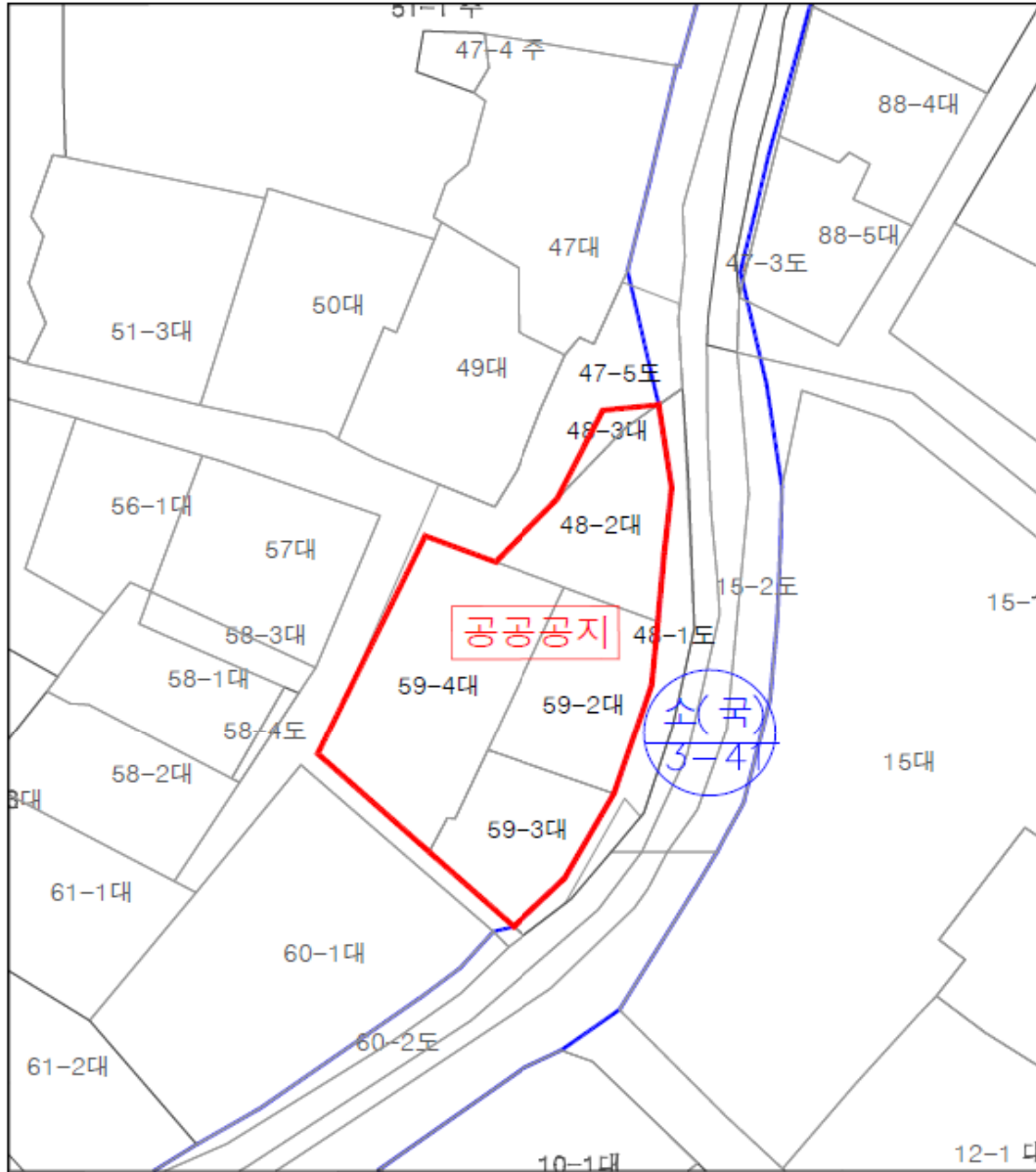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필동2가 59-4 일대	-	증)315.0	315.0	-	

[첨부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도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밀동 2가 59-4번지 일대	-	종1315.0	315.0	-	

범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선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